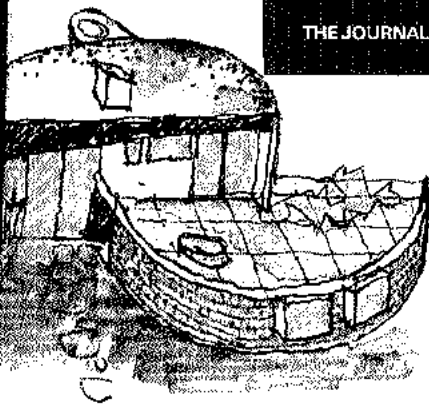


MONTHLY

建築士

■ 등록 1967년 3월 23일 ■ 등록번호/제 라-1251
 ■ 1985년 12월 31일 제 3종 우편물(나)급인가 ■ 우편번호/137-070
 ■ 1990년 2월 15일 발행 ■ 봉건 250호 ■ 발행/대한건축사협회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플로트
 투명도,
 평활도가
 납니다.

생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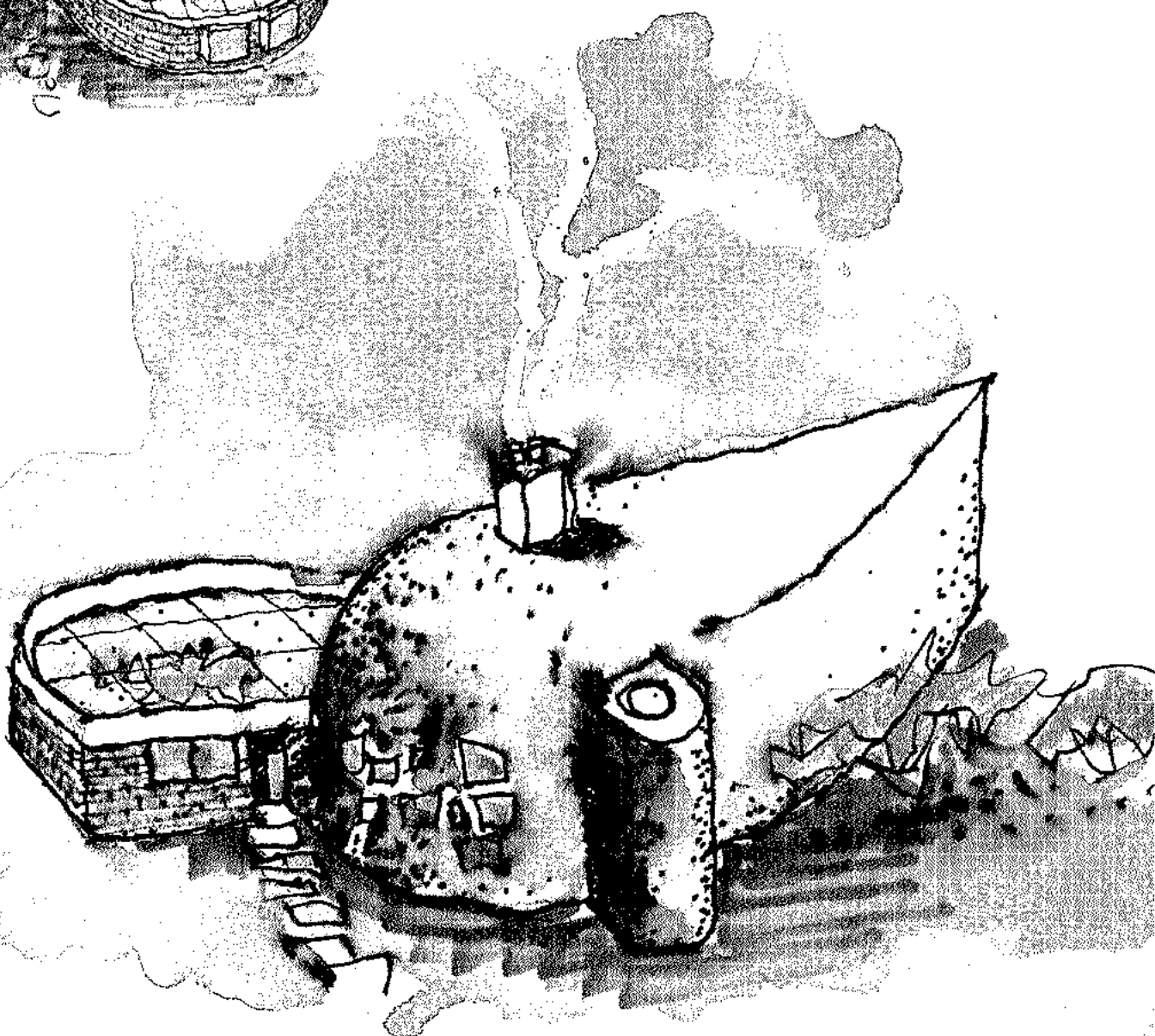
야에서만
노하우를

유리 공장을
 생고방의
 '플로트유리'를

로 생산되는
평활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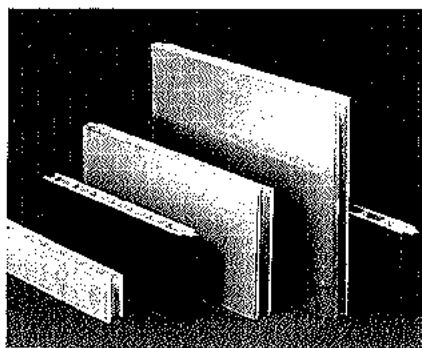
유리·강화유리
유리

유리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 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분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사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응도 / 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르변의 치음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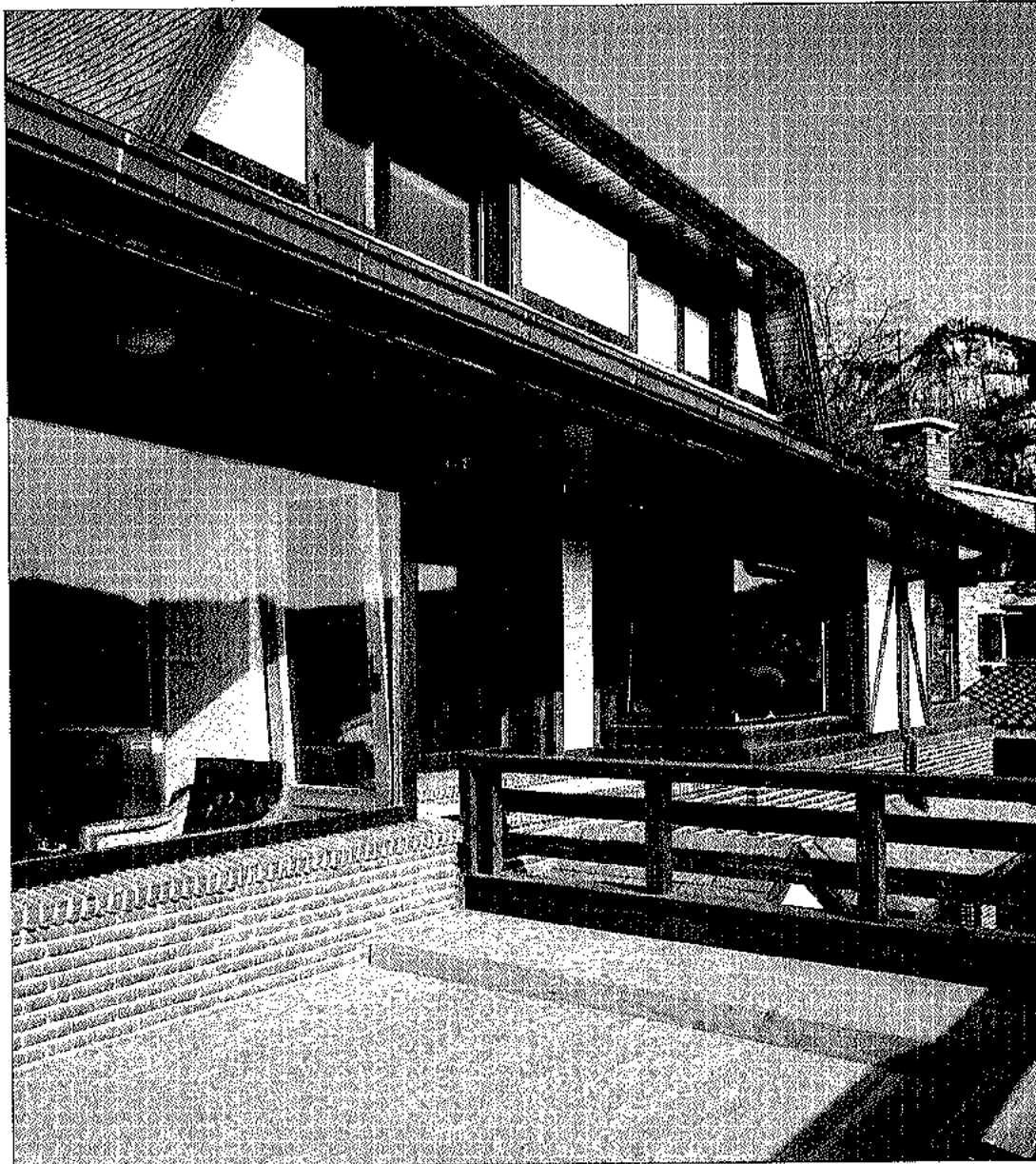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벽산 베이스

평생 살집, 창문은 이견창호로 하십시오.

시공사례 - 겨울편

평생 살집으로 짓다보니 건축자재 하나를 끌려도
적잖이 고르게 되었다는 평창동 S씨택
특히 산들에 둘러싸인 주변경관을 살리려면
큰 창문으로 보이는 전망이 중요하다 싶어
자재 전시장은 모두 찾아다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의 보온과 방음까지
고려해야 하고...
이견창호를 처음 보았을 때 느낌은
“바로 이거다” 싶었다는데 살내 화단까지 꾸미고
햇빛이 따뜻한 거실에 있노라면 역시
‘이견창호’를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고 한다.



좋은 창문은 겨울에 특히 돋보입니다.

보온·방음에서/이견창호는 이중유리와 날페성 높은 가스켓, 열전도를 차단하는 신소재를 사용하고 컴퓨터 정밀설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온 기능이 뛰어나고 특히 바깥음의 차단 효과가 큼니다.

환기에서/이견창호는 개폐방식이 독특하여 환기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디자인에서/이견창호는 형태와 크기, 소재 결합이 자유롭고 알미늄 칼라와 목재의 종류가 다양해 겨울에 한층 살아나는 주택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안전에서/이견창호의 이중특수유리와 8개의 잠금장치, 독특한 기어시스템은 겨울철 문단속 걱정을 덜어 드립니다.

이견 시스템 윈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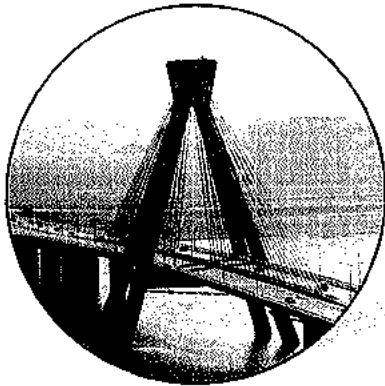
■ 상설전시장 안내 위치: 강남구 논현동 58-7 태석빌딩 3층
전화: 540-2071 ~ 9 FAX: 540-2080
* 일요일에도 문을 엽니다.



이견창호

● 이견산업주식회사 ● 이견자원개발주식회사 ● EAGON FOREST PRODUCT INC.

유원의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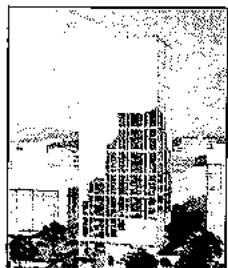


● 서울·올림픽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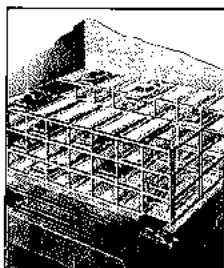
13평의 땅에 50대 주차 설비를 세운다.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유원건설이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유원은 한국일보사 신관 주차타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등을 완공,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수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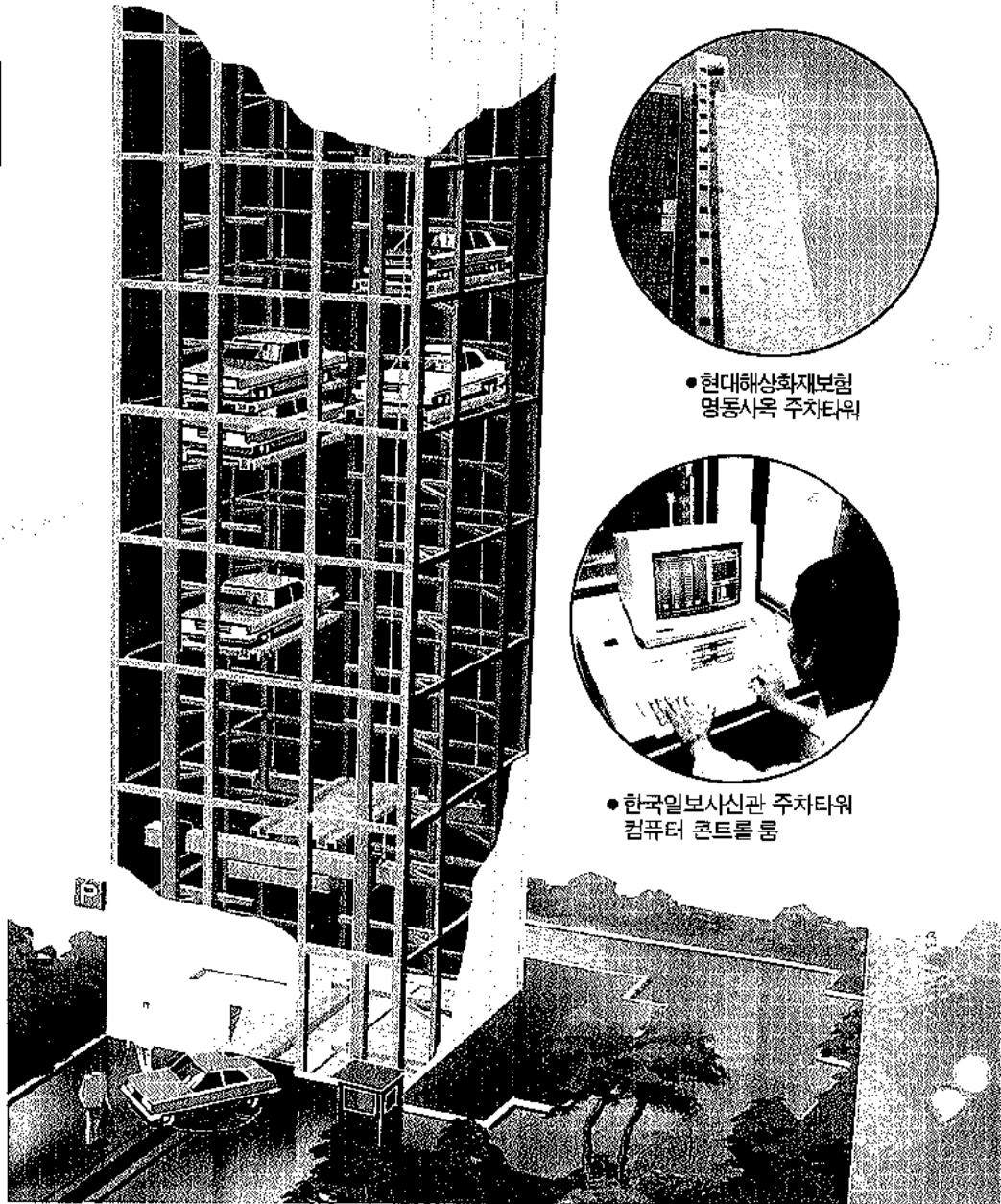
유원은 국내외에서 쌓은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주차설비 분야의 기획업무부터 설계, 시공, A/S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YOP-A 연립형



YOP-M형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 한국일보사신관 주차타워
컴퓨터 콘트롤 룸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설의 특징

- 13坪에 50臺 주차설비 시설가능
- 지상, 지하에 동시 운행가능
- 트윈타입으로 설치원가 절감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시설의 7대 장점

1. 경제성 - 저렴한 시공비, 최소의 운영관리비
2. 안전성 - 16가지 이상의 COMPUTER 안전장치
3. 신속성 - 상승속도 60m/min 이상, 1분내 입출고 처리
4. 간편성 - 차량번호만 입력, 자동으로 입출고
5. 정숙성 - 승객용 승강기에 버금가는 무소음 무진동
6. 다양성 - 대지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종

7. 독창성 -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100% 국산화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공 및 착공사례

- 한국일보 신관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 부산 고속터미널
- 사당 쇼핑 센터
- 잠실 뉴스타호텔
- 남산동 주차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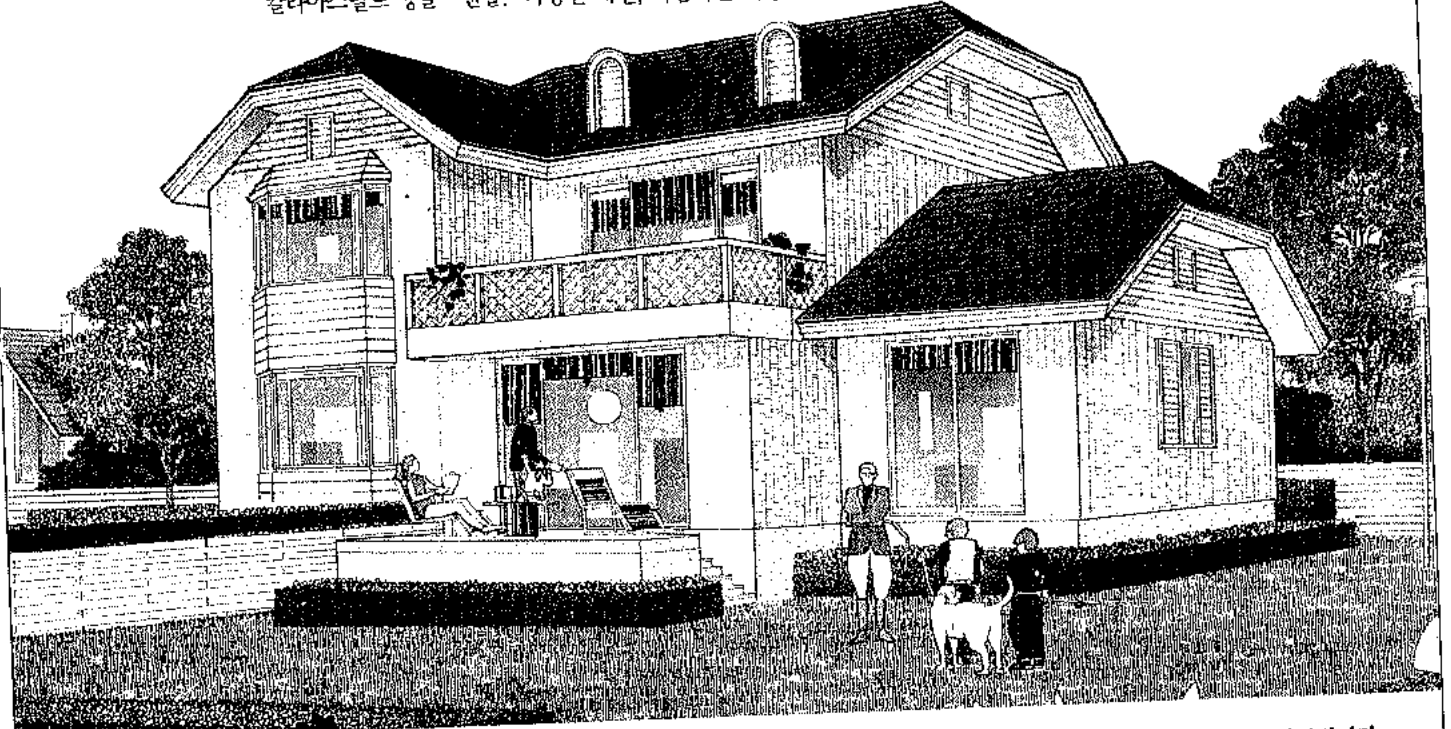


상담전화 : (02) 756-9821, 9841 (02) 777-9821, 9841
FAX : (02) 754-8521
주차 플랜트부

한국에 온 정통 칼라아스팔트 싱글-맨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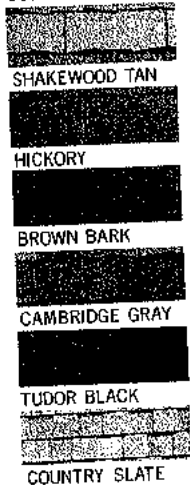
MVL Roofing Systems Division
Manville

미국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정통 칼라아스팔트 싱글-맨빌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Manville 독점 수입판매권자 (Exclusive Agent) 인 동림산업이 개성있는 주택을 꿈꾸오신 분들에게 자신있게 권하는 130년 전통의 칼라아스팔트 싱글-맨빌. 다양한 패턴, 아름다운 색상으로 한국에 지붕재의 칼라아스팔트 싱글 시대를 선언합니다.



삼익 세라믹 판넬 외벽재와 맨빌 칼라아스팔트 싱글 지붕재를 사용한 양재동 빌라.

COLOR SELECTION



새롭게 부상하는 기업 - 동림산업

카드래일, 가드케이볼등의 철구조물 및 산업기계 등을 제작·판매해오던 東林이 신규 분야에까지 사업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 산업기계 토목, 무역, 주문주택사업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기업 - 동림산업을 주목 하십시오.

칼라아스팔트 싱글이란?

아름다운 외관과 간편한 시공으로 독특한 주택의 미를 살려 주는 칼라아스팔트 싱글은 경제성은 물론 내구성도 뛰어난 유럽풍의 고급 지붕재입니다. 최고급 빌라, 고급주택, 골프장, 클럽하우스, 영입용 건물, 별장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어 새로운 주택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맨빌의 칼라아스팔트 싱글이 우리나라 주택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엮니다.

미국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Manville

130년 역사를 지닌 ROOFING SYSTEM 전문업체인 MANVILLE은 지붕재 분야에서 쌓은 축적된 경험과 고도의 기술로 아름다운 색상, 다양한 패턴의 칼라아스팔트 싱글만을 생산함으로써 미국 의 아스팔트 싱글 시장을 이미 석권 했습니다.

"맨빌의 명성" - 역시 최고임이 입증됩니다.

1. 맨빌은 1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지붕재 전문회사
2. ROOFING SYSTEM 전문회사인 대형 다국적 기업
3. 미국 UL 마크를 획득한 보증할 수 있는 제품.
4. 25년이상 장기간 품질보증
5. 최상의 화이버 글라스 함유로 뛰어난 내구성
6. 미국시장을 이미 석권한 최고급 세라믹 화이버 글라스 싱글
7. 완벽한 책임 시공 팀 운영, 전국적인 작업판매
8. 전문건설업, 장류 무역업, 무역대리업 등록 및 제조업체로서 신뢰할 수 있는 회사.



다양한 칼라, 다양한 패턴 - 맨빌

- WOODLANDS PREMIER
- WOODLANDS
- FIRE KING
- ADVANTAGE 25
- WEATHER-SEAL
- FIRE GLASS III

주요관련 사업

철구조물·철골재, 산업기계 제작 및 수출, 토목공사, 아스팔트 싱글등 건축자재 수입, 주문주택사업

주식 동림산업

특수사업부: 강남구 삼성동 163-3 (대웅제약빌딩2층)
TEL: 577-2878 ~ 9, 574-0815
568-8216 ~ 7
FAX: 574-0816, 552-9542

차례/1990년 2월호 통권 제250호

會員作品	캠브리지 멤버스 사옥/姜聲益	8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張錫雄	12
	경주 코오롱호텔(증축)/崔寬泳	14
	호텔 뉴스타/趙東旭	18
	수서정/金仁喆	21
	수원 대한극장/鄭求榮	24
나의 스케치	貝殼의 집/安秉義	27
일하며 생각하며	“눈”의 나라 이야기/朴英健	28
컬 럽	제2의 창조주/宋洙九	30
研 究	複合用途建築物의 발전경향(Ⅲ)/吳德成	32
	자연채광 설계수법(4)/金正泰	44
	쓰레기 처리 공해방지용 인공꽃동산검	
	공원묘지 건축구조에 관한 연구/李明春	72
설계경기	국립부여 박물관 현상설계경기/ 당선작: 천일종합건축案 응모작: 그룹원종합건축案 일건종합건축案 공간종합건축案 삼정종합건축案	55
자 료	1989년 12월분 도서신고 현황 건축법시행령 22차개정 주요내용해설/李弼遠 건축법시행령중 개정령	76 78 83
新入會員 協會消息		74 91

發行人: 宋基德

編輯弘報委員會

委員長: 禹南龍

委員: 董政根, 朴舒弘, 吳澤吉, 金基哲,
趙聖烈, 崔正一, 鄭正治, 朴研心,
崔命鼎, 金樹喆, 이창식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1

電話: 代表 (02) 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 586-8823

텔렉스: KIRAA 33550

登錄番號: 第라-1251(月刊)

登 錄: 1967年 3月 23日

U.D.C.: 69/72(054-2): 0612(519)

印刷人: 全允珪/洗文精版社

Publisher: Song, Kee-Duk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Woo, Nam-Yong

Member: Dong, Jeong-Keun/ Park, Seo-Hong/ Oh, Teak-kil
/ Kim, Kee-Chul/ Cho, Sung-Yul/ Choi, Jeong-Il/
Jeong, Jung-Chil/ Park, Yeon-Sim/ Choi, Myung-
Chul/ Kim, Joo-Cheol/ Lee, Chung-Sik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dcho-dong, Seod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17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D.C.: 69172(054-2): 0612(519)

Printer: Jeon, Yun-Kyu (Kwang-on Printing Co.)

建築士



표지: 貝殼의 집(설계 安秉義)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the Hotel de Ville in Paris. The building is a large, ornate structure with a prominent sign on the left side that reads "HOTEL DE VILLE". The architecture features classical elements like columns and decorative carvings. The image is taken from a low angle, looking up at the building.

전국지도자부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03-55, 581-5715~8, 서대문분소 / 서대문구원화동169-25, 333-6411, 관악분소 / 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도봉분소 / 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영등포분소 / 영등포구영등포동37181, 634-2143, 강동분소 / 강동구성제동317-4, 484-6840, 강서분소 / 강서구자곡동1105-05, 695-0782, 성동분소 / 성동구구기동252-16, 446-5241, 동대문분소 / 동대문구신천동101-7, 923-6313, 종로분소 / 종로구정전동201-1, 735-0905, 마포분소 / 마포구도화동250-4, 712-8844, 송파분소 / 송파구송파동560-12, 423-9138, 송파분소 / 송파구송파동11-2, 252-6507, 송파분소 / 송파구우원로1가219-22, 712-7647, 시조분소 / 이곡구이곡1동1623-1, 586-7707, 은평분소 / 은평구북면동79-32, 352-6720, 동작분소 / 동작구사당동147-79, 599-6754, 강남분소 / 강남구논현동241-6, 545-0757, 노원분소 / 노원구상계1동1049-79, 900-1947, 양천분소 / 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송파분소 / 송파구남성동516-41, 491-0925, 성북분소 / 성북구삼선57410, 923-4461, 구로분소 / 구로구구로동130-32, 862-9099, 동부선직할시지부 / 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171(부산대터널) (051) 264-6284~5, 대구직할시지부 / 대구직할시서구명구름3711-8, (053) 72-5141~2, 23인원직할시지부 / 인천직할시남구간석동558-1, (032) 424-0146, 5140(남구종합빌딩204호) 88경기도직할시지부 / 광주직할시북구 줄름동 694-10, (062) 521-0025, (FAX) 521-0026, 88경기도직할시지부 / 대전직할시중대동437-1, (042) 254-2441, 88경기도지부 / 경기도수원시서산로751-55, (0331) 47-6129~30, 격양분소 / 경기도수원시새관37가-8, (0331) 42-6490, 7072, 안양분소 / 안양시안양동719-9, (0343) 2-2698, 2-0012, 부천분소 / 부천시원마포74-6, (032) 63-3144, 성남분소 / 성남시신원동55512, (0342) 2-5445, 의정부분소 / 의정부사동정부동182, (0351) 12-1683, 송탄분소 / 송탄시신강동21, (0334) 41-6153, 고양분소 / 고양시원왕동수곡리38동116동, (0344) 63-8902, 구미분소 / 구미시수택동109-2, (0346) 63-8112, 이천분소 / 이천시이천읍종리216-8, (0336) 2-3396, 광명분소 / 광명시철산동464-7, 682-2875, 안산분소 / 안산시상록3동55-5, 82-2820, 88경기도지부 / 강원도춘천시죽림동39-5, (0361) 54-2442, 원주분소 / 원주시인삼동206, (0371) 42-3257, 강릉분소 / 강릉시성내동6-14 (0391) 12-2262, 속초분소 / 속초시동명동46-33, (0232) 33-5081, 삼척분소 / 삼척시남양동55-43, (0397) 12-3106, 영월분소 / 영월군영월읍영동14960-12, (0372) 43-2659, 88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27116-168, (0431) 56-2752, 53-7342, 충주분소 / 충주시약전동5673-1, (0431) 12-3082, 제천분소 / 제천시리점동8-8, (0432) 12-6253, 옥천분소 / 옥천군옥천읍신안동222-206, (0475) 132-9907, 88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대신동구대동473-1, (042) 256-4088, 천안분소 / 천안시북동동160-1, 4, (0417) 12-4551, 홍성분소 / 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51) 32-2853,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읍동대리703-1, (0463) 12-2217, 대천분소 / 대천시대천동197-10, (0452) 134-3357, 88전라북도지부 / 전라북도전주시시내송동635-5(대덕빌딩), (0652) 87-6007, 이리분소 / 이리시남동동17477-22, (0653) 132-3314, 군산분소 / 군산시중앙로7110-11, (0654) 12-4069, 남원분소 / 남원사자점동106-2, (0671) 12-6002, 88전라남도지부 / 전라남도서구화정동783-23(추신회관) (062) 364-7557, 33-9944, 목포분소 / 목포시대안동1, (0631) 43-3348, 진흥분소 / 순천시향정동11(0661) 13-2457, 여수분소 / 여수시관동동441번지, (0662) 164-7023, 88경상남도지부 / 대구직할시중구 동인동171285번지, (053) 425-4904, 도함분소 / 포항시죽곡동43-22, (0552) 44-6029, 경주분소 / 경주시노동동12-2(0561) 13-3638, 구미분소 / 구미시원평동964-26, (0546) 152-6351, 안동분소 / 안동시서부동157-4, (0571) 12-5703, 김천분소 / 김천시평화동280-1, (0547) 12-2541, 영주분소 / 영주시호전동295-2, (0572) 12-4566, 김천분소 / 김천시서평동280-3, (0548) 12-2706, 상주분소 / 상주시남성동36-23, (0582) 12-4306, 88경상북도지부 / 경상북도마천시중앙동3713-47, (0551) 46-4530~4, 울산분소 / 울산시남구신경동585-6, (0522) 174-8836, 김주분소 / 김주시분성동7-20, (0531) 12-6403, 충주분소 / 충주시서호동163-18, (0567) 143-3577, 2-7420, 김해분소 / 김해시사당동2410-10, (0594) 12-6114, 밀양분소 / 밀양군삼문동184-108, (0527) 153-2110, 거창분소 / 거창군거창읍동리274-3, (0598) 12-7090, 양산분소 / 양산시양안산도당리522-4, (0523) 184-3050, 가평분소 / 가평군신원읍고현리139-2, (0553) 184-3432, 2-3372, 삼천포분소 / 삼천포시동광동91-6(0593) 12-3591, 88제주도지부 / 제주도제주시21도동1289-6, (064) 22-3248, 52-3248, 서귀포분소 / 서귀포시시동동299-6, (064) 32-7777

캠브리지 멤버스 사옥

Cambridge Members Building



대지위치/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5-1
 대지면적/714.20㎡
 건축면적/338.45㎡
 연 면 적/3,168.52㎡
 건 폐 륜/47.39%
 용 적 륜/299%
 지역지구/일반주거지역, 2종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규 모/지하 2층, 지상 7층, 옥탑 1층
 구 조/R.C 조(철근콘크리트멘조)
 외부마감/THK 70+30 포천식 버너구이
 주차대수/20대(옥내 14대, 옥외 6대)
 시 공 자/태화기업(주)
 인테리어/금강개발+ARS (일본팀)

설계 소요

서울의 랜드마크 아쿠아스큐럼으로서 신사동 지역에 위치한 본 프로젝트는 상업건축물로서의 요구되는 건축의 효율성과 이미지 구현의 상반 관계에서 이루어졌다. 디자인 모티브와 기능은 서구 중세시대 건물의 외관과 현대적 양식이 조화를 이룬 낭만주의 절충식에서 출발하였다.

아쿠아스큐럼 외류 전시장으로 사용하게 될 본 건물의 외관은 영국 런던의 전통신사 북에서 느껴지는 중후함과 섬세한 이미지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건축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런던 본사의 Aquascutum (물의 방패라는 전설적인 라틴어 이름으로 정통 브리티쉬 트레디셔널의 정신을 140년 가까이 지켜오고 있다.) 건물 이미지와 근접된 모습으로 하기 위해 일반건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두께 30mm에서 150mm까지의 화강석을 가공하여(건식공법) 중세 낭만주의 건축양식으로 시공하였다. 주차동선과 보행자동선은 상호 유기적으로 계획하여 좁은 대지내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7층 옥상 부분에는 업무수행에서 오는 직원들의 피곤함을 덜어주도록 하는 루우프 가든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5층 공간에는 고객과 직원들에게 안락한 휴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마련하여 만남의 장소가 되도록 하였다. 내부의 전시기능은 중앙의 오픈 계단을 두어 각층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오픈된 공간과 함께 쇼핑의 기능을 살렸다.

姜聲益/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ang, Sung-IK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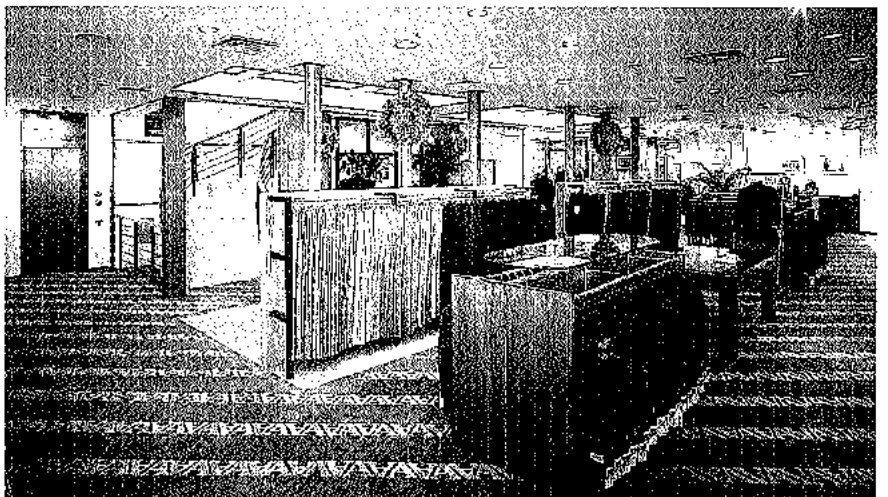


4

- ① 3층 여성의류 전시장
- ② 전경
- ③ 외벽상세
- ④ 옥상 루프기둥
- ⑤ 4층 전시장 내부
- ⑥ 2층 전시장 내부
- ⑦ 전면 투시도
- ⑧ 1층 전시장 내부원형계단
- ⑨ 배치도
- ⑩ 1층평면도
- ⑪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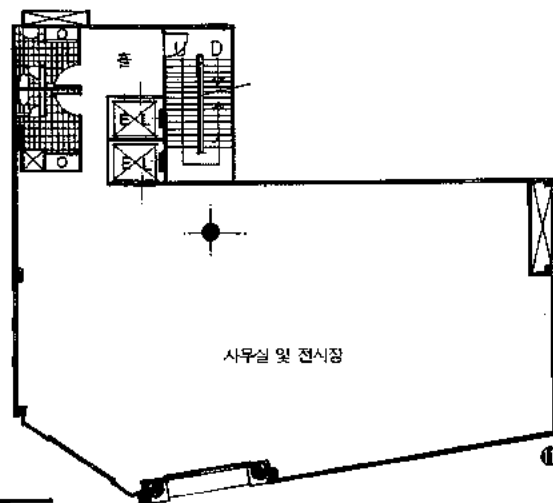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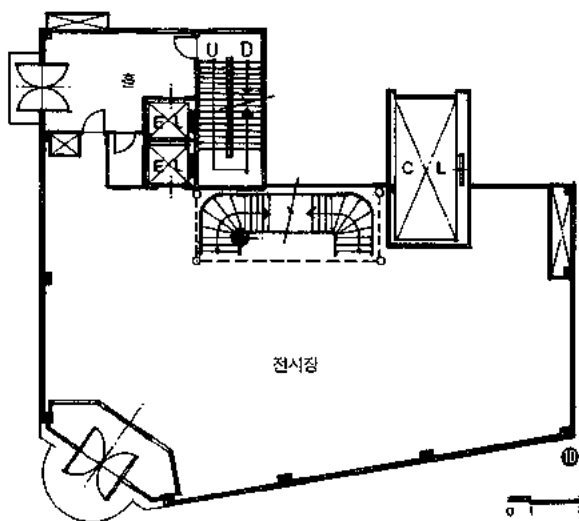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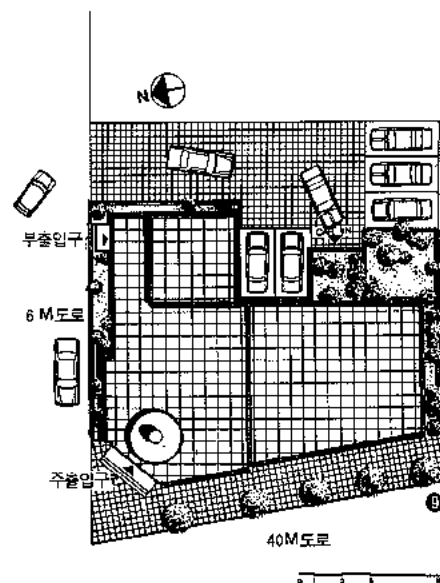
5



6



7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stitute of
Health Environment

대지위치/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번지

대지면적/33,057.8㎡

건축면적/2,998㎡

연면적/9,754㎡

건폐율/8.8%

용적률/29.5%

규모/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일부 Post Tension 구조

설비/중앙냉난방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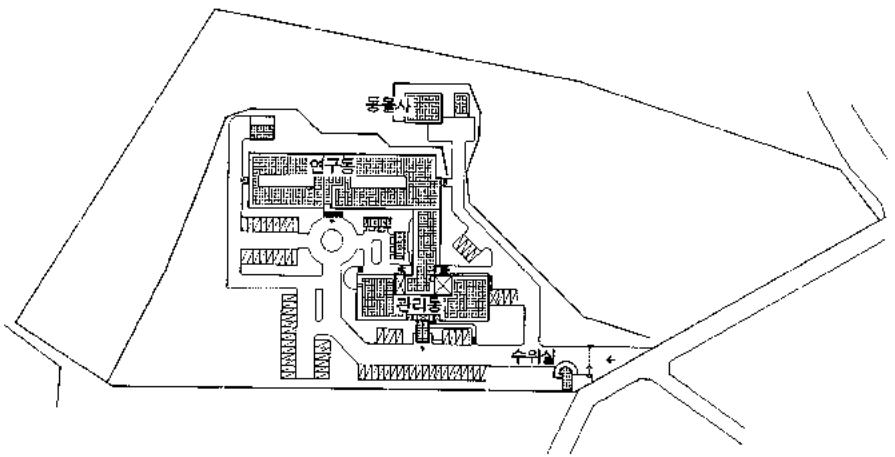
설계소요

본 연구소가 위치한 부지는 강남의 양지바른 개발지이다. 공공건물의 성격을 살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이기를 바랐는데... 설계가 항상 그렇듯이, 보건환경연구소(사용자) 측과 건축가는 Crean Room 등 첨단기술의 Hardware 와 Software 가 훌륭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도하였으나, 집행당국의 제한된 예산정책으로 제대로 된 건물을 완성치 못한 사례에 속하는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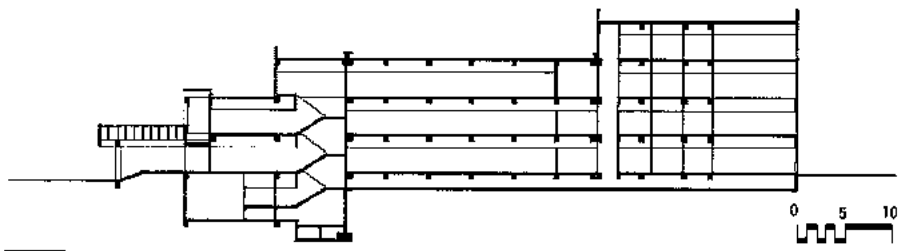
건물기능상 일반업무시설(행정 및 민원) 등의 기능을 전면에 배치하고 연구 및 조사기능을 후면에 두는 등 동물사를 후면 숲속에 배치하여 외부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연구동은 발전하는 환경에 무리없이 적응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도록 중앙공급설비로써 Unit 화 시켰다. 보다 훌륭한 연구기관이 되도록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을 기대해 본다.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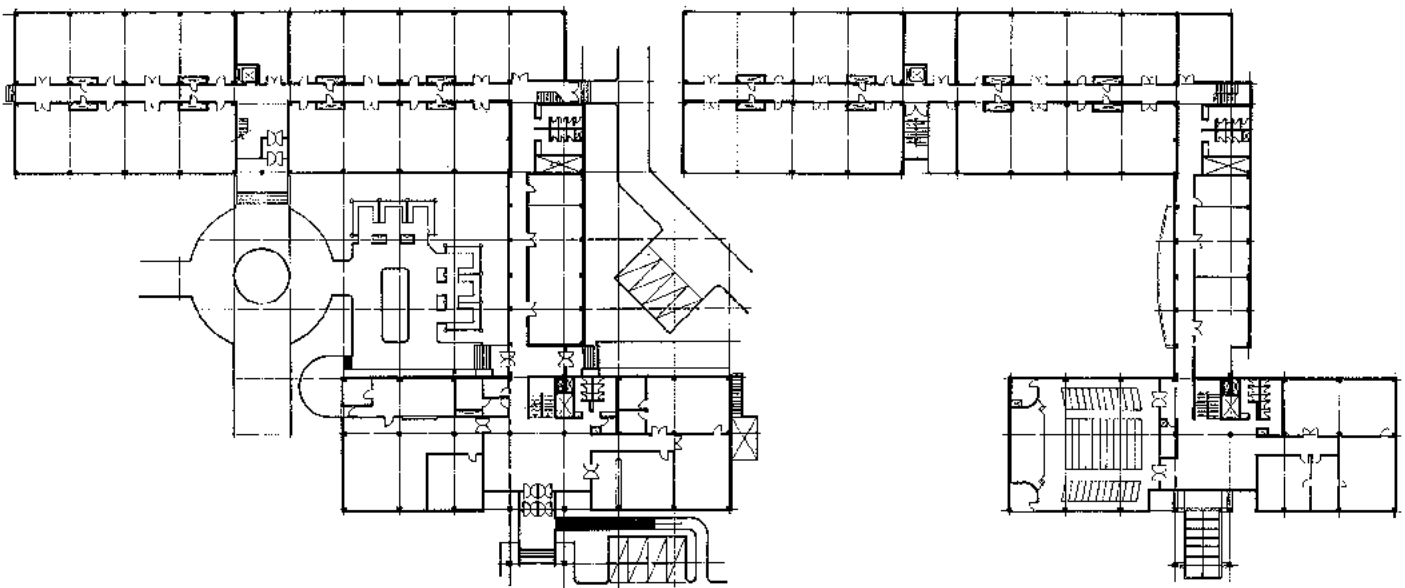
- ① 전경
- ② 주출입구측 상세
- ③ 배치도

- ④ 단면도
- ⑤ 1층평면도
- ⑥ 2층평면도

張錫雄/아도무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ang, Suk-Woong



2



6

6

경주 코오롱호텔(증축)

Koln Hotel, Kyeongju

대지면적/경북 경주시 마동 111
대지면적/107,860.0㎡
건축면적/7,322.5㎡(증축 : 379.0㎡)
연 면 적/30,054.0㎡(증축 : 5,948.6㎡)
규 모/지상 6층, 지하 3층
(객실 87실 및 사우나 4개층 증축,
로비 및 연회장 개수)
구 조/RC조, 지붕-철골+ Deck Plate
주요외장/타일, 한식기와, 18mm복층 반사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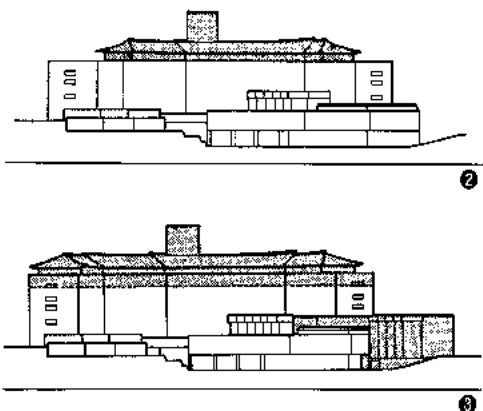
설계소묘

폭증하는 관광수요, 온천수의 발견, 또 기존시설 전반의 노후화 및 비효율적 공간이용에 대한 개선욕구 등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 객실 및 사우나시설의 증축과 로비·연회장 등 주요시설 개·보수의 우선과제는 기존 건물의 시각적 이미지를 보존하면서 내적 충실도를 더하고, 동시에 새단장한 깔끔한 면모를 돋보이게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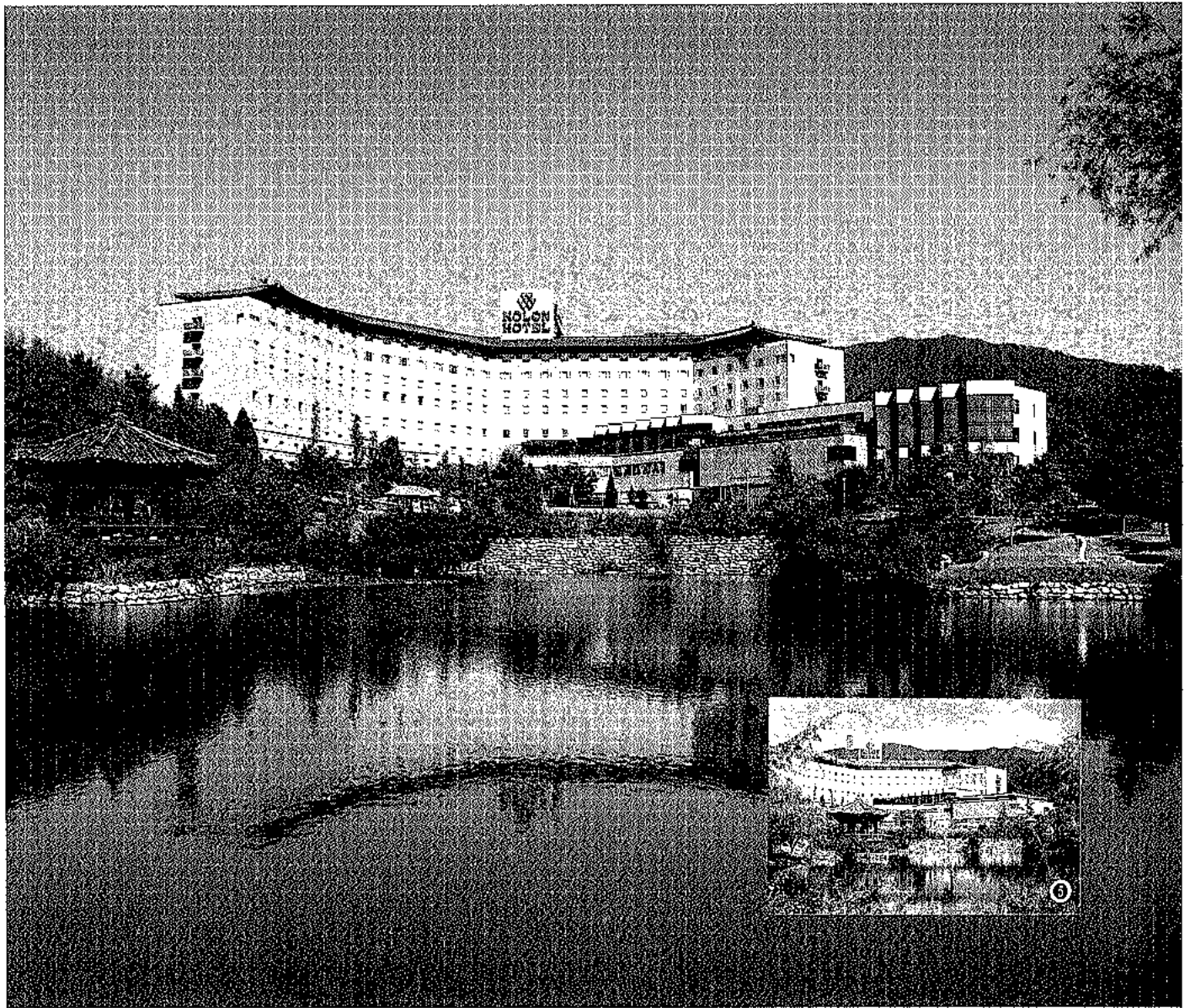
객실 5층을 헐고 2개층을 증축하면서 가장 고심해야 했던 점은 6층의 한식지붕과 그 하부와와의 결합방법이었다. 하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얹혀있는 기존의 잔뜩 움츠러든 지붕을 전체에 걸쳐 당당히 자리잡게 하고 하부와는 성벽과 성루의 관계로 설정하여 파라펄에 성곽의 여장(女牆)을 입면요소로 채택하였고, 각층간에 타일모자이크를 첨가하여 단조롭던 벽면표정에 변화를 꾀하였다.

사우나시설은 동선연결, 기존건물과의 시각적 연계성 등이 주된 관심사였다. 내부로는 연회장 등의 호텔부대시설을 이어주는 기존 대형계단의 1·2층 중간층에서 요양휴게실쪽으로 연결시키고 동시에 외부와도 주진입 광장에서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3개층 차이의 지형을 직절히 이용한 원활한 동선흐름을 유도했다. 더구나 배치상 볼록면의 측방에서 호텔주진입이 이루어지는 약점을 사우나의 증축으로 넓은 정원과 신선한 조형을 가미함으로써 보완했다. 남서측을 창으로 개방하여 옥장내에서 넓은 녹지와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형태는 기존 커피숍의 톱니형(Staggered Plan)을 써서 요소의 반복에서 오는 일체감과 동적 리듬감을 의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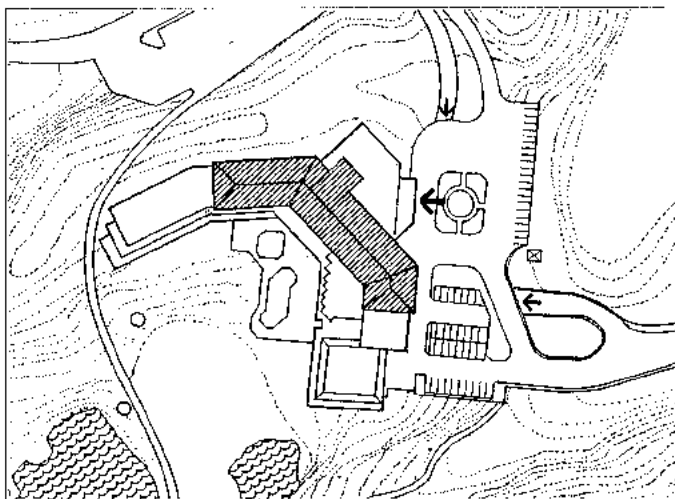
로비에는 2층과 직통하는 경쾌한 계단을 신설하여 공간이용효율을 한결 높였으며 모호한 실구분, 공간협소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연회장은 천정이 낮은 전실부분을 연회장의 일부로 끌어들이고 홀이 전실기능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각실에 명확한 기능을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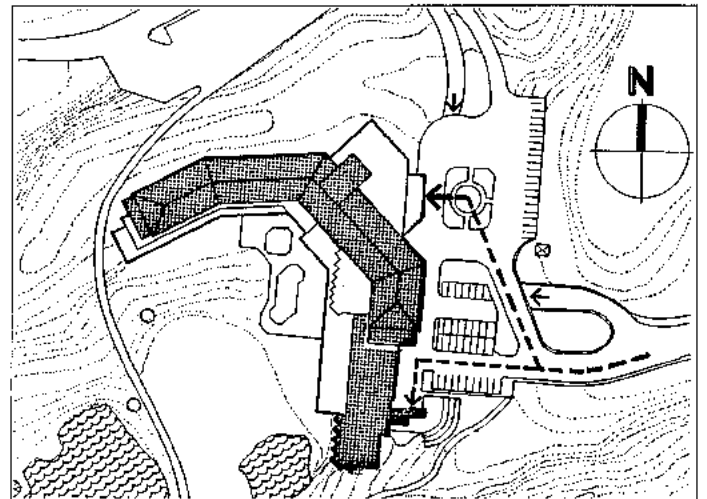
崔寬泳/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Kwan-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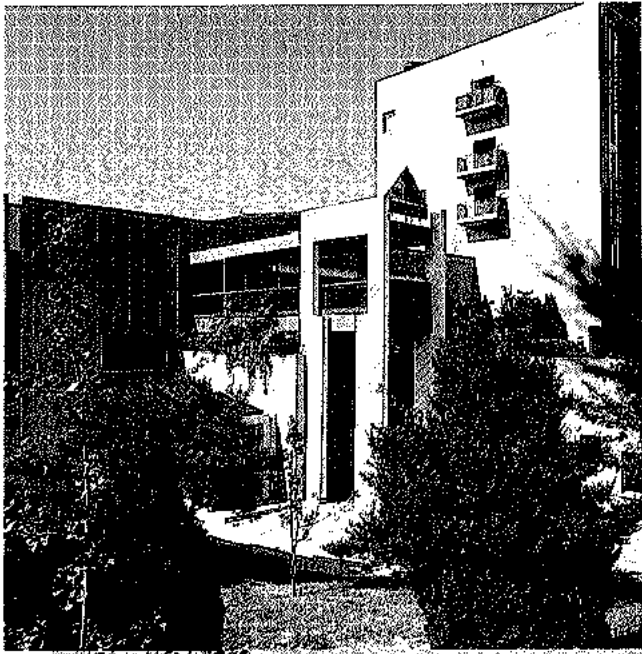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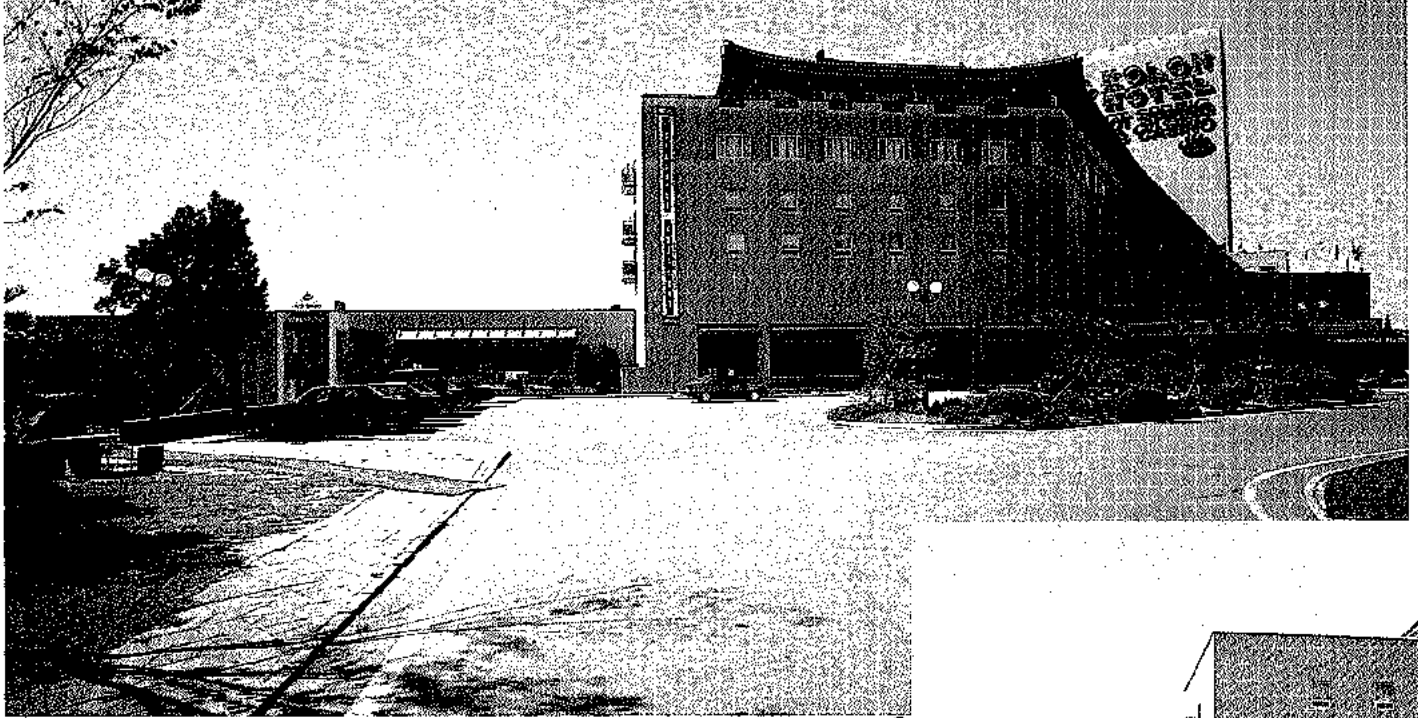
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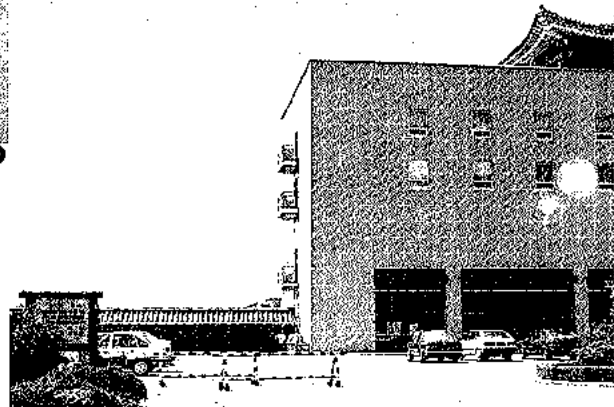
8



9



10



11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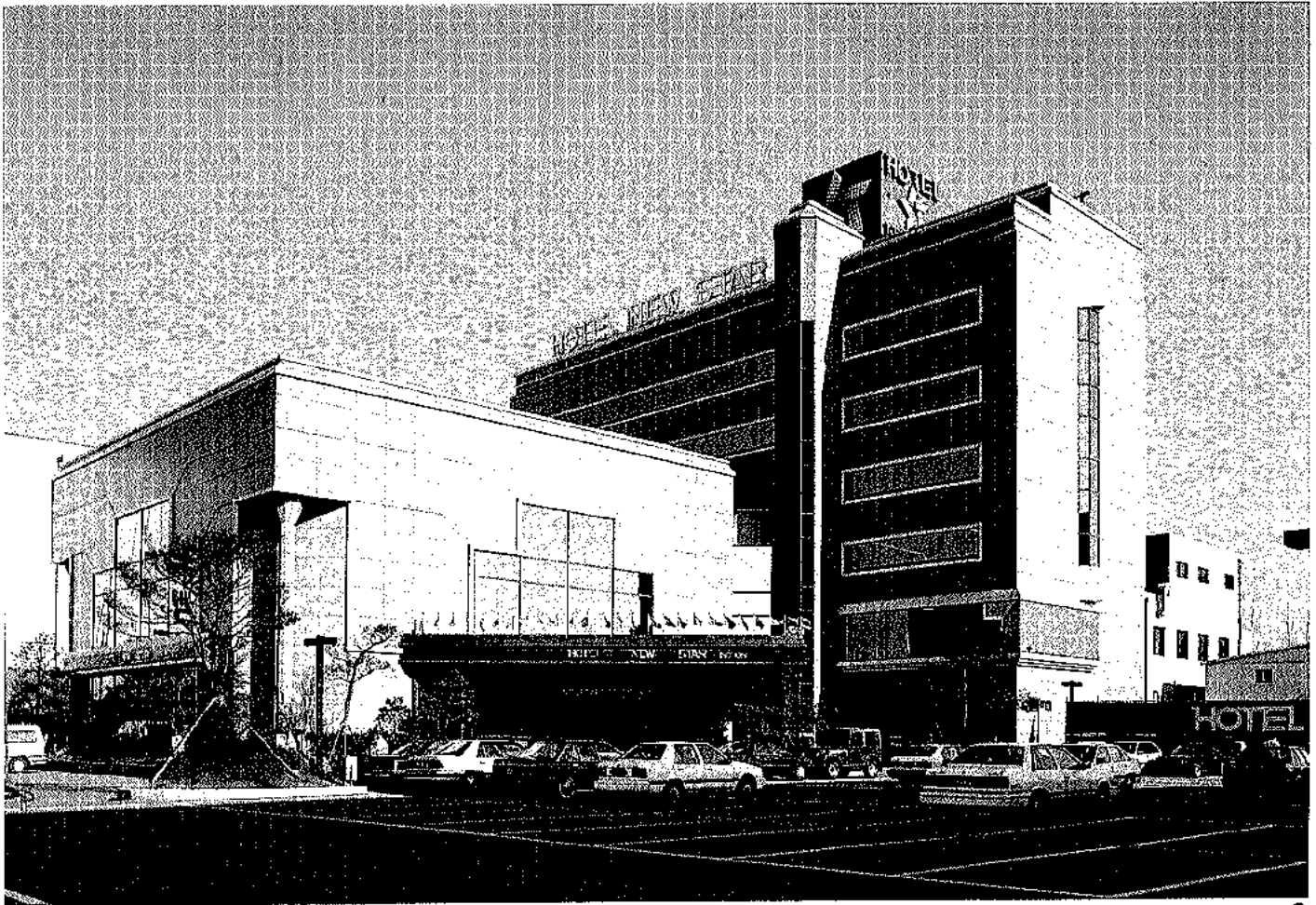


14

- ① 외벽상세
- ② 증축전 입면도
- ③ 증축후 입면도
- ④ 전경
- ⑤ 증축전 전경
- ⑥ 증축전 배치도
- ⑦ 증축후 배치도
- ⑧ 사우나 출입구
- ⑨ 주진입로측에서 본 전경
- ⑩ 증축전 주진입로
- ⑪ 한실
- ⑫ 요양휴게실
- ⑬ 남 사우나 내부
- ⑭ 로비

호텔 뉴스타

Hotel New Star



1

대지위치/인천직할시 중구 신흥동3가 29

대지면적/8,602.82㎡

건축면적/3,799.49㎡

연면적/31,658.11㎡

건폐율/60.18%

용적률/427.07%

규모/지하 2층, 지상 11층

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알루미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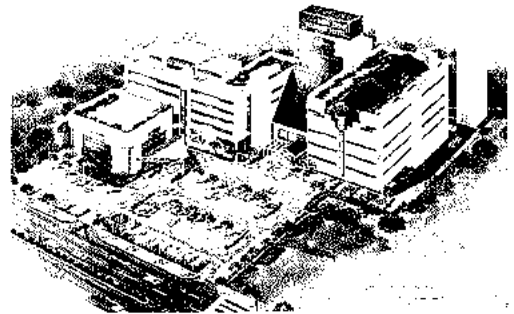
(창호:컬러 알루미늄 및 18mm열선반사 복층유리)

주차대수/28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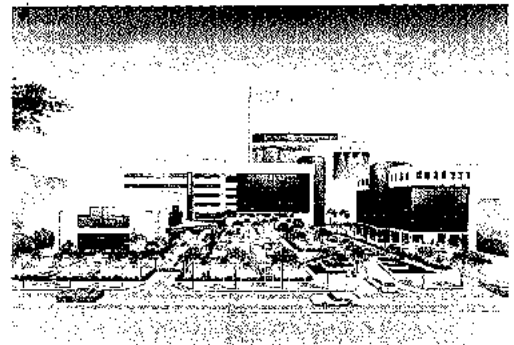
인테리어/(주)시공관

시공자/(주)진양기업

- ① 전경
- ② 초기안 투시도
- ③ 최종안 투시도
- ④ 3층 연회장
- ⑤ 주니어 스위트룸
- ⑥ 2층 중식당
- ⑦ 1층 로비 양식당
- ⑧ 1층평면도
- ⑨ 단면도
- ⑩ 로비
- ⑪ 외벽상세
- ⑫ 2층평면도
- ⑬ 4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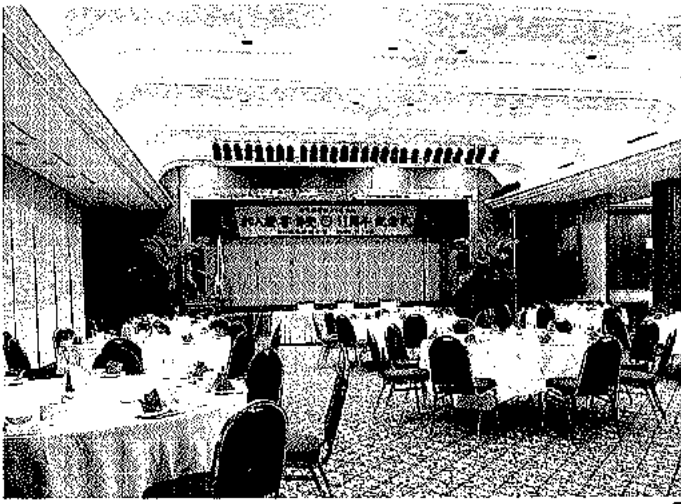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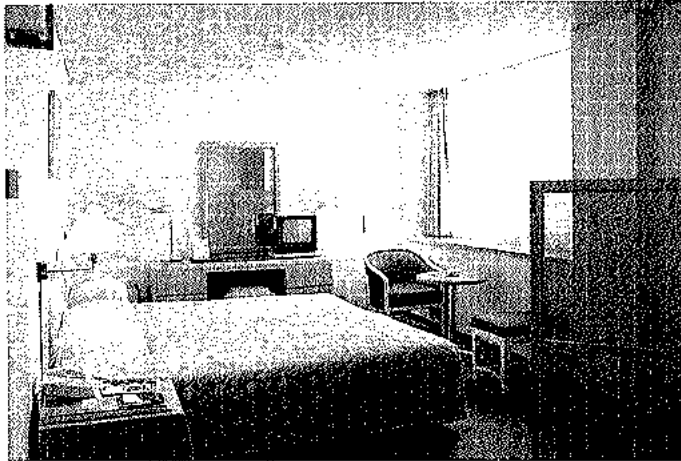


3

趙東旭/종합건축사사무소 성창
Designed by Cha, Dong-UK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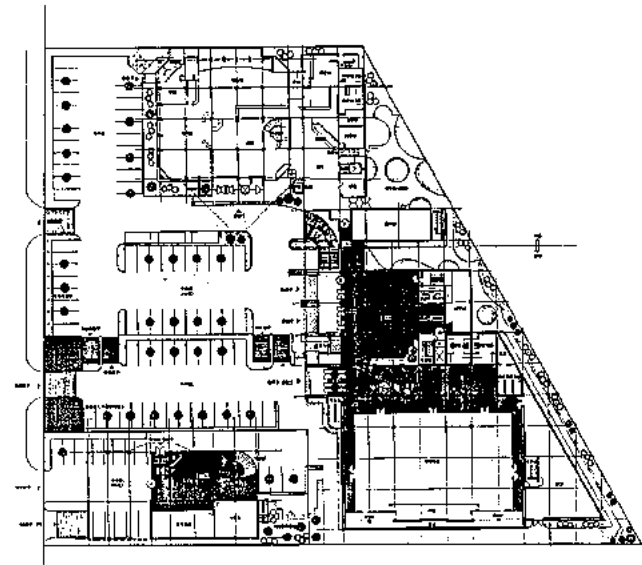
5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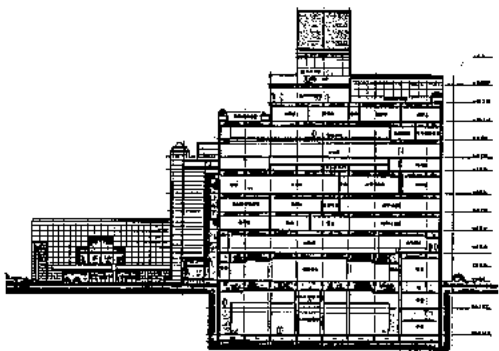
설계 소묘

본 프로젝트는 기존 선원호텔의 수평·수직증축 및 리노베이션을 통한 호텔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계획·설계되었다. 1차계획은 87년 1월에 착수하여 89년 3월 완공되었으며, 2차로 1,600평 대지에 복합용도의 건물을 수평증축계획중에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90년 3월 착공하여 92년 3월 완료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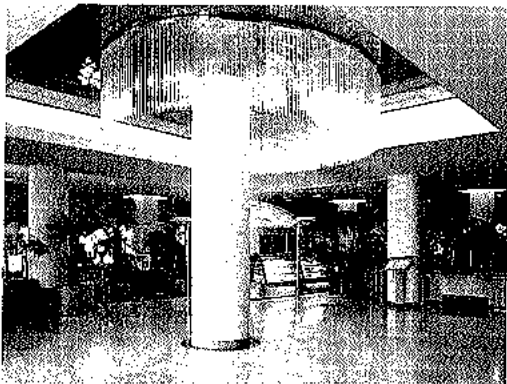
본 건물의 위치는 항구도시인 경안고속도로 종점으로 구 선원호텔 자리이며, 항구에 인접해 중공과의 무역 및 관광객 유치라는 장래의 사업성, 경제성과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 호텔측이 과감한 결단을 단행함으로써 계획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신축건물에서 기대하기 힘든 디테일과 디자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프로젝트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특히 지역적 조건과 기존 호텔구조의 층고 및 기둥스팬, 설비부분과의 연계문제, 동선처리 등이 수차의 변형을 거치면서 대형화하기 위한 작업에 많은 난관을 겪어야만 했다.

배치계획은 전면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두 개의 주동선으로 구분되는데, 즉 호텔 전용동선과 증축된 국제회의장 및 헬스센터(사우나, 인도어 골프장, 스쿼시 코트, 볼링장, 국제규격 수영장)의 동선이 그것이다. 내객동선은 호텔과 연계해 자연스럽게 유도하였으며, 내부는 객실과 영업장의 동선을 크게 분리하여 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호텔의 이미지는 서비스기능의 원활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명제하에 서비스 기능을 종업원 동선과 분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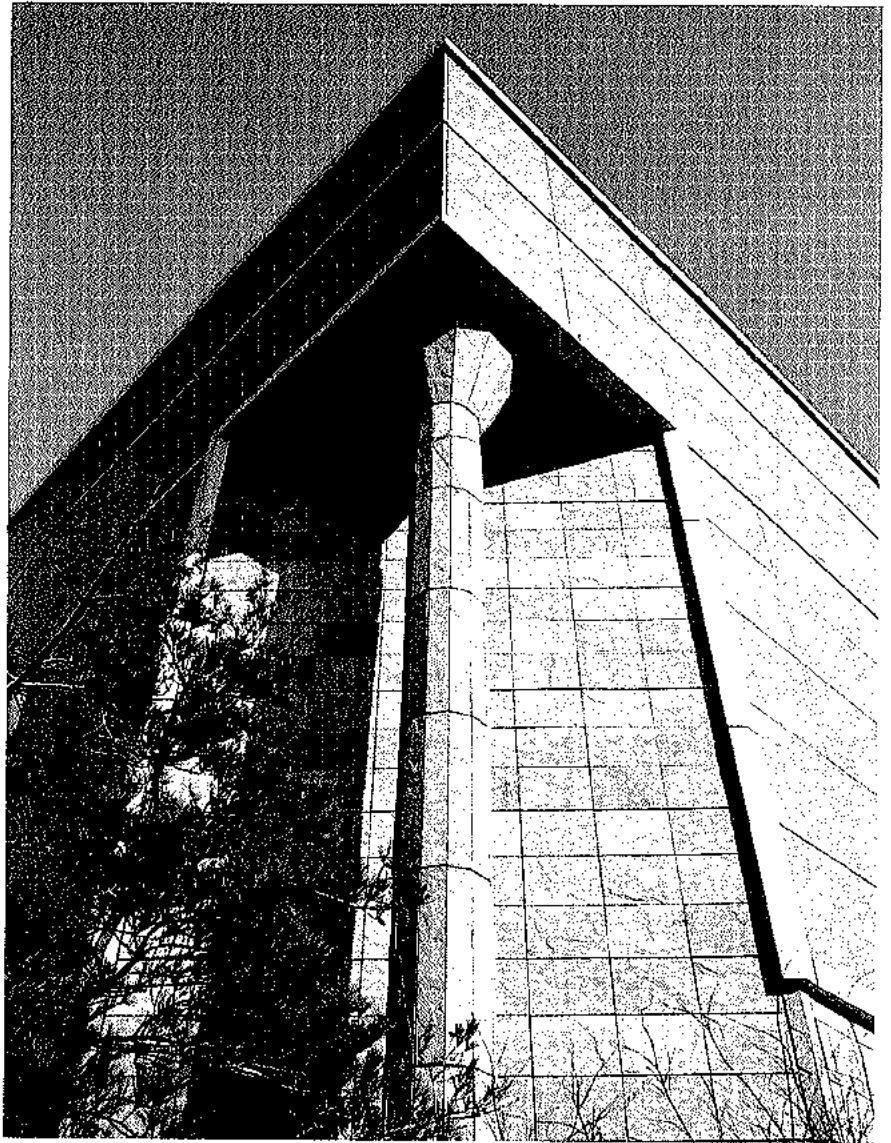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못내 아쉬운 점은 기존건물의 수직증축이 불가능했던 것과 증축건물의 최단동선 및 영업장 배치로 인해 대형부두의 야경을 만끽하기 위한 스카이라운지가 분리되어 배치된 것이다. 한편 외관계획은 주변 항만여건에 의해 창고와 관공서 건물로 이루어진 회색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외장은 가능한 밝고 온화하며 친근감을 주는 핑크계열의 색상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주변건물로 인한 퇴색을 피했으며, 전면에 펼쳐진 항만의 시각적인 특수성을 살려 스카이라운지를 열만사유리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배려에 의해 낮과 밤의 변화를 흡수함으로써 도시성격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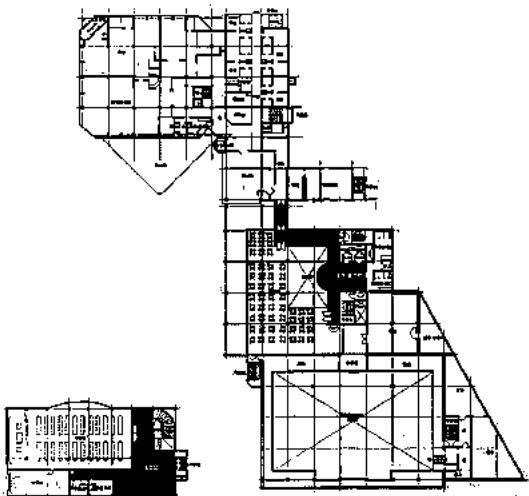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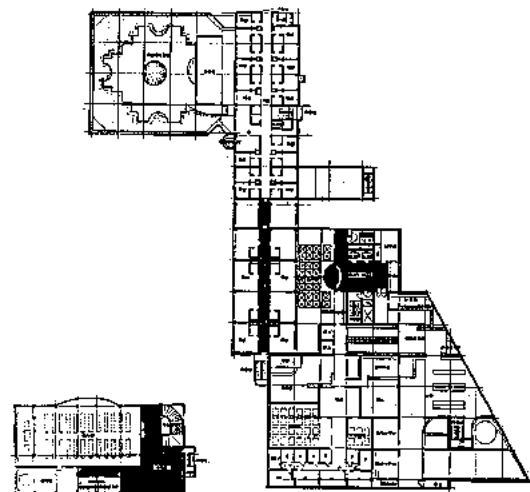
10



11



12



13

수서정

Su Seo Jung

대지위치/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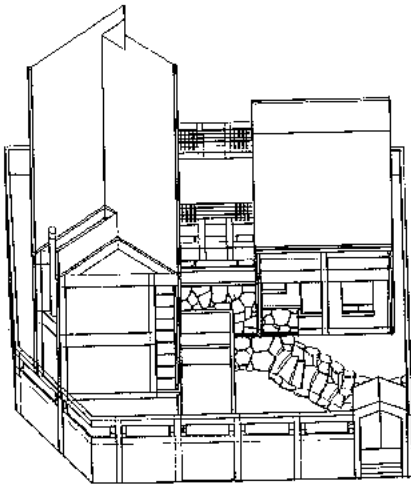
대지면적/266㎡

연 면 적/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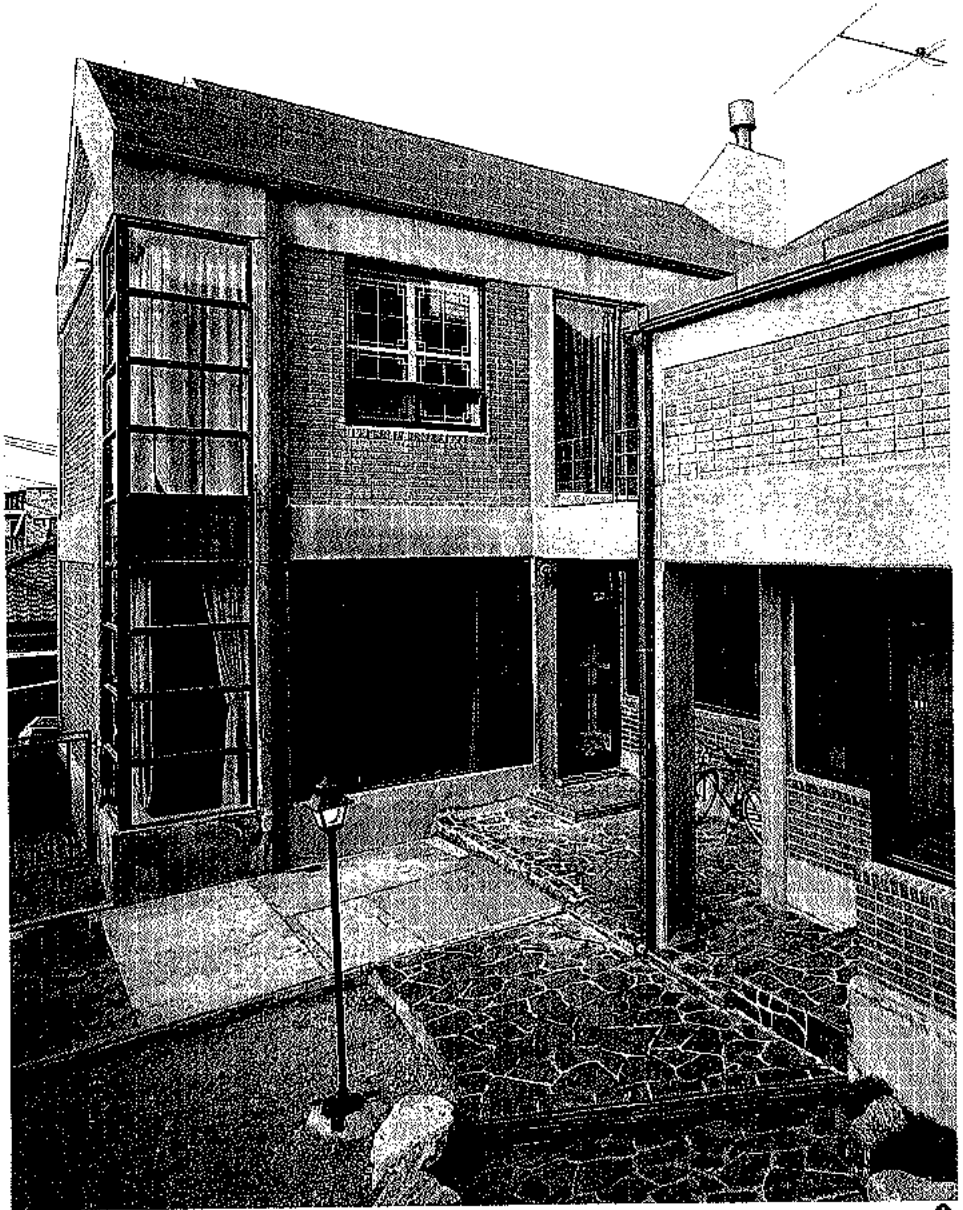
규 모/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철근콘크리트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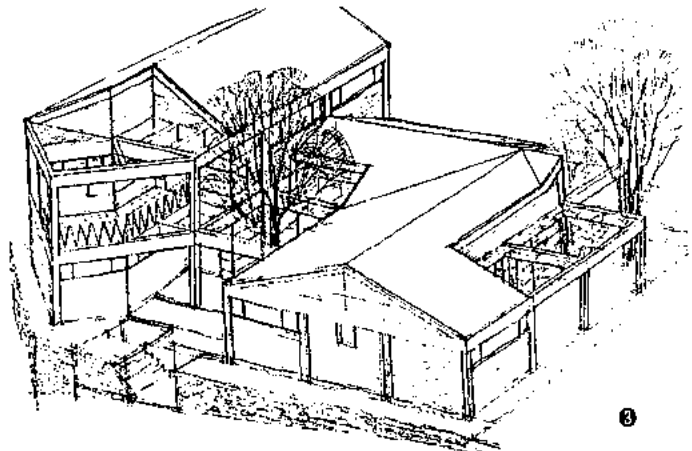
외 장/붉은벽돌 차장쌓기, 갈라아스팔트싱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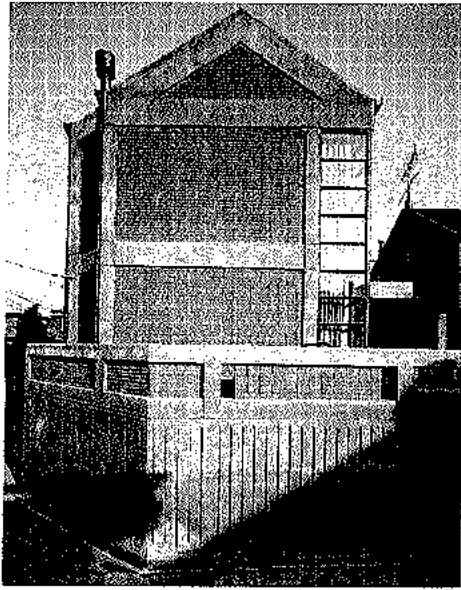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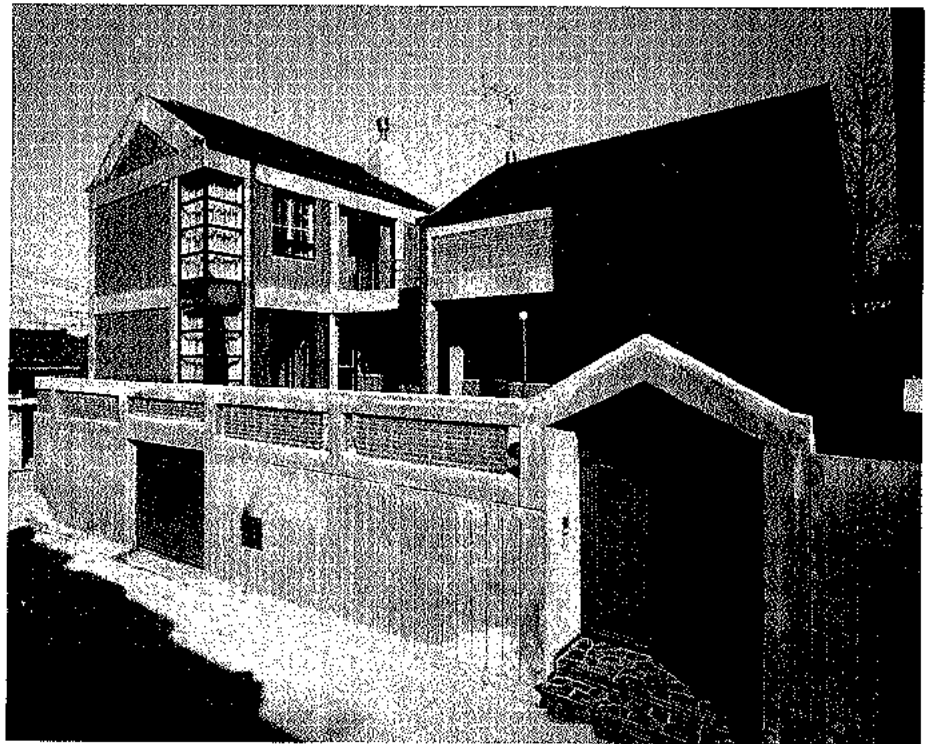


3

金仁喆/종합건축사사무소 인재건축
Designed by Kim, In-Ch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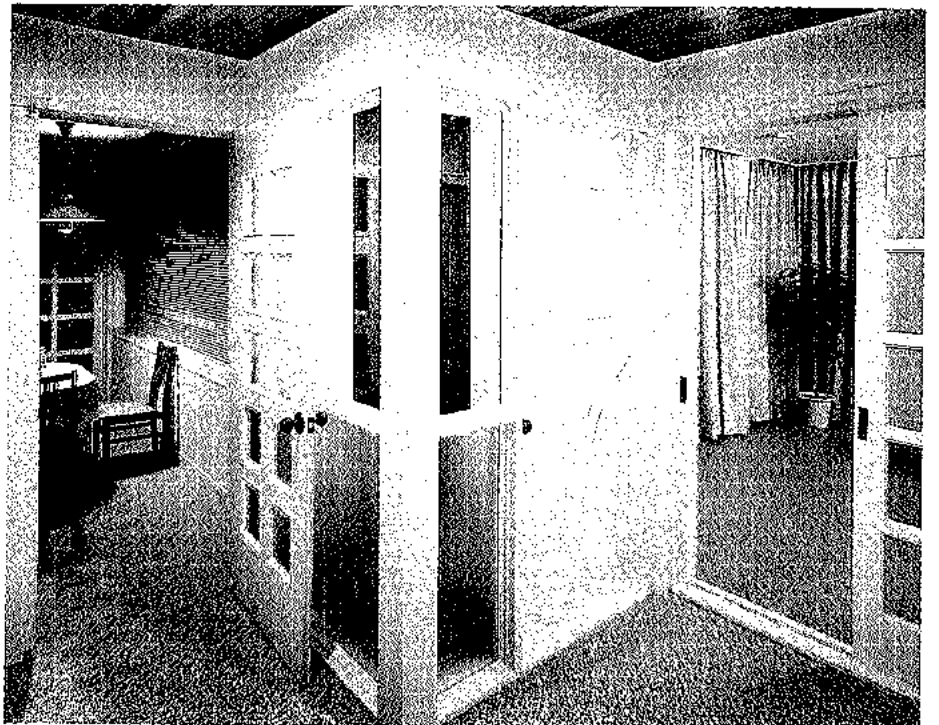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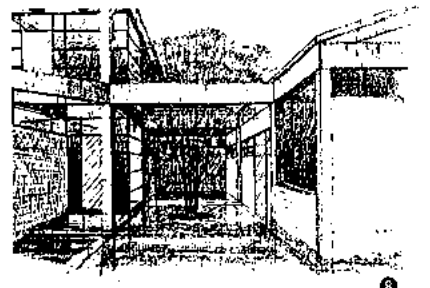
- ① 정원에서 본 전경
- ② 엑소노메트릭
- ③ 투시도
- ④ 외벽상세
- ⑤ 전경
- ⑥ 현관
- ⑦ 현관진입부
- ⑧ 건물연결부 투시도
- ⑨ 1층평면도
- ⑩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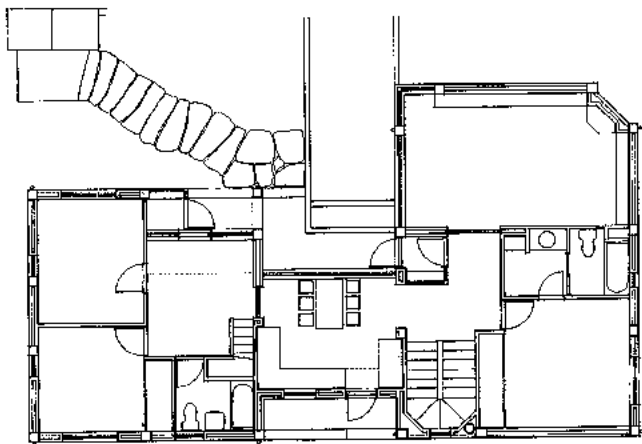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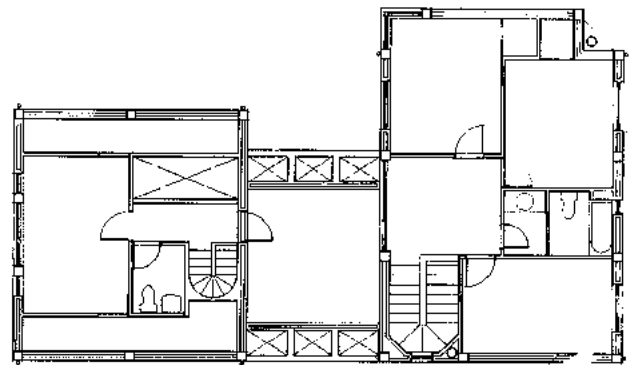
7



8



9



10

수원 대한극장

Daehan Theater
at Suwon



대지위치/수원시 권선구 교동
대지면적/689.0㎡
건축면적/440.85㎡
연면적/1,996.98㎡
지역지구/상업지역, 제2종미관지구
규모/지상 3층, 지하 2층
구조/철근콘크리트라멘조
외부마감/외벽: 외장 타일
창호: 패어 글라스(반사유리)

설계소요

본 프로젝트의 설계 접근은 매우 복잡하였다. 우선 불규칙하게 생긴 조그마한 대지위에 건축주의 요구조건은 특이하고 아름답게 꾸며 달라는 막연한 요구였다. 영화관의 설계에 있어 명쾌한 평면계획과 함께 음향·조명계획·무대구성·공기조화등 기술적인 검토와 친근하기 쉽게하고 기능성을 높이려 하니 못생긴 대지와 까다로운 범규제한이 원망스러웠다.

우선 Mass Study 후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전면 도로에서 Set Back 시켜 배치하여 옥외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평면 계획은 1층 전체를 휴식공간으로 두고 2·3층과 지하 1층에 영화관을 두어 고객들이 친근하기 쉽게 만남의 장소·대화의 광장으로 공간 구성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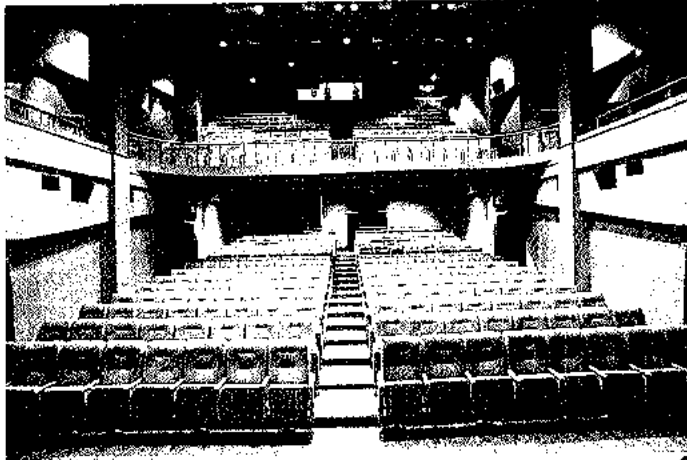
수직 동선을 연결하는 계단은 시원스럽게 넓고 Landing Space 부분은 유리 블럭을 사용하여 빛의 신비스러움과 원형감을 이용한 채광 효과를 부여하였다.

Facade 계획은 상업용 건물로서의 Mood 형성을 위하여 Aidma 법칙의 광고효과를 가미시켜 각종 형태의 조합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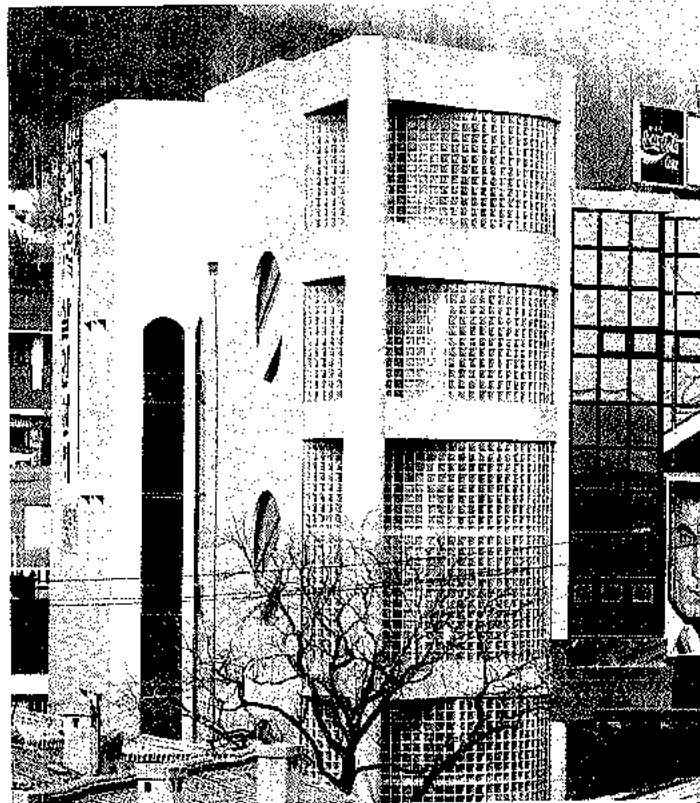
건축주의 경우 건축은 작품임을 인정해주는 미적·지적 가치기준을 겸비한 예술인이었기에 설계작업을 미흡하나마 마칠 수 있었으며 끝으로 그 지역에 Land Mark 가 될 수 있는 건물이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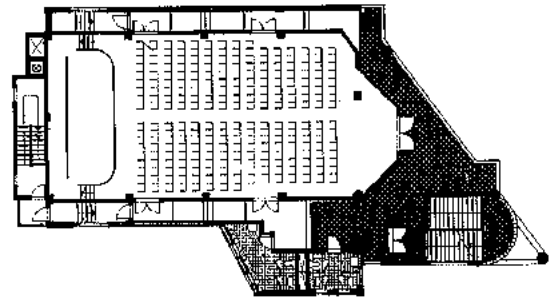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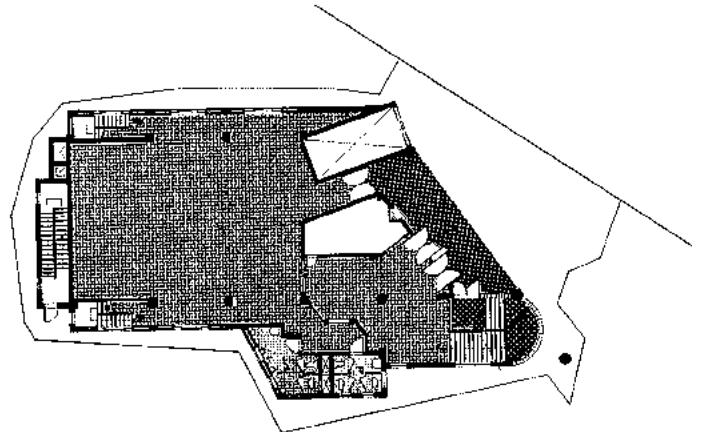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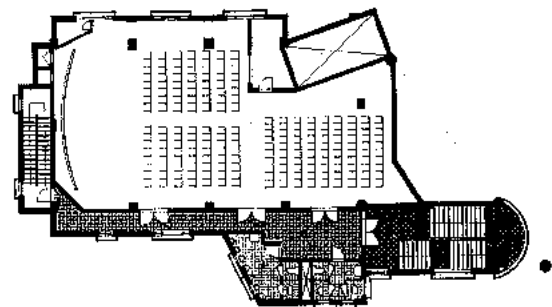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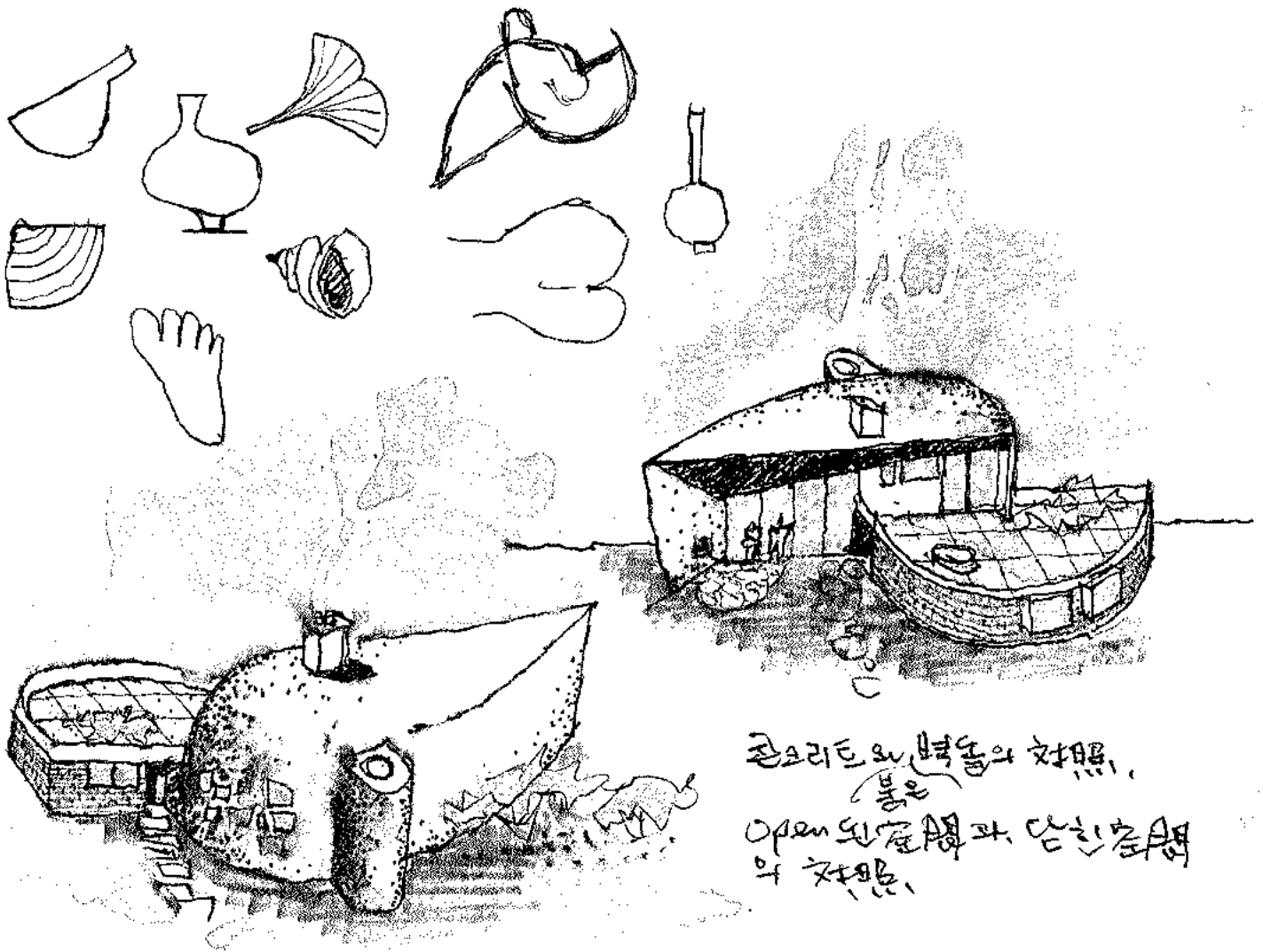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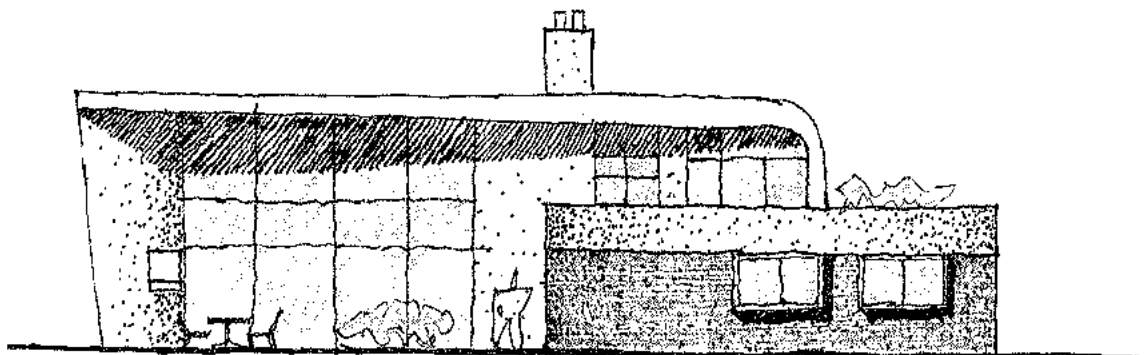
- ① 전경
- ② 내부 계단참
- ③ 무대에서 본 내부전경
- ④ 남측 외벽상세
- ⑤ 2층 평면도
- ⑥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⑦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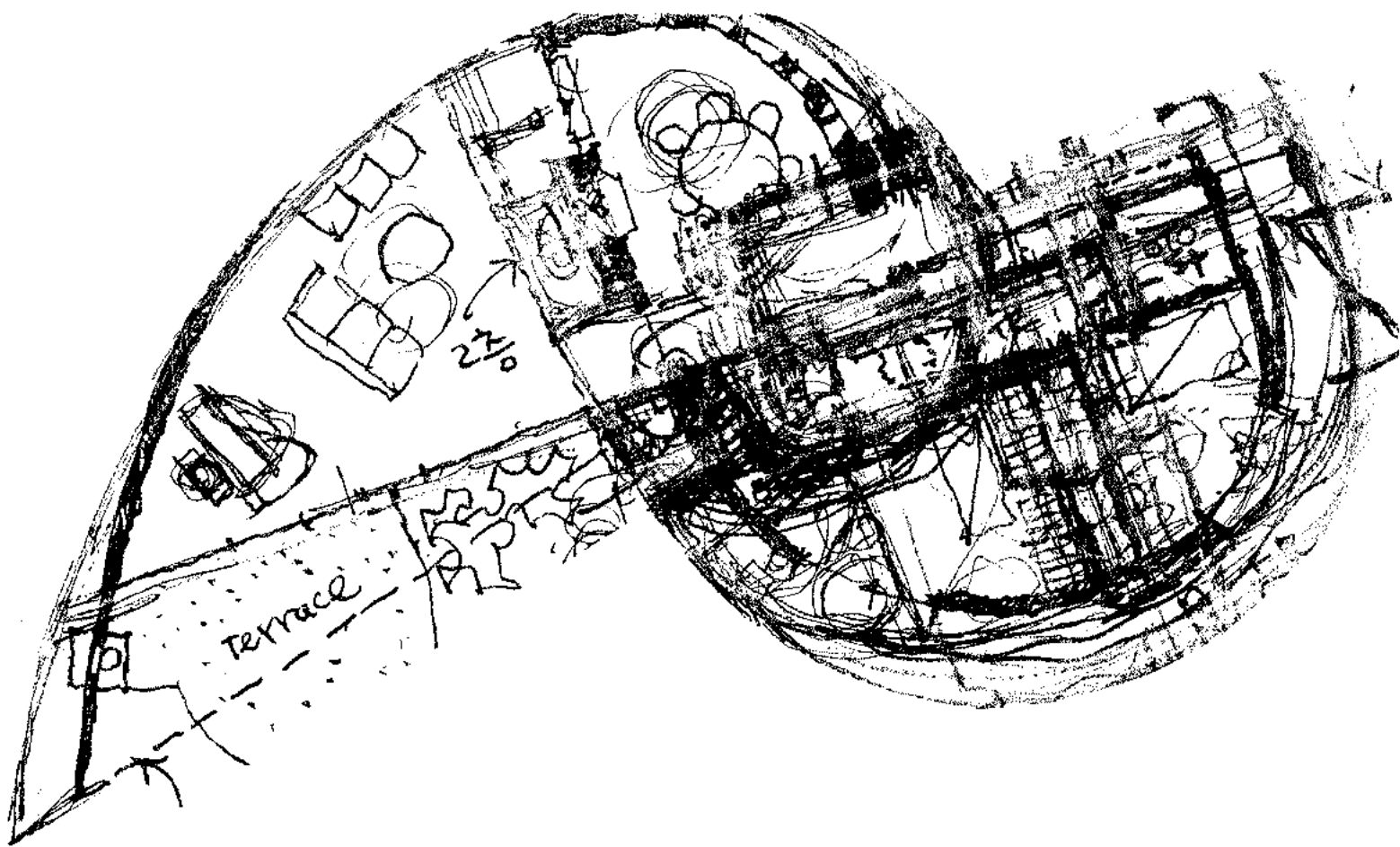
貝殼의 집

安秉義/종합건축사사무소 鄉건축



콘크리트와 벽돌의 対照,
 붉은
 Open 외출과 닫힌출입
 의 対照,





며 칠전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세계 제2차대전 당시 독일의 「아우슈비츠」의 고달픈 생활 속에서 몸이 건강한 사람보다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잘 버티었으나, 가장 늦게까지 굶기지 않은 사람은 感性이 풍부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감옥에 갇혀서도 아름다운 노을진 저녁하늘을 보면서, 아저씨 자연은 저처럼 아름다운가 하고 그들이 놓여져 있는 고달픈 환경을 잠시나마 잊곤했다는 이야기다.

젊었을 때, 소위 사춘기때 나는 꽃중에도 유달리 앓은뱅이 꽃을 좋아했다. 더할나위 없이 아름다운 보라색의 너무나 자그마해 잘 눈에 띄지 않는, 하필이면 그 꽃을 좋아했을까. 매우 소녀적인 감상이다.

나이들면서 이러한 감상은 사라지고, 감각은 무디어지고, 눈물은 말라버린다. 매우 슬픈 일이다. 이런 무딘 감각에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축이 탄생할리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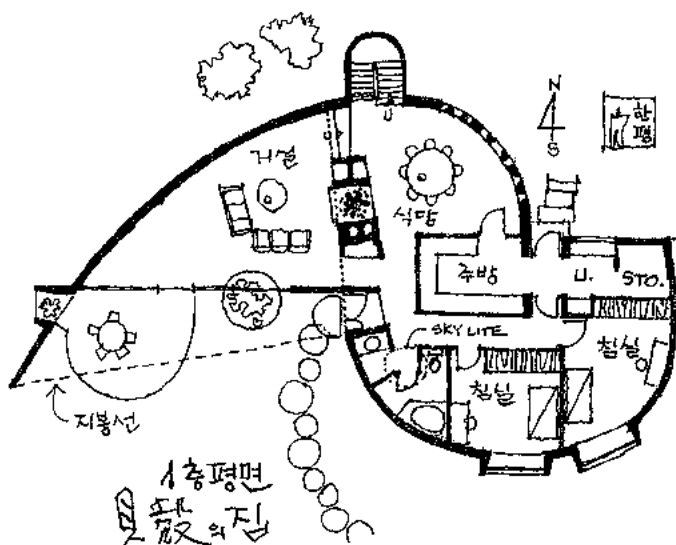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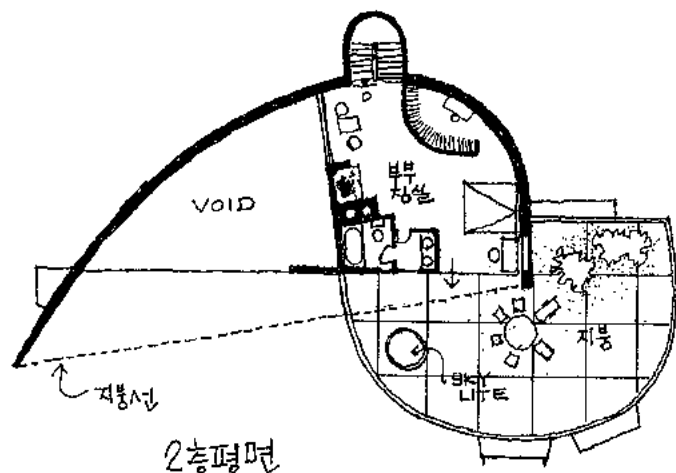
이런 생각에서 스케치한 것이 패각의 집이다. 한 25년전, 제1회주택전 때 선보인 것으로, 아직도 클라이언트가 나타나지 않아 네 머리속에 간직돼 있는 꿈이다.

옛날의 감성을 되찾자.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정감이 가는 것으로 가득차 있다.

낙엽이 흐트러진 길거리, 바닷가의 조갑지와 작은 돌맹이들, 단풍과 은행잎과 여러가지 나무들, 고려자기, 풍만한 여인의 엉덩이.

이런 정취가 흠뻑 느껴지는 건물을 지어야겠다.

안녕하세요



“눈”의 나라 이야기

朴英健 / 종합건축사사무소 영건

가룸에 콩 나듯이 하는 해외 나들이를 겸한 출장을 떠나게 될 때마다 나타나는 이상한 “징크스”같은 것이 있다. 새롭게 접하게 될 환경에 대한 일말의 불안을 떨칠 수 없는 터에 잠시나마 떠나온 고국땅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한가지씩 일어나곤 하는 것이었다. 관문점에서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났던가 KAL 기 격추 사건이나 올림픽 기간중에 일어난 미국인들과의 사건들이, 어찌보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해도,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보면 마냥 지나칠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새해들어 한달가까이 지났음에도 설날을 앞두고 이 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4박 5일의 예정으로 “눈”의 나라라고 부르는 일본 북해도 지방으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현재 사무실에서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 가운데 스키리조트 관련시설이 있어서 한창 시즌일 때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가다가 싶더니 “정계개편”이라는 도대체 짐작하기도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던 것이었다.

남의 나라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다지 관심이 많은지 매일같이 모든 신문의 일면 톰을 장식하는 중요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우리 일행이 만나는 사람마다 의례껏 이 일을 화제로 삼고자 했으며 어느면에서 보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드디어는 정치형태까지 그네들을 본따서 모방하려 한다고 으쓱대는 면도 없지 않았다. 그런식으로 분위기가 잠허가다 보니 이번 출장의 목적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말았다. 전에 만났던 일본인 친구들 가운데에는 일본 문화의 뿌리는 한국에서 전해진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던 아가 적지않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많이 달라져서 우리 일행은 마치 구한말에 신문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사절단 같은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다. 일본에서 보면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해도의 오지에 있는 어느 작은 호텔의 지배인으로부터, 서울로 수학여행 온 시골학생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일본인 특유의 친절함에 감탄하기

보다는 강한 자격지심이 앞서는 것은 여쭙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저러한 사정에 불구하고 우리가 부여받은 과제는 분명한 것이어서 가지고 간 일본제 사진기와 VCR로 열심히 찍어대면서 그들이 이미 이루어놓은 것과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계획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나마 다행한 일은 일본에 오기에 앞서 북미지역과 유럽의 동계스포츠 관련시설들을 지난해에 약 한달간에 걸쳐 돌아본 경험을 갖고 있어서 비교적 낯익은 시설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점이었다.

이번에 방문했던 북해도의 삿포로 지역에 있는 몇 개의 스키리조트 가운데에서 우리의 주요 관심대상이었던 “도마무”와 “사호로”계획은 환경계획 및 디자인 부분에서 1989년도 최우수 및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바 있는 비교적 최근에 완성된 것들이다.

“미래파적인 개념을 통하여 완성한 대규모 리조트 도시의 탄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운 “도마무 리조트”계획은 규모나 내용면에서 과거에 시행되었던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981년에 개발계획이 확정되었으며 1983년에 처음 개장한 이래 현재까지 약 120만평이 개발되었고 최종 목표시까지 약 600만평~800만평으로 개발규모를 늘릴 예정이며 수용능력이 5만베드에 이르는 숙박 시설을 갖추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개발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종류의 시설을 고르게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볼때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인 면에서 “오리지날리티”를 갖는 독자적인 개발목표를 설정하여 전체 단지계획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대단한 것이었다. 우리 사무소에서 당장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릇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많은 불확정 사항을 내포하고 있어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요인에 의하거나 소수의 의사결정 집단에 의하여 마구잡이로 변질되고 급기야는 처음에 세워진 구상들은 하나의 전설로 남게되는 경우가 십상인데 “도마무”의 경우는 이와같은 난제를 극복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별도로 리조트 전용의 철도를 개발하는 등 투자의 적극성을 보인점과 36층에 이르는 타워형의 호텔을 건립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범위를 가급적 줄이고서 하는 노력은 대담한 시도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이다. 인공설을 만드는 물을 확보하고 단지 내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인공호수에 면해있는 “안도(Tadao Ando)”씨 설계의 “물의 교회” 부분은, 인공의 것이 자연상태와 어떻게 일체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예가 된다. 뛰어난 자연조건을 배경으로 가지는 휴양지 개발계획에서 늘상 부딪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연환경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상반되는 측면을 여하히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고려가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사호로 리조트” 개발계획은 또 다른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일본에서 손꼽히는 재벌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70년대에 호텔건설분야에서 우리나라에도 진출한 바 있는 건설회사가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여 지난해 말에 개관한 호텔이 리조트단지의 중심적인 시설이다. 160실 정도의 객실과 컨벤션 및 휴양 호텔에 필요한 부대시설만을 갖추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규모나 시설의 내용면에서 별다른 특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퍼블릭스페이스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실내 공간계획은 어느정도 성공적이라고 보여진다. 디자인의 목표가 기업이 추구하는 경영방침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라는 설계자의 겸손함은 고급의 재료를 다양하게 구사하지 않고서도 건물 내외부에 걸쳐 풍기는 세련된 이미지를 얻어내고 있는 점에서 더욱 돋보이는 것이다. 시공의 깔끔함이 무엇보다 우선되기는 하지만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주로 사용하여 질감이나 색상의 변화를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일관된 분위기의 연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있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대체로 실내 분위기가 중요시되는 호텔이나 상업시설 계획에서 빈번하게 드러나는 사항으로서 소위 “인테리어”를 어찌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하

면서도 현실적으로 보면 설계와 시공의 구분이 모호한 형편이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 더욱이나 인테리어를 한다고하면 당연히 많은 돈을 들이는 것으로 생각되는 점도 문제가 된다. 분명한 사실은 인테리어는 건물의 내부를 청하는 말이며 건물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건축설계에서 별도로 취급되어지는 불상사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오해의 근원이 건축주로부터인지 건축가 스스로의 문제인지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서서비스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나 설계비를 아끼면서 인테리어 시공을 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함께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도 스키리조트가 개발되기 시작한 지 10여년이 지났으며 최근에는 본격적인 시설을 갖춘 스키장이 상당수 개장을 보았다. 아직까지, 겨울철 여가활동의 일부로서 스키를 즐기는 것이 대중화 되었다고 하기는 이르지만 현재의 추세로 볼때 조만간 보편적인 라이프스타일의 일부로 정착하게 되리라고 짐작된다.

기존의 국내 스키장의 경우를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그들이 조금 앞서 있기는 하지만 서양으로부터 전해진 것이기는 마찬가지이며 그들 나름대로 일본적인 독자성을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여행중에 묵었던 어떤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지식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내내 마음에 걸린다.

건축주 : 박소장님, 아제 되었네요! 적당한 예를 찾았잖아요? 돌아가서 매일 일만 남지 않았습니까?

박소장 : 그울쎄요? 그거 상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온 까닭은 여기에 없는 것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인데요?

건축주 : ? ? ? ?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장을 통하여 보는 풍경은 온통 하얗기만 하였다.

第2의 創造主

The Secondary Creator

宋洙九/건축사사무소 한송
by Song, Soo-Koo

수많은 사람은 고대부터는
이러(가), 이러한
시대(들)에서 아연(하)는
문명(의) 진숙으로 해(하)는
모든 행위(와) 피해(의)식
속에 보(하)는 바라(하)는
속(하)이는 바(하)는 부(하)는
전(하)는 지(하)는 있다.

年年歲歲 해가 지고 또 어둠이 건히면 되풀이되는 하루하루를 우리 스스로 매듭지어 초조해 하는 연말년시에 소망스런 산타할아버지의 자비를 기원하는 어린이가 이제는 얼마나 될지, 또한 선물과 기쁨만으로 속아 주어 오히려 부모를 위한(?) 해주는 어린이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는 세상 많이 변했구나 생각한다. 하기가 요즈음의 성탄절도 사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이 아니고 상업적 행위의 결과로 정착된 세속이라는 사실을 아는 어른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오히려 의심스러울 뿐이다. 그래서인지 연말분위기는 백화점에서부터 시작이며 해바람에서 뿜어낸 한풀이라도 하듯이 이제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백화점의 정보물이 원사 없이 날아든다. 그러나 한결같이 필요한 물건을 싸게 구입하자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줄 선물용이라 하니 마음은 무겁고 초조하기만 했던 연말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입품은 극소량만이 생산시설 및 가공원자재이고 거의가 완제품모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설마했지만 80년대 마지막 결산에서 어둡고 불안한 새해맞이라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새삼 걱정스러움이 앞선다.

해마다 맞이하는 새해이지만 어느 해보다도 그 뜻이 다른 경오년, 1990년인 것 같다. 한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연대이고 시작이다. 되돌아 보는 지난 시간은 정말로 다사다난 했던 과거이다. 명예스럽지 못한 공화국 앞에 붙는 숫자는 수의에 붙은 번호같은 느낌으로 씁스럽기까지 한데 눈만뜨면 불러대는 이야기는 무덤데로 무디어진 새태를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다. 큰소리치는 사람은 모두가 잘났고 애국자이며 말없이 살아가는 진짜 보통사람은 어리석고 바보스럽기만한 요즈음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있다면 무엇을 하는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인간이 관여하지 못하면 역사가 선교할 때를 기다려야 하거늘 다급한 흑백논리의 아우성은 이곳이 바로 지옥이 아닌가 생각되며 아담의 원죄에서 부터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셨던 그리스도의 고행스러운 사랑도 이제는 효험이 없어졌는지 그렇게 많은 종교인들이 기원하고 참회하였지만 오늘에 불안은 내일을 잇을 줄 모른다. 개신교신자 1천만명 천주교신자 250만 불교신자 1천만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정도가 종교인이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평화스러운 이웃, 안정된 사회가 되어야 하나 "한국형 부패"라는 신조어의 발생지가 되었고 모든 사찰에서는 통일을 위한 기도법회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소련의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고르비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동구 사회주의국가에서만 기적적이고 신기할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북반은 금수강산이라는 이땅위의 찬바람은 아직도 냉랭해서 새해에도 변함없이 더욱 간절한 기도로 정진 해야만 되겠다.

지난기간 동안 수많은 변화와 우리의 자긍심을 보다 희망적이고 자신감있는 해맞이가 되어야 하나 얼마전 발간된 "시사저널"지에는 권력이 아무리 썩어도 깨끗함으로서 사회전장을 지켜야 할 고등전문업 - 종교, 학문, 교육, 언론, 법조, 의료계의 부패 오염도를 측정한다는 기사를 읽어 보고서는 새삼스러움 보다는 이러한 시대를 같이하는 증오스러움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시대의 삶인가 고민스러울 뿐이다. 고등전문업, 엘리트집단, 화이트칼라, 여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우리사회의 가치규범적 기준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회의 상식적 판단에 따른 올바른 기준 척도만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여 엘빈 도플러의 말지 않은 미래 속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니 지난 일년의 우리사회는 고도화되는 여러가지 어려운 시대흐름에서 이완되는 불안의 연속으로 책임감 없는 행위와 피해의식 속에 요행을 바라며 살아가는 야행성 부류의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20세기의 지나간 정치권력의 비리속에 악몽은 오늘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염치없는 파행성행위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비민주적인 우리의 원죄를 스스로 인지하고 참회하지 못한 시대임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오랜동안 우리는 민주화란 의미도 불분명한 나의 의무보다는 남의 권리에 핏발을 세우고 이 사회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또한 전문직업인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의무인지 알지 못한 채 오지랖 넓고 시샘많은 철부지 시민이 아니었다 생각해 보면서 나의 어린 학생시절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한다. 그 선생님은 일제말기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대처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배우시던 일본인 스승께서 일본이 패망을 했음에도
“나는 가르치는 것이 나의 직업이며 임무”라고
말씀하시고 행복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직 교육에만
전념하시다가 패전국민으로 타외에 따라 귀국하는
것을 보고 교육자의 참된 상을 기억하고 자신도
그러한 자세를 갖기를 노력하며 우리에게
강의하신다는 선생님의 말씀은 지금 이제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있음은 현실의 불합리성에
당혹스러움만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생활인의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인생관,
교육자로서의 참된 스승의 길, 공무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국가관, 군인으로서의 정도, 법관으로서의 예지,
상인으로서의 도덕성, 학생으로서의 정확한 좌표,
노동자로서의 근면성실, 우리건축인으로서의 사명감
등등... 다양한 조직사회에서 오직 나에게 주어진
사명감과 책임감속에 직업전문인으로서 자긍심이
되살아날 때 민주화는 이룩되리라 본다. 지난 영광의
자긍심을 되찾아 불안스러운 새해에는 정치인은
사리보다는 공익에, 사도의 일로 매진해서 스승의
상이 점령되고, 군인은 오직 군인일 뿐이라는
명제속에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노력의 대가를 남이
알아주는 살아볼만한 사회가 이룩되어 다음세기를
여는 마지막 새해로서 우리건축사도
전문직업인시대의 소명의식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남을 닮으며 나만의 존재가치성을 부양시키는 우리의
현실은 시대적인 과정으로 접어두고
고등전문인으로서의 사명감속에 “제2의 창조주
건축가”란 말이 소망스럽지 않을까?

구랍 22일 83세로 장례를 마친 다음 영면의 소식을
알리게한 아일랜드 태생의 프랑스 극작가 “사부엘
베케트”의 죽음은 물론 본인 뜻은 아니겠지만 죽음의
말미까지 신문지상의 광고가득한 우리의
저명인사와는 너무 대조적이고 미래를 여는 이시대에
되새겨 볼만한 일이며 그의 죽음 또한 이시대의
의미를 갖게 한다. 그의 대표작인 “고도를
기다리며”의 불확실한 미래의 기다림속에 주인공의
갈등은 오늘 우리의 군상이며 불안과 기대속에
기다리는 허상의 고도 그는 소망의 신일수도, 죽음의
사자일수도 있었지만 기다림 그것은 우리가 격어온
지난날들이 아닐까 한다. 기다리고 초조해 싸우던 이
시대는 급진적인 변화의 해바람속에서 이시간에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게 한다.

비참한 차우세스쿠의 마지막 모습의 사진은
페레스토로이카의 덕으로 돌리고 전직대통령의
증언에 불만을 명패를 내민지는 헤프닝으로 달래고,
과소비 풍조는 한국형 부패의 원인으로, 노사간의

불협화음은 새삼스러이 맞보는 민주화의 상처로,
거리의 밀리는 학생의 소용돌이는 잠든자를 깨우는
기상 나팔의 우렁참으로 포용상있게 수용할 때
지난날의 충격과는 오늘의 값진 교훈일 수 밖에
없으며 이로써 이무기로 변한 용이 다시 승천의
정진을 요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세대에
가다리는 자, 아니면 새역사의 창조사가 될 것인가를
가늠해야 할 것이다. 되짚어 보기도 짜증이 나는
건축사의 재반권의 보호문제와 보호를 받을만한
가치의 평가 기준에 따른 자존심의 손상 그리고
소유의 가치보다는 존재의 가치로 우리의 위상을
바꿔야 할 의식변화의 부재등등은 기지개가 아니고
도약의 첫발을 내딛는 새아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항상 민주화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민주화가 되지 않는데 민주화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화가 되니까 민주화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사건건 민주화
민주화이다. 이런 말의 성찬도 좋지만 여기서 한번
사용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 되뇌어보면 모두가
민주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철부지인지
민주화라는 말을 이해 못해서인지는 몰라도 우리처럼
몰아부쳐 지고 당하기만 하는 단체도 그리 흔하지
않을 것 같다. 지나친 자기비하 일지는 몰라도 우물린
개구리 같은 우리가 유관기관의 이기적 놀이상대이며
희생양일 때 오늘을 남의 탓으로만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우리는 말히는 지렁이 일뿐이며 후손에게
버림받는 한시대의 전문인일 뿐이다.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서의 생활공간은 우리에게는
희망보다는 긴장과 초조감을 갖게되며 전문적인
우리의 분야가 오늘날과 같이 제 몫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단지 두려울 뿐이다.
뜻있는 199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고도의 기다림
보다는 로버트 솔러의 적극적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여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불자의 불이사상으로, 다가오는 세기의 주역으로서
“제2의 창조주 건축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대의
빠른 변화는 그 가치의 척도에 따라서 변하여 과거의
가치가 내일의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나 오직
오늘의 가치기준으로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후손에 길이길이 청송되며
보존되는 낙원의 건축문화, 그것은 꿈이기 전에 나를
지키고 참다운 이웃을 보호하며 오래 오래
살아볼만한 새상이 될 때 의미있는 해바람이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때 보다 보람찬 새해가 될 것이다.

複合用途 建築物의 發展傾向(Ⅱ)

— 美國의 複合用途 Complex計劃과 發展方向 —

Planning Tendencies of Mixed Use Complex in U.S.A

1. 머릿말

지난 1월호에서 다른 유럽지역 복합용도 건축물의 계획경향의 이해가 수백년 동안 이루어져 내려오던 도심부의 전통적인 복합구조 특성을 파악하여 새로운 건물에 수용하려는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면 미국의 복합용도 Complex의 발전은 유럽대륙의 경향과 전혀 다른 몇 개의 계획기반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도시구조의 수용차원 보다는 대도시의 발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계획적 요구로써 한 건축물 혹은 연결된 몇 개 건물내에서 연관 기능을 한데 묶어줌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성과 편의성의 창출이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이에 덧붙여 도시발전과 이를 수용하는 건축행위의 연계관계에 관심을 가졌던 도시학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도시기능의 복합화」에 대한 연구도 복합용도 Complex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몫을 해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원고는 위와같은 도시적 요구와 복합용도 건축물의 발전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하면서 이들 요구를 건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복합용도 건축물의 계획패턴의 시대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부 도심지 재개발에서 거론되고 있는 복합건축물의 기본설계시, 주요한 계획방향을 찾아내고 기초자료로써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원고의 의의가 있다.

2. 복합용도 건축물의 출현

미국의 복합용도 건축물의 출현은 서유럽에 비해 그 역사가 대단히 짧다. 1950년경 J. Jacobs 등에 의해 이론적으로 제창되었던 도심내 복합용도 구조의 존속 내지는 보완에 관한 주장과 V. Gruen 이 발표한 몇 개의 글에서 기존의 Shopping

Center 계획시 사용되었던 용도복합의 방법론을 도심부 낙후지역의 재개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 검토 등이 미국도시에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출현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합건축물 출현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던 도시적 요인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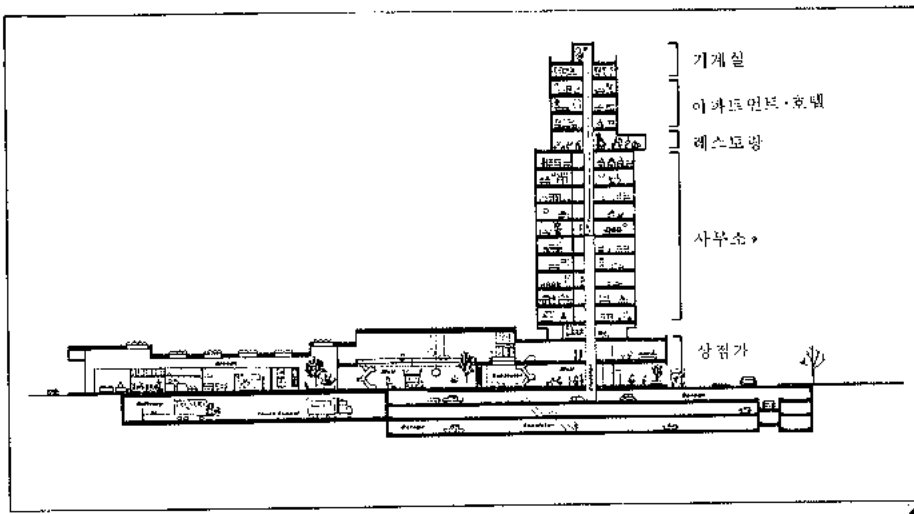
첫째, 상업 및 업무기능의 도심집중과 도심부 주거의 퇴락화 및 도심공동화의 조짐, 둘째, 도시전체에 부정적인 작용을 했던 일부도심의 단일기능화(주로 업무중심)와 도심활성화에 대한 도시민의 요구, 셋째, 도심내 업무 및 서어비스 기능 종사자들 중에서 도심내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임대 도시형 아파트(일명 Condominium)의 꾸준한 수요와 기존도심의 고급 Condominium에 대한 인기 유지, 넷째, 록펠러센터(Rockefeller Center) 등 도심부 재개발 프로젝트로 시행되었던 몇가지 성공적인 사례에 따른 건축가들의 자신감 등이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주거(혹은 호텔)+사무소+상가」를 묶는 완전한 의미의 복합용도 Complex의 출현배경이 형성되면서 1950년대말경 New York 주의 중소도시인 Rochester에 미드타운 플라자(Midtown Plaza)라는 복합용도 건축물이 설계되고, 그 건설이 본격화 되었는데 복합 Complex에 관한 중요한 연구단체인 워싱턴의 Urban Land Institute(ULI)에서는 본 건물을 미국 복합용도 Complex의 효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 보다 5년전에 이미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서는 복합건축물이 계획되었는 바, 펜센타(Penn Center)라 불리워지는 이 프로젝트는 「사무소+호텔+상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1954년에 설계되어 몇명의 개방업자를 거쳐 Midtown Plaza와 비슷한 시기에

吳德成

충남대 건축과 부교수
by Oh, Deog-Seong



①

완성되었다.

이들 두 프로젝트의 공통적인 특성은 주거부가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Apartment Hotel 이 고층부에 일부 수용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1958년 건축가 빅터 그루엔 (V.Gruen) 에 의해 계획되어 1960년에 완성된 Midtown Plaza (그림 1)는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하3층의 지하차고와 지층상부 2개층의 쇼핑센터가 기반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위에 18층 높이의 타워 (Tower) 를 세워올려 사무소와 Hotel 이 그 내부에 수용되어 있다. 사무소부분(3~12층)과 Hotel 부분(14~20층)사이에는 레스토랑을 배치해 양측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두 부분을 분리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유사한 실례로서 NewYork 시의 도심부에 위치해 있는 500 Parktower (그림 2) 역시 50년대말에서 60년대초에 지어진 초기 유형으로서 넓은 기반부와 상부 Tower 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Midtown Plaza 와의 차이점은, 이 건물의 기반부가 상업용도가 아닌 11층 높이의 사무소와 점포라는 사실이며 그 상부에 40층의 주거부 (Condominium) 와 사무소가 결합되어 있는바, 외견상으로는 「기단부+ Tower」의 형이나 실제 내용은 기존의 사무소(Pepsi Cola 본사 구사옥)를 존속시키고 새로운 건물을 연결해서 지은 후 현관부를 공유함으로써 얻어진 다소 어색한 모습의 중축형 복합용도 건축물 유형이라 할 수 있다.

3. 복합용도 Complex 의 발전(I): 단일 고층건물내의 용도복합

1. 복합용도의 초고층건물과 기반부(Base)의 도시개발

1960년대 중반을 접어들면서 NewYork, Chicago 등을 중심으로 많은 도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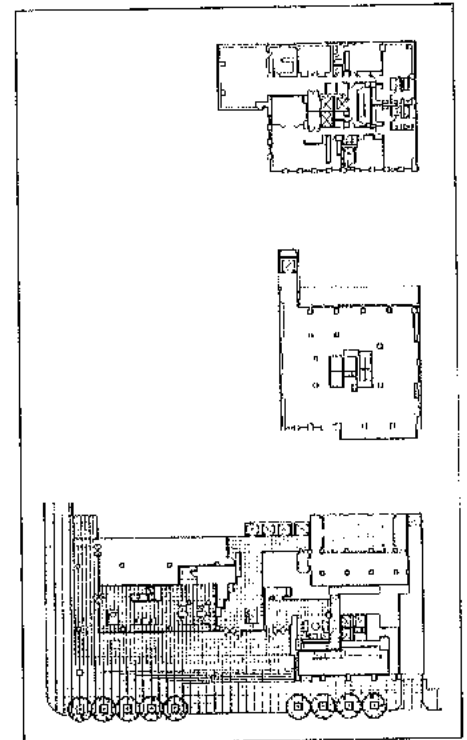
초고층 건물이 지어지면서 그 내부에 하루의 모든 생활요구 공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무소+ Condominium + 상가 및 편의시설」을 묶어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대개 이들 프로젝트는 도심의 값비싼 요충지에 위치한 기존건물을 헐어내고 초고층 건물을 지어올려 도심지의 비싼 지가만큼의 효용을 얻기 위한 의도에서 시행되었다. 이경우 새로 지어지는 초고층의 마천루가 주변을 압도해 버리는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되자 기본계획의 단계에서 건물자체 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와 연계성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초고층건물과 주변의 관련성을 맺어 주려는 시도중에서 초기의 접근방식은 건물 주진입부와 도로사이를 일정거리 띄워주고 전면광장 (plaza) 을 확보해주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두가지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지니게 되는데, 이것은 도로변에서 부딪히는 거대한 건물의 압박감을 다소나마 탈피할 수 있는 효과이며, 건축주의 측면에서는 도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건물전체를 보고 감상케 함으로써 자기건물에 대한 과시와 성취감도 느낄수 있다는 상호보완적인 이점이다. 그러나 본 방식은 도심의 엄청나게 높은 지가 때문에 한계에 달하게 되므로 시정부의 유도나 도시 Open Space 의 제공에 따른 일정규모의 용적을 보너스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그 다음으로 시도된 방식은 건물의 저층부 특히 지층이나 지하층의 일부를 개방하여 공용의 보행자 Mall 로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도시불력의 일부 혹은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내, 건물사이에 공용 Mall 을 조성해 줌으로써 기존 도시가로 이외에 별도의 직전후 보행자공간이 도심내에 제공된다는 이점이 있다. 즉, 도시민들은 사계절의 변화와 무관하게 쾌적한 실내온도와 환경을 만끽하면서 Mall 내부를 걸어나고 앉아서



②



③

① 그림 1. Midtown Plaza, Rochester시 (설계: V. Gruen)

● 그림 2. 500Park Tower, New York시 (설계: J.S. Polshek)

② 전경

③ 위로부터 주거층평면(대충 2 Unit), 사무소층 평면 (7~10), 1층평면도

설 수도 있다.

한편 건축주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이들 통행로 양편에 상점가를 배치하여 상업적 이득을 올리는 이해타산도 있지 않았으며 이들 통해 자연스럽게 초고층건물의 1층 혹은 지하층 등에 공용의 보행 Mall 과 상점가가 형성될 수 있었고 용도복합의 관점에서는 「상층부의 업무나 주거기능+하층부의 상업및 도시공용공간」의 계획패턴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건축주들이 이 방식을 기꺼이 채택했던 이유로서는 NewYork 등 대도시의 경우 건축조례의 완화규정을 만들어 도시공용 공간으로 제공한 건축면적만큼 용적률의 보너스를 주는 일종의 특별지역제 (Incentive Zoning) 를 마련하여 도심부의 비싼 땅을 도시공용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배려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70년 초반에 NewYork 도심부에 지어진 Galleria (그림 3) 는 이와같은 방식을 통해 구체화된 대표적인 복합용도 초고층 건물의 실례이다. 본 건물은 NewYork 중심의 58번가와 57번가 양도로에 걸쳐있는데 57번가 측에는 5~6층의 고풍스러운 사무소들이 서있고 이들의 보존에 대한 요구가 컸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본 건물의 계획시 이를 감안하여 건물높이를 기존건물 높이인 6층까지만 하고 35층 높이의 고층 타워는 뒤로 후퇴시켜 설치함으로써 적어도 57번가에서는 주변의 5~6층 건물을 압도하는 마천루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피하려고 하였다. 그와함께 57번가측의 주현관은 도시민의 관심을 끌어 건물내로 유입시키려고 하는 시도에서 내측으로 경사지게 유리면을 설치하였으며 주현관에서 도시 Block 반대측의 58번가로 관통되는 공용의 보행자 Mall 이 조성되어 있다.

한편 본 공용 Mall 은 단순한 통행복도의 느낌을 벗어나 도시공간의 느낌을 주기 위하여 상부를 5개층까지 터울리고 지붕면의 일부를 개방하여 5층상부 중정의 개구부를 통해 자연채광이 1층바닥에 미치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정을 둘러싸고 있는 5개층 부분에는 상가와 고급 레스토랑을 배열하여 도심내 쇼핑 Mall 의 분위기를 더욱 높여 주었다. 이와같은 중정과 주변부의

처리방식은 일종의 「아트리움 (Atrium) 형성방식」으로서 많은 건축물 진입부에 이용되는 방식이다. 58번가 쪽으로 배치된 55층 높이의 고층 Tower 는 3~12층을 사무소로 사용하고 16~55층은 콘도미니움이 배치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도시민에게 개방된 저층기단부의 공용 Mall 과 상가부분을 「사무소+주거」의 Tower 부분과 계획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개의 부분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Elevator 의 30 Zoning 방식(6층까지만 운행하는 저속형 Group 과 Tower 에 사용되는 고속형 Elevator Group) 이외에 각 용도 Group 의 접근을 위한 주현관부의 공간분리 방식으로써 주거 및 사무소용의 주진입부를 58번가 쪽으로 한정하고 반층 높이만큼 치켜올려 공용 Mall 양측부분의 접근통로에서 수직적으로 분리시키되 사용자의 눈에는 확실히 그 위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경우 Atrium 의 역할은 공용및 구매, 사무소와 주거라는 두 부류의 이질적인 용도구 Group 의 접근동선을 모아 엮몰려주는 일종의 중세성곽 중심부 광장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Chicago 도심부에 지어진 John Hancock Center (그림 4) 는 저층기단부의 도시공간 제공관점에서는 다소 비좁은 감이 있지만 100층 높이의 마천루내에 상이한 용도의 복합이 이루어져 있다는 데에서 흥미있는 실례이다. 건물전체는 도심형 쇼핑 Mall 과 백화점(지하 1층~4층), 차고(6~12층), 임대사무소(13~40층) 콘도미니움(42~100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물의 저층부내에 차고를 집어넣고 일차적으로는 전체건물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이차적으로 상업용도와 사무소간의 공간분리를 꾀한다는 점은 흥미로운 처리방식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건물부지의 지반상태에 따른 지하층 확보를 위한 경제적인 측면도 다분히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사무소 부분과 주거부분 사이(40~42층)에는 중간설비층을 두어 양측에 공조설비의 배분을 꾀한 물론 주거부분의 독립성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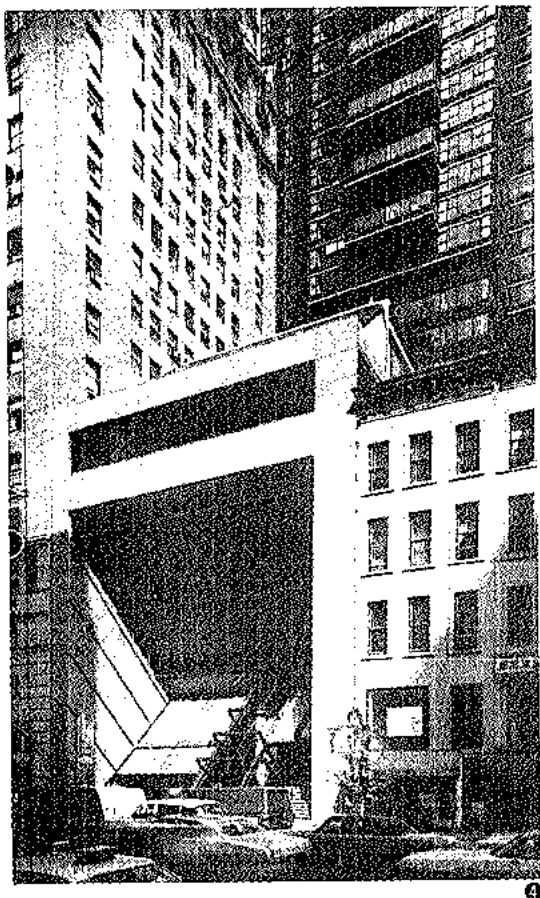
2. 초고층의 고급형 Condominium 과 저층부의 도시공간 성격 강화

'70년대 후반을 경과하면서 초고층 건물내의 용도복합 수용방식은 꾸준히 이용되어 왔다. 특히 흥미있는 것은 이들 복합용도의 초고층 건물로 인해 사람들이 도심소재의 고급주거공간 확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점인데 이것은 초기 실예인 사무소 위주의 복합건축물에 Apartment Hotel 이나 수개층의 독신자용 임대아파트 배열 방식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내용이다. 그와 함께 70년대 후반기 이후 초고층 건물유형의 개발실예들은 도심소재의 고급형 Condominium 의 격에 어울리도록 건물내의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고 반공용 공간확보와 조성계획에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이 방식을 요약해 보면 초고층 건물의 저층기단부 (Base) 에 수개층에 이르는 Atrium 을 형성하고 내부에 나무를 심고 수면 (水面) 을 설치하였음은 물론 요소요소에 조그마한 Open Space 를 조성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끌려고 시도하였다.

건물이름 보다는 건축주가 더욱 유명한 미국의 부동산 재벌 Trump 사에 의해 발주된 NewYork 중심가의 Trump Tower (그림 5) 는 도심 Condominium 형 위주의 후기형 복합용도 초고층 건물이다. 무엇보다도 주목을 끄는 것은 본 건물에서는 NewYork 중심부의 값비싼 땅을 과감하게 도심의 공용 Mall 과 보행자 공원등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데 폭 10m의 보행전용로는 반대측의 도시 Block 까지 연결되어 있다. 물론 NewYork 시 당국은 이에 대해 맨하탄 지역 특별 도시조례로서 용적률의 보너스를 주어 지을수 있는 건물의 층수를 높게 허가해 주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본 건물은 그 외관에서도 독특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도시가로 모퉁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각진 건물 Mass 의 이질감을 다소나마 덜어 보려는 듯이 측면부를 몇번씩 접어 들어가도록 처리하였고 저층의 기단부를 다시 층에 따라 접어 올라가는 방식으로 건물전체의 매스를 조정함으로써 주변건물 보다 두드러지게 아름다운 기하학적인 변화 모습을 뽐내고 있다. 따라서 이 건물은 전면에 있는 AT & T 본사건물과 함께 New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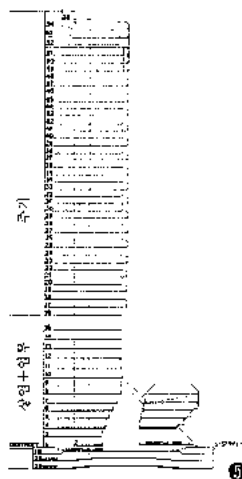


도심부에서 매우 흥미를 끄는 초고층 건물로 잘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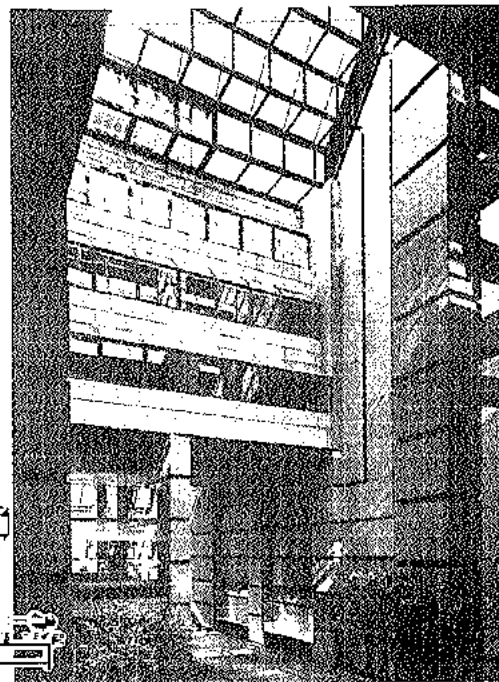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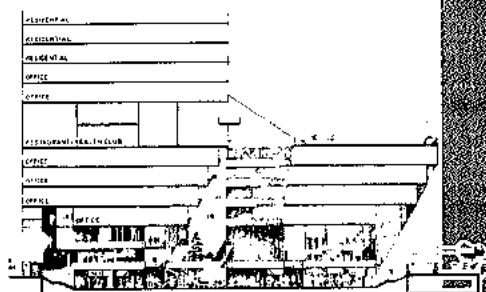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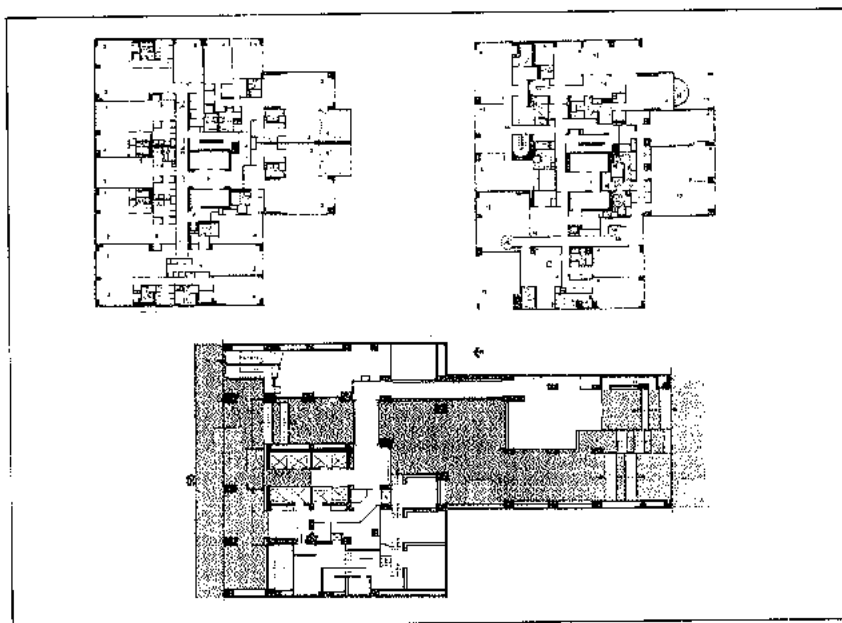
Trump Tower 부류의 외관 형상처리의 변화모습은 80년대 중반에 지어진 이른바 포스트모던풍의 초고층 건물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본 원고에서는 이들중 한개 사례만을 들어 소개코자 한다.

Portland 시 도심부에 최근 지어진 코인센타(Koin Center) 역시 비슷한 접근방식으로서 기단부를 단으로 처리하되 층마다 단을 좁혀올려 모서리의 예각을 둔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남측과 서측의 단처리 형태 이외에도 Tower 부의 2개 단처리 방식은 Tower 내에 수용되어 있는 건축용도의 성격을 외부에 소개 하려는 듯한 느낌을 준다.

Tower 증저층부의 넓은 부분은 사무소이며, 그 상부에 단을 지어 올라간 부분부터 주거부로서 양측 마당면적의 차이에서 생기는 사무소의 최상층 옥상부 바닥은 주거부의 공용공간으로써 식재가 된 거주이용의 반공용공간으로 이용된다.



- 그림 3. Galleria, New York (설계 : D.K. Specter)
- ㉑ 주출입구측 전경
- ㉒ 단면도
- ㉓ 위 좌로부터 주거유형 B (21~43층) 평면도, 주거유형 A (53층) 평면도, 1층평면도(검은부분 - 상가, 흰부분 - Tower층 공용로비)
- ㉔ 저층기단부 아트리움 단면도
- ㉕ 공용보행자 Mall (아트리움부)



본 건물은 사무소, 상가, 주거 이외에도 방송센터가 들어와 있어 1층과 지하 2개층에 방송관련시설이 수용되고 건물옥상의 뽀족탑은 모양새를 위한것이 아닌 TV 송전용 Tower 를 모양새 있게 설치한 것이다.

4. 복합건물(다발형 Complex)과 용도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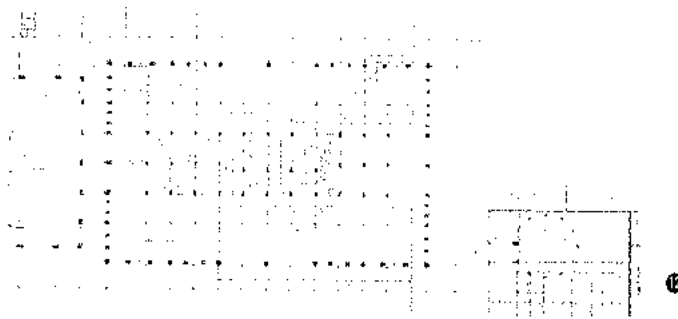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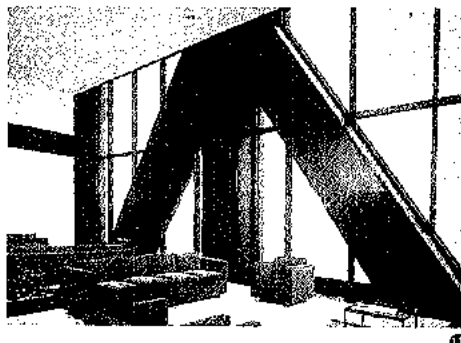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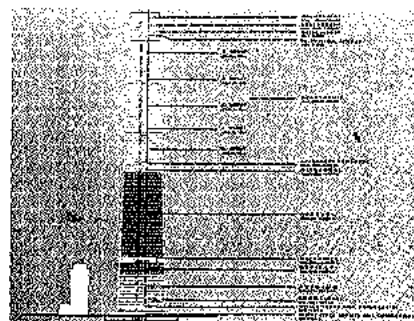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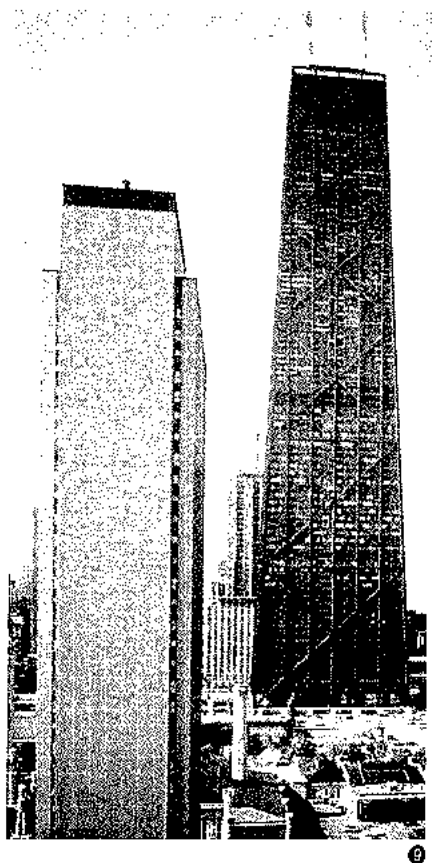
1. 몇몇 단일용도 건물의 묶임과 기반부(Base) 처리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복합용도 건물의 유형은 초고층 유형으로 발전하였음은 전술한 바 있다. 이와함께 도심일부에 입지하고 있던 복합용도 초고층 건물의 형태중 일부가 다른 모습으로 전환되었다. 즉, 저층 기반부위에 한개의 Tower 를 올려놓는 방식은 Tower 의 갯수가 증가하면서 몇개의 Tower 를 저층 기반부 위에 올려놓은 이른바 다발형의 Complex(Geb Ündelte Komplexe)로 발전하였다. 이는 단일 건물내의 용도복합, 특히 Tower 부분에 사무소와 주거가 함께 배치될 경우 생기는 기능간의 마찰을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 하나의 Tower 는 하나의 기능만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저층기단부 역시 약간의 성격변화가 이루어져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띄게 된다.

첫째, 몇개의 Tower 를 묶어주기 위해 기단부의 볼륨이 커지고 그 내부에 다양한 기능(아트 갤러리, 극장, 휴게 및 위락시설 등)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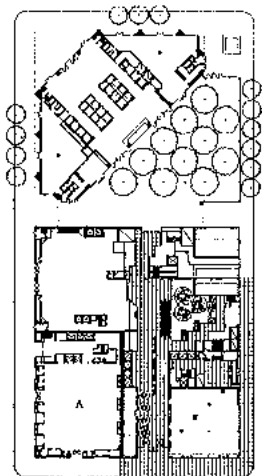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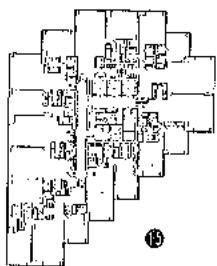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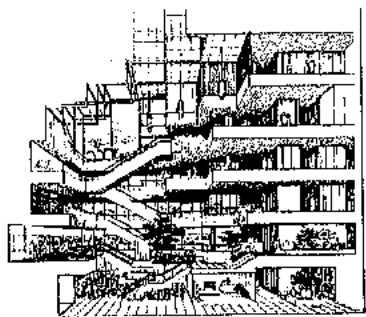
둘째, 초고층형의 저층기단부에서 시도되었던 도시공간의 형성노력과 궤를 같이 하되 좀더 다양한 공용공간 확보의 가능성이 추구되었다. 이것은 몇개층을 개방(Open)하여 개방되는 아트리움 중심의 로비형태가 더욱 다양하고 그 내부에 수목과 실내분수 등을 조성함은 물론 몇 개층에 달하는 저층, 기반부(Base)의 옥상바닥을 개방하여 자연채광을 도입했던 것은 초고층 유형과 유사하다. 여기에 덧붙여 넓은 기단부 옥상 바닥 자체에도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그 일부가 노천극장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건물위에 세워진 인공적인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느낌을 갖게 한다.



60년대 중반에 건설된 Chicago 의 Marina City (그림 6)는 이러한 시도중 일부가 엮이는 개발사례이다. 본 Complex 는 Chicago 시민들에게는 옥수수 벨딩(Corn Shaped Bldg)이라는 애칭으로 불려지는 건물로서 Chicago 강변을 끼고 도심내에 고층형 고급아파트를 확보하려는 계획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본 Complex 는 2개의 65층 짜리 원통형 Tower (주거+주차)와 뒷편의 16층 사무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반부는 2층 높이의 도심 쇼핑센터가 배치되어 있다.

한편 Complex 내 거주인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도 개방되는 편의시설의 확보 수준도 눈에 띄이는데 극장과 아이스링크, 실내수영장이 Complex 내에 함께 설치되어

있다. 60년대의 계획사례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과감한 시도를 2개의 Tower 에서 엿볼 수 있는 바, 만원형의 각 세대용 발코니를 배열한 집중식의 원통형 평면주거부는 21층에서부터 시작되며 1층에서 18층까지는 주차장을 배열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하차고나 단순한 주차 건물 형식의 일반적 패턴과 구별되는 형태로서 거주민들에게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준다는 계획목표 이외에도 본 Complex 의 부지가 강변에 인접하고 있어 지하로 많은 부분을 파내려 가는데 따르는 막대한 건설비용과 시공상의 난점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전술한 John Hancock Center 에서도 유사한 접근이 있다) 따라서 지하부는 바로



●그림4 John Hancock Center, Chicago 시(설계: SOM)

- ① 전경
- ② 단면도
- ③ 사무층로비
- ④ 평면도

●그림5 Trump Tower, New York 시(설계: S. H. Conell)

- ⑤ 전경
- ⑥ 아트트리플단면투시도
- ⑦ 배치도
- ⑧ 기준층 평면도(주거부)

강변의 선착장을 배열할 수 있었다.

주거부와 차고 사이는 양측을 적절히 완충해 줄 수 있는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 2개 층(19, 20층)에 걸쳐 전체 Complex의 관리 사무소와 중간 설비층이 배열되어 있다.

본 Complex의 주거부분에서 또 하나의 관심을 끄는 사항은 단위주거의 대부분이 독신자나 단순구성가계(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꾸며져 있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256개의 1실형 Unit, 596개의 2실형 Unit가 있는 반면 3실형 Unit는 64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70년대 후반에 계획된 보스턴 Boston Art Complex(그림 7)에서는 보나 발전된 다발형 Complex의 형태를 엿볼수 있는바

저층 기반부의 다양한 공간처리 방식이 그것이다. 2개의 Tower(16층의 「주거+사무소」, 15층의 Hotel)를 떠받치고 있는 저층 기반부는 그 높이가 부러 7층에 달한다. 본 기반부에는 극장, Art Gallery 등과 백화점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변관부의 아트트리플은 이들 모든 기능의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7개층을 전부 뚫어 올리고 옥상바닥을 개방하며 조성된 중정상부에는 Space Frame으로 지탱되고 있는 유리프러즘이 배치되었고 이곳을 통해 햇빛은 1층의 현관로비에 쏟아져 내려오듯 강하게 비추진다. 그 주변에는 수목을 배치하고 몇개의 소규모 라운지를 배열하여 도시민들이 앉아서 담소하고 음료를 들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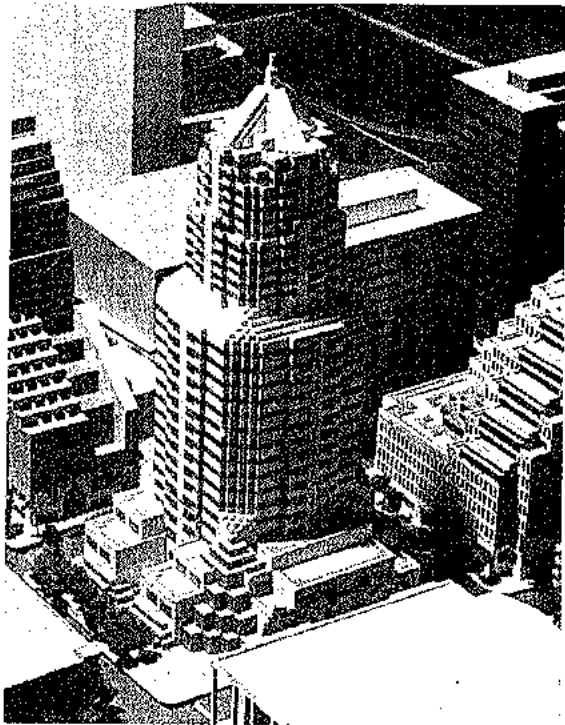
이런 환경에 대해 Procos 교수는 유럽의 전통적인 도시Block 중심에 마련된 중정(Hof)을 연상시킨다고 얘기하고 있다.

한편 저층기단부의 옥상바닥 Complex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목을 심고 노천극장을 만드는 등 일종의 인공도심공원을 조성하며 도심부내에 더 많은 Open Space를 제공해 주려는 건축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80년대 중반에 계획된 St.Paul 시의 Galiter Plaza(그림 8)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도심부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건축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도시적 요구와 새로운 건물을 지어내려는 건축주와의 타협 방안이다. 본래 Jackson 5번가는 전통적인 도심부로서 일부 블록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개발 상황은 새로운 초고층건물을 짓기위해 낡은 건물들이 헐려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5번가 모퉁이에 위치한 아트갤러리의 철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무미진조한 초고층건물 신축에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이 강한 거부반응을 나타내었다. 이에 대해 설계자는 3층의 Atrium과 이를 둘러 싸고있는 아트갤러리와 건물전면의 Facade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구건물의 좌측과 후면에 24층의 Tower를 연결하여 세워 올리고 3층 높이의 기반부로 연결시켰다. 고층 Tower에는 집중식 평면형의 콘도미니움이 배열되어 있으며 각 Tower에 각기 500개의 단위주호를 수용하였다.

기존의 보존건물과 맞추어 3층으로 처리한 기반부의 내부에는 쇼핑 Mall을 배치하였으며 각층은 좌·우측의 모퉁이와 직접 연결시키는 한편 임대사무소(바닥면적: 8,200㎡)와는 Atrium부분에서 갈라져 내려오도록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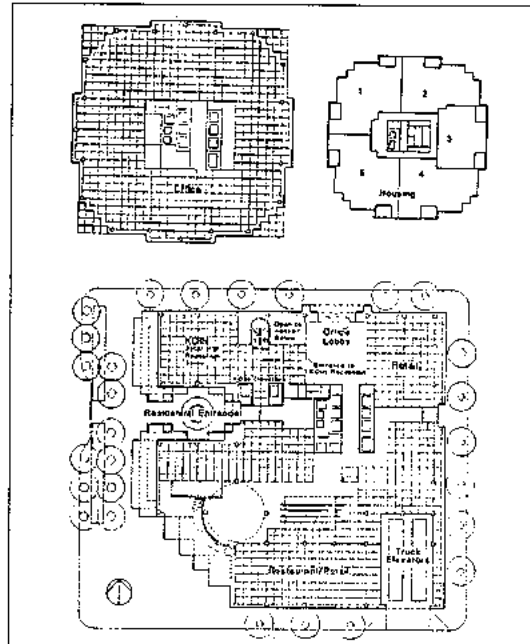
한편 건물의 외관에서도 기존 도시미관의 전통적 맥락과 연계시키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이는데 고층건물의 외장타일로는 흔치않은 사암(Sand Stone)을 외장재로 사용한 것이나 Atrium 진입 현관부의 박공형 부분을 Tower 상부에 재배열한 점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복합용도 메가 스트럭처; 「도시내의 독립된 소도시」개념

「Unitary Mixed-Use Structure」라고 칭해지는 대규모의 복합용도 구조물인 메가스트럭처(Mega Structure)의 건설은 복합용도 Complex의 미국적인 발전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유형이 출현하게 된 계기는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었지만 그들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70년대 초반의 오일과동에 따라 건물설계에서 에너지의 이용측면이 중요한 관점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여러 건물들을 한데 묶어 줌으로써 단일건물에 비해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진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와함께 도심부근의 쇠퇴화와 재개발의 요구, 새로운 부도심의 건설등이 본 유형의 프로젝트들이 구체화될 수 있었던 바탕 역할을 차지하였으며 도시공공교통망(지하철), 순환고속도로의 건설도 이들이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었던 도시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도시적인 계획배경과 더불어 이들 요구를 계획적으로 수용키 위한 설계방안으로서는 도심공공교통망, 사무소, 쇼퍼센터, 고층아파트 및 도시편익 시설을



한데 묶어 Complex로 처리함으로써 몇 개의 도시블록을 차지하는 대규모의 Mmega Structure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일부 계획가들은 본 Complex 유형의 별명을 지어 냈는데 그 중에서도 구조물 내부에서 도시생활의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도시속의 소도시 (City in the City)」라고 칭한 것이 대표적인 예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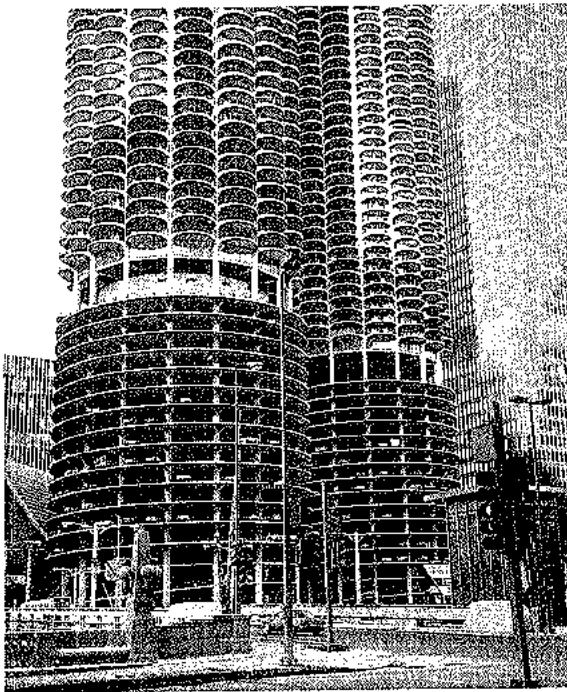
한편 Complex가 수용하고 있는 건축용도들도 다양하게 변화 되있는 바, 기존의 도심부 복합용도 초고층 건물이나 초기의 다발형 Complex들이 반드시 주거를 포함하고 그와 연관된 생활편익 시설 및 구매시설의 확보에 주안점을 두게 반하여 본유형(Unitary Mixed Use Structure)은 업무 및 서서비스 시설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각 프로젝트마다 공통적으로 1개 이상의 대규모 Hotel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Hotel이 주거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사기능으로서 적합하며 상업적으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표적인 신도심의 재개발 프로젝트로서 시행된 San Francisco의 엠바카더로 센터(Embarcadero Center : 그림 9)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Unitary Mixed Use Structure의 특성을 그대로 발견할 수 있다. 본래 이 지역은 토지이용상 일종의

혼합지역(준공업+상업)이었으나 도심부근에 입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차 토지이용 유형이 개편되면서 70년대부터 새로운 금융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에따라 고층사무소들이 계속 들어서는 등 신도심의 모습을 갖추는 입장에 놓여 있었다. 본 Embarcadero Center 건설 프로젝트는 1966년에 시작되었는데 15년이 경과한 1981년에서야 전체의 완공을 보게되어 건설기간만도 무려 15년이나 걸린 대규모의 프로젝트였다. 전체 Complex는 5개의 도시Block 위에 걸쳐 있으며, 전체 부지면적은 8.5에이커 (34,412㎡)에 달한다. 부지 전면에는 San Francisco시의 순환고속도로가 있으며 여기에서 본 Center에 직접연결 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계획의 주판은 건축가 John Portman이 담당하였으며 San Francisco만 쪽에 배열된 20층의 Hyatt Regency Hotel은 그가 직접 실시 설계까지 담당한 작품이다.

전체 Complex는 4개의 사무소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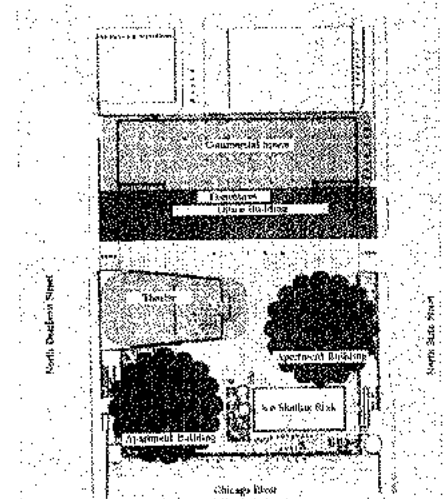
Tower (바닥면적 : 256,400㎡)와 175개의 상가 및 레스토랑(총면적 : 30,190㎡)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건물은 2층 높이의 Deck로 처리하여 보행자 동선을 자연스럽게 해결함으로써 Complex 전체를 연결시켰다. 전체 건물을 가로지르는 Complex의 중심축 좌우에는 각 단위 도시 Block의 중심부마다 중정을 조성하고 중앙에 분수와 각기 다른 모양의 랜드마크를 설치하였다. 계획가가 어느정도 도시 Open Space와 도시환경 조성에 관심을 기울였는가 하는 점은 Plaza와 Open Space의 면적이 18,580㎡에 달하며 곳곳에 설치된 미술장식 및 조각물에 투입된 비용(우리의 대규모 미술장식품 투자조항과 유사함)이 5천만달러에 달했다는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4개의 사무소 Tower는 모서리의 각을 지양하는 한편 피는 단조로운 직육면체 모양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안쪽으로 집어들어 가도록 처리하였는데 그 결과 12부분의 모서리가 각 건물마다 나타나 있다. 그에 따라 도시 가로에서 사무소 건물들을 보면 여러개의 직선 벽면이 뚜렷해지고 이두운 청동창문틀의 유리창선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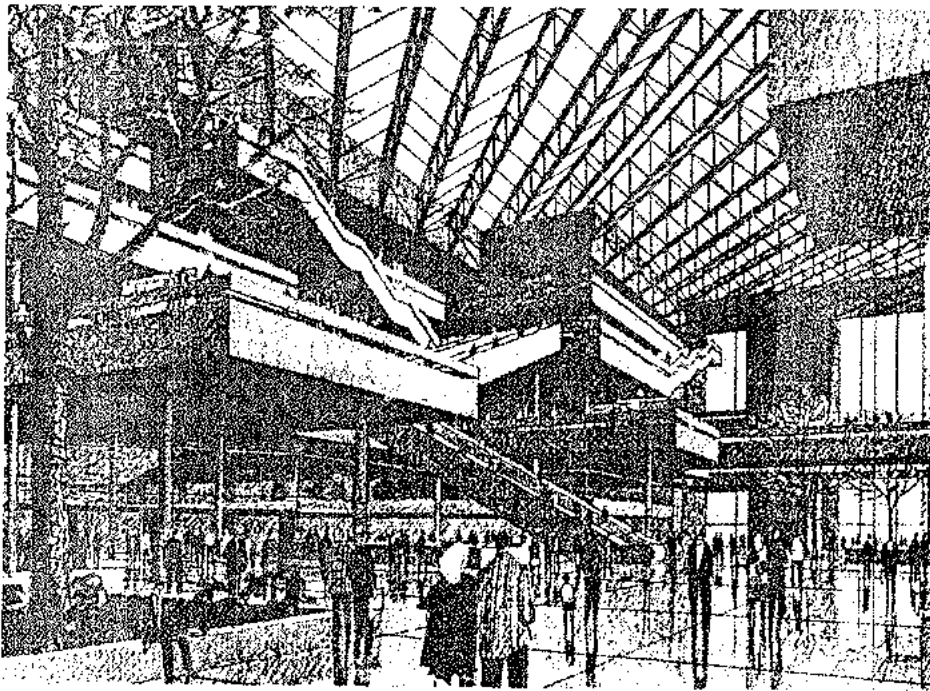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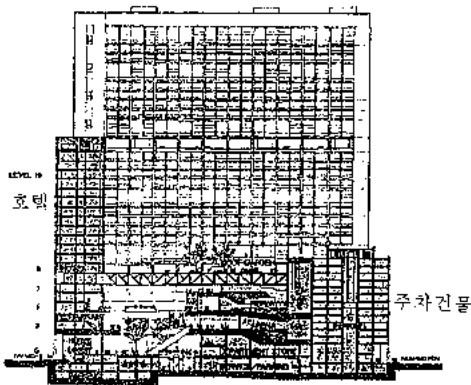
- 그림6 Coin Center, Portland시(설계 : Z. S. Frasca)
- ① 건물모형
- ② 위 좌측부터 3~16층(사무소) 평면도, 17층이상(주거부) 평면도, 1층평면도
- ③ 저층부 단면도(방송 스튜디오 설치)
- 그림7 Marina City, Chicago시
- ④ 저층부 외벽상세
- ⑤ 전경
- 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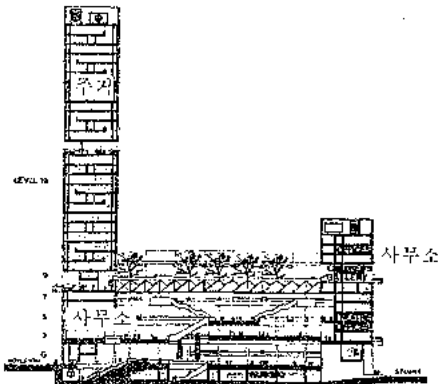
22



㉔



㉕



㉖

● 그림8 Boston Arts Complex (설계: S. Oles 외)

㉔ 저층부 아트라운 투시도

㉕ 종단면도

㉖ 횡단면도

● 그림9 Galiter Plaza, St. Paul 시 (설계: M. H. Westerbeck)

㉗ 전경

㉘ 기중층(19~24층, 주거부) 평면도

㉙ 상층부(41층 이상, 대형주거부) 평면도

㉚ 배치 및 1층 평면도

㉛ 6번 가로의 보존건물 파사드의 두개 Tower의 연결

두드러진다. 사무소 부분의 임대가능성과 관련하여 최소 임대면적의 모듈을 설정하였는 바, 이는 주식회사 규모의 평균면적인 1850㎡를 임대의 기본단위·변적으로 산정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으며 최소한 한개층 면적 이상을 임대하는 사무소만이 이곳에 입주할 수 있었다.

본 Complex 설계의 압권은 John Portman 이 설계한 Complex 전면부의 Hyatt Regency Hotel 로서 진입부는 San Francisco 만 쪽을 향해 경사지게 치켜 올라가는 각추모습의 형태로서 전체 Complex 에 대한 경향이 여기로부터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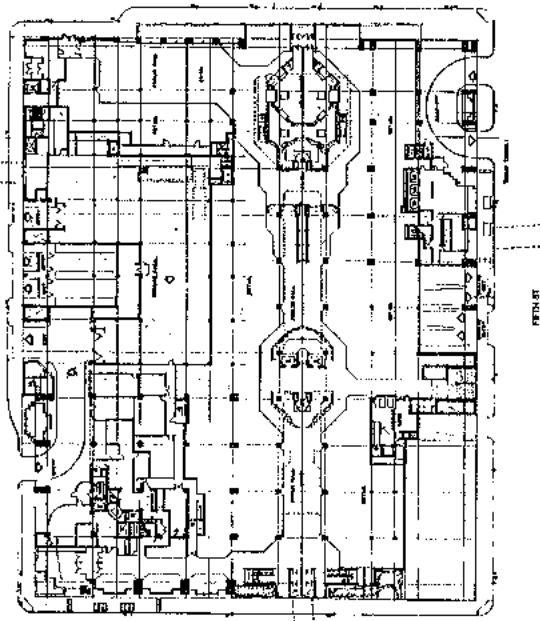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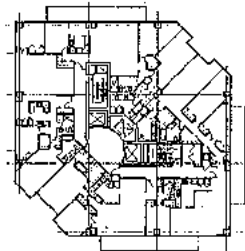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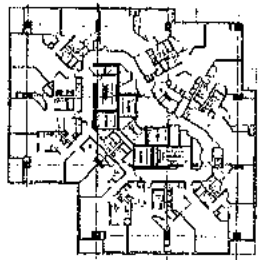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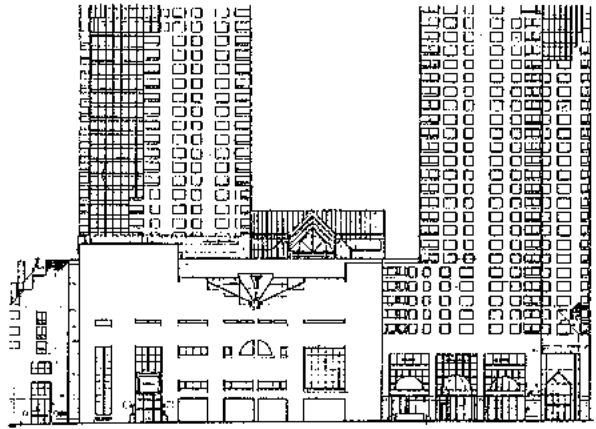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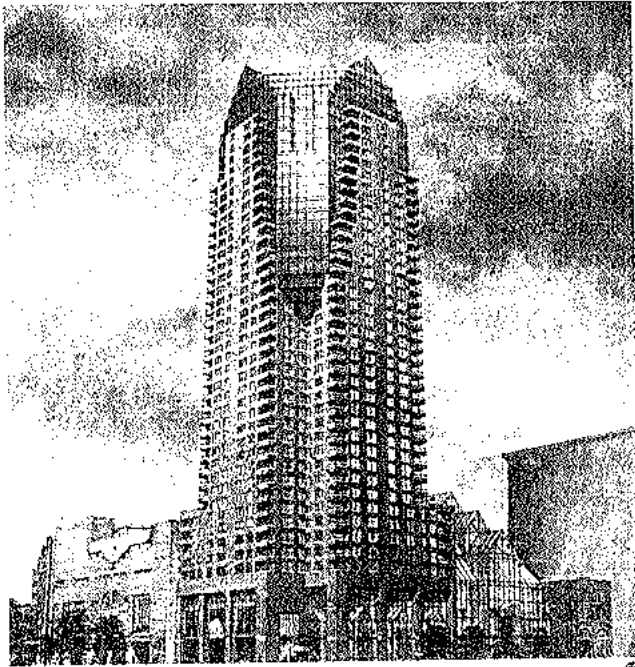
주현관을 거쳐 건물내부를 들어서면 17층 높이까지 오픈되어 있는 Atrium 이 방문객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며 17개 각층의 Balcony 에는 냉쿨류의 자연식수를 늘어뜨려 부드러운 모습이 로비 내부에서 그대로 경험된다. 투숙객이나 이용자는 노출된 Elevator 를 통해 원하는 층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각층 Balcony 에서는 Atrium 의 중심부에 세워진 Focal Point 로서의 상징적인 나무형 랜드마크에 시선이 집중된다. 또한 로비부분은 단을 여러 높이로 처리하여 고급 Cafet 나 스낵바 등이 이곳에 배열되어 있다.

본 프로젝트는 건설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으며 메가스트럭처형 복합용도 Complex 건설에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다. 물론 설계자인 John Portman 은 Atlanta 시의 Peachtree Center 등 몇개의 유사한 Mege Structure 형 복합용도 Complex 에 대한 설계의뢰를 받아 자신의 역량을 내 보이기도 하였다.

Embacadero Center 에서 표현된 유니타리 복합건축물 (Unitary Mixed Use) 유형의 대규모 구조물, 계획개념은 Boston 시의 커플리 플레이스 (Copley Place : 그림10)에서도 그 단편을 찾아볼 수 있다. 본 Complex 의 부지는 Boston 금융가의 신도심으로서 3.5에이커(14,170㎡)에 이르는 부지의 재개발계획으로 시행되었다.

1976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당시로서 미국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였는 바 2개의 호텔 (Westin Hotel -36층, 804실, Mariott Convention Hotel -38층, 1147실), 4개의 십자연계형 사무소(임대면적: 78,500㎡), 쇼핑센터 (Neiman Marcus Shopping Store : 9,660㎡) 및 영화관(8개 관람실 수용)과 도시형 아파트(104실 규모 Condominium)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부지 지하에는 1,432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본 Complex 를 실현시키기 위해 1천만달러의 순수 건축비투자 이외에도 시청부의 간접보고인 순환도시고속도로의 연장과 도시연계 고속철도망 연결에 몇백만 달러의 시재정이 투입되었다. 본 Complex 의 건설부지는 몇개의 도시 Block 에 걸쳐있기 때문에 각 Block 에 분산된 단위 건축물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여럿의 오버브리지가 설치되어 있다. 계획단계에서 이들을 설치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도시 일반가로의 공공권 (Air Right) 을 사용해야 했기때문에 해당면적에 상당하는 권리 부분에 대해 Complex 부지 자체내의 일정면적을 도시공용 Open Space 로 제공해주고 있다. 그 결과 Copley Place 전면의 광장은 건물부의 공용보행자 Mall 과 연결되며 좌측의 범개건물인 Prudential Center 와도 보행자 Mall 이 연결되어 있는 바 이것은 도시당국의 중간역할로 양측의 협의하에 두개의 Complex 가 연계되도록 처리하였던 것이, 특히 본 프로젝트 (Project) 는 도시순환 고속전철망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서 철도역에서 바로 Complex 내 Shopping mall 로 비를 맞지 않고 직접 들어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이용자는 전천후로 본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매력을 Complex 측에서는 이들을 통해



자체수용상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 일부 지하철역과 연계된 상가와 비슷한 처리 방식이다. Complex 기반부의 동서단부에 배열된 두 Hotel은 두개의 진입 Level을 갖고 있는바, 한곳은 지상도로이며 또 한곳은 Shopping Mall의 중층 Level에서 연결되는 건물내 진입부이다. 한편 건물전체는 건축부지의 모양에 따라 부등변 육각형 평면의 연결형으로서 Westin Hotel과 사무소 부분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10층 높이의 4개 사무소 Unit는 중앙의 Atrium형 중정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중정 주변에는 Sky Lobby를 배열하여 임대사무소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되었는바 본 중앙부의 처리방식은 사무소의 연결에서 매우 흥미있는 접근방식이다. 각기 네모퉁이에 연결된

삼자형의 임대사무소 단위평면은 각 Unit 중심보다 별도의 Core를 지니고 있으며 측면 하층부의 Gallery 상부에서 상부로 연계되어 올라오는 공용로비에서는 사무공간의 느낌을 더욱 고급스럽게 해 준다.

단지 두개의 개발사례로만 메가스트럭처형의 복합용도 Complex (일명 Unitare mixed Use Structure)를 소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 위의 두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단위 건축의 설계차원을 벗어나 다분히 도시설계 측면에서부터 접근된 계획방식인 것과 주변 도시여건의 소화가 본 유형의 설계에 필수적인 사항이 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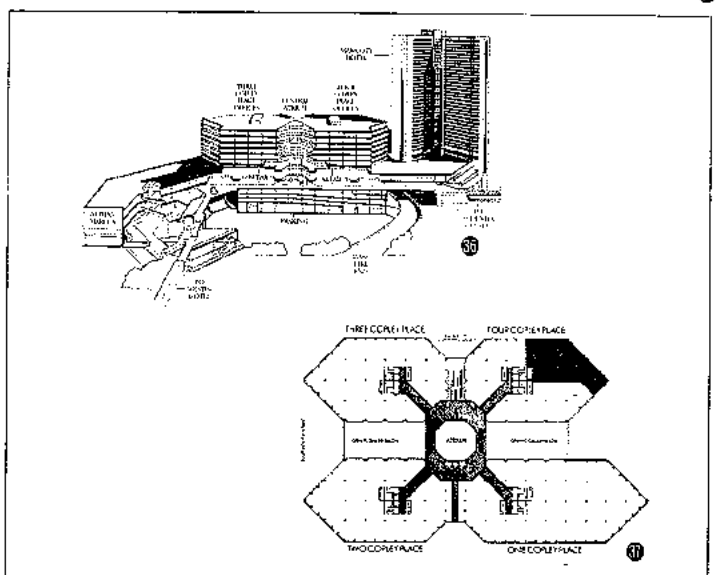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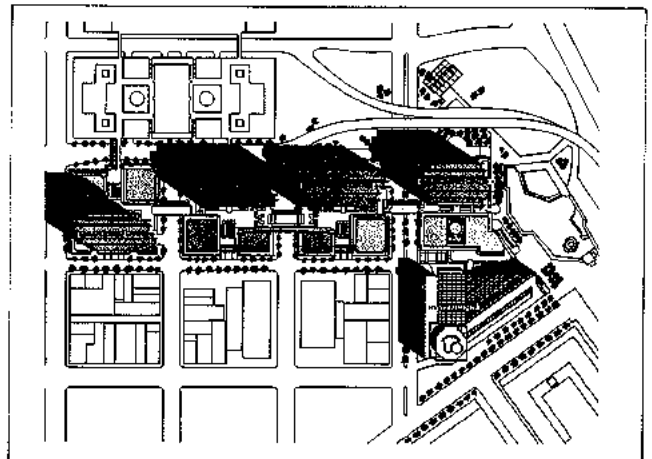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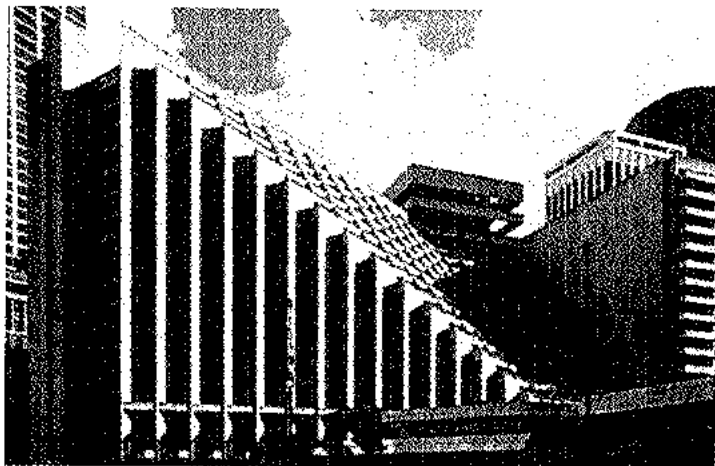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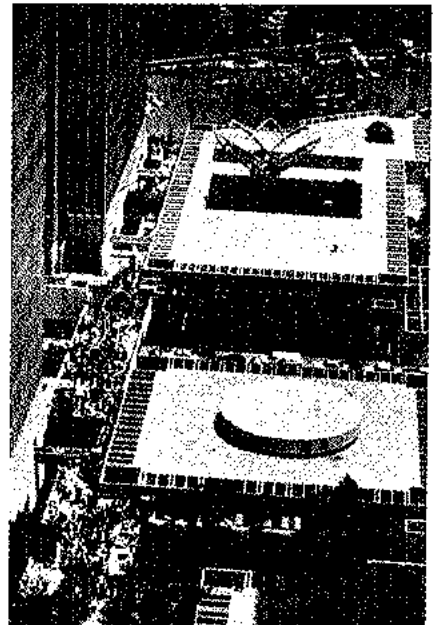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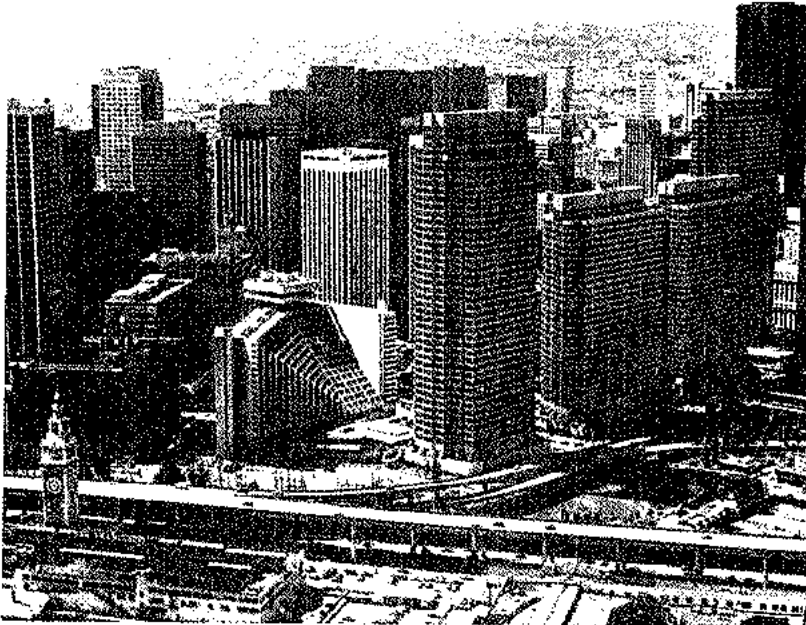
5. 小 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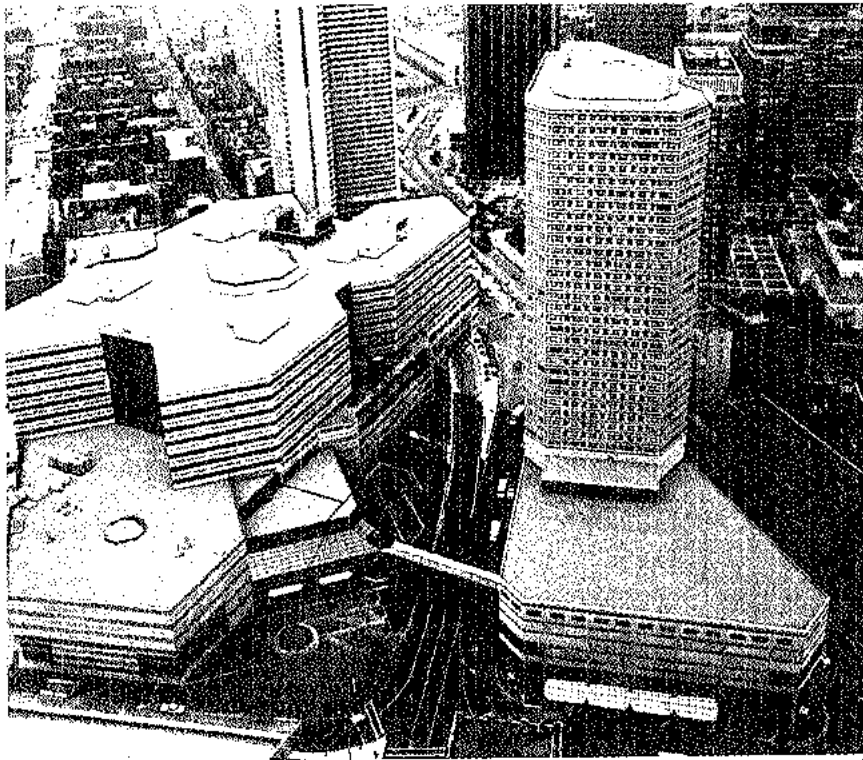
지금까지 미국의 복합용도 Complex

계획경향의 변화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는데 복합용도 초고층 건물의 유형과 다발형의 Complex 유형이 그것이다.

한개의 초고층 건물내에 복합용도를 수용하려는 전자의 방식은 초기의 「기단부의 상업기능+사무소 및 주거용 Tower」 패턴이 그대로 세습되기는 하나 거단부의 성격이 도시공용공간으로 개방되고 인공의 도시적인 오픈스페이스 느낌을 확보하며 주변에 고급의 상가나 레스토랑을 배열하여 시설투자 만큼의 경제적인 이익도 추구하려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그와 함께 70년대 후반기 이후의 복합용도 초고층 건물의 계획방향은 확보기능의 주관심이 주거위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다.

한편 하나의 건물에 여러 기능을 중첩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기능간의 충돌과





●그림10 Enbadero Center, SanFrancisco시
(설계: J. Portman外)

- ㉑ 전경 (도시순환 고속도로에서 직접 접근됨)
- ㉒ 중심축에 설치된 Block의 중정과
랜드마크
- ㉓ Hayatt Regency Hotel
- ㉔ 배치도

●그림11 Copley Place, Boston시

- ㉕ 3층 Level로 처리된 쇼핑 Mall
- ㉖ 사무소 및 쇼핑몰 진입체계
- ㉗ 사무소 단위 평면도
- ㉘ 전경

동선치리의 번거로움을 지양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묽음형 Complex의 발전은 저층기단부의 도시공간확보라는 관점에서 더욱 활기를 띠게되고 단일기능의 여러 건물을 묶어 줌으로써 생기는 Complex 전체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효율성, 저층기단부에 위치한 상업시설의 자투기반 확충 등 여러가지 유리한 배경이 있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특히 「상업+업무+주거」이외에 다양한 편의및 위락시설(아이스링크, 실내풀장, 영화관, 아파트갤러리 등)이 어늘내에 수용되므로써 Complex 전체의 공익성 추구에도 기여하고 있다.

70년대 초반의 메가스트리취 (Mega Structure) 형으로 건설된 유니타리 복합건축유형 (Unitary Mixed Structure) 은 한층 진일보하여 다양한 건축기능이 수용됨은 물론 Complex 자체 내에서 모든 도시생활이 충족되는 이른바 「도시내 또 하나의 도시 (City in the City) 형성」 관점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으며 신도심이나 도심근교 낙후 지역의 재개발에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는 건설유형으로서 건축가들에게 도시설계에 눈을 들리게 하는 계기가 이와같은 계획부지의 성격, 도시적인 요구, 건축주의 이해, 도시당국의 협조등이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통해 실현되었던 미국의 복합용도 Complex의 발전상황은 당분간 계속적으로 시행될 것이 분명하며 우리의 경우 이와같이 다각도에 걸쳐 이해관련 항목을 충족시키고 상호 다협해 나아가는 계획과정에 대해 먼저 관심을 기울인 후, 어떤 개발유형이 당해 개발 프로젝트에 적합한가를 찾는 것이 타당한 복합 Complex 이해의 것이다. 특히 일부의 도시재개발에서 시도되고 있는 이른바 「묽음형 Complex」는 도시의 공익성차원을 고려한 도시공용공간의 확보에 있어 일반적인 단일건물에 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Basile, Ralph. Downtown Development Handbook, ILI, 1980 2. Black, J. Thomas. Mixed-Use Development Projects in North America, ULI, 1983 3. Casazza, John. Shopping Center Development Handbook, ULI, 1985 4. Goldberger, Paul. The Skyscraper, Alfred A Knopf, 1985 |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Gruenm Victor. Centers for Urban Environment, Van Nostrand, 1973 6. Jacobs, Jane.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Random House, 1961 7. O'Mara, W.Paul. Office Development Handbook., ULI, 1982 8. O'Mara, W.Paul. Residential Development Handbook, ULI, 1978 9. Real Estate Research Cooperation. Tall Office Buildings in the U.S., ULI, 1985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Witherspoon, R. Miked Land Development, ULI, 1976 11. The Urban Land Institute, Mixed Use Development Handbook, ULI, 1988 12. Oh, Deog-seong, Funktionsgemischte Komplexe, Dissertation Universitat Hannover, 1989 13. 오덕성, 복합용도 Complex의 계획방향에 관한연구 ULI,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89'10. |
|---|--|--|

새로운 채광수법으로서의 아트리움(1) : 기능과 발전

*Atrium as Emerging
Daylighting System(1)
Function and Development*

○. 머리말

Richard Saxon 이 Atrium Buildings 의 초판을 1981년에 쓰기 시작했을 때 아트리움의 개념은 이미 정착되면서 아트리움은 북미에서부터 급속히 전 세계로 확산되리라 기대했는데, 그것은 실제 현실로 나타났다. 영국에 있는 50군대 이상의 현대 아트리움 중 30군대는 1981년 이후에 완성되었고 유럽대륙에서도 아트리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북미의 아트리움은 점점 세련되어 지고있다.

아트리움에 대한 아이디어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아트리움은 큰 입구 공간, 초점으로서의 중정(中庭), 쉼터형 공적(公的)인 공간으로서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아트리움은 조직조와 목구조 기술의 한계 속에서도 발전해 왔으며 지중해 및 중동건축의 중심개념이 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서구건축은 유리 와 철의 기술을 이용하여 커버가 있는 중정·아케이드·온실을 발전시켰으나 이러한 관심은 20세기 초에 쇠퇴해지고

말았다. 1960년대 후반부터 갑자기 새로운 「아트리움 건축」이 몇 백 동 만들어지고 있는데, 100년 전의 마천루 이후 이처럼 어느 형식의 건축이 급속하게 성공을 거두며 확산된 예는 없었다.

마천루는 안전한 엘리베이터라는 기술혁신의 결과로 나타났지만, 오늘날의 아트리움 건축이 급속하게 보급된 데에는 이와 같은 단순 명쾌한 기술적 요인을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아트리움은 많은 영향이 복합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영향이 강점이 되어 아트리움 건축은 20세기 후반에 가장 일반적인 건축양식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과거 20년 동안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아트리움은 많은 곳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으며,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광범위한 기술 혁신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글은 설계자가 아트리움의 개념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리처드 색슨의 저서 「아트리움 건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앞부분에서는 현대 아트리움의 역사와 디자인개념으로서의 기능성을 서술하였다. 이것은 아트리움에 관한 서로 얽힌 사고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풍요한 원천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뒷부분에서는 아트리움 건축의 주요 기술적 과제에 관한 상세를 다루는데, 여기에서는 설계자가 전문컨설턴트와 토의를 통하여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은 설계자가 문화와 기술의 힘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아트리움 건축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트리움 공간의 실내 디자인에 대하여 좀더 많은 사항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아트리움 공간의 마감, 음향, 예술적인 이용 등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측면은 개개인의 개발과 해석에 맡기기로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큰 문제만을 다루면서 창조적인 수단으로써 아트리움의 개념을 밝히는에만 전념하였다.

아트리움 건축의 개념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생각하기 전에 키 아이디어를 먼저 강조하면

金正泰

경희대학교 부교수·공학박사

by Kim, Jeong-Tai

다음과 같다.

- **도시적으로 생각하자** : 도시 구조와 부지와 맥락에서 건축의 바람직한 외피를 발견하자. 물론 전례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가능하면 아트리움을 공공 공간으로 생각하자.
- **기후를 고려하자** : 건물외피와 내부공간사이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부지가 기후로부터 받는 영향을 완화시켜 많은 비용이 드는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키자.
- **동적(動的)으로 생각하자** : 사람들이 건물 속을 다닐때 감성적인 체험을 느끼도록 만들자. 건물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게 하자.
- **안전의 관점에서 생각하자** : 안전한 피난과 화재제어를 포함시키자. 이미 만들어진 계획에 억지로 끼워 넣는 일은 피하자.
- **사회적으로 생각하자** : 건물에 마음과 초점을 부여하자. 사람들이 건물을 목표로 손잡고 찾아오도록 하자.
- **공간속에 푸르름을 이루자** : 푸르름은 건축의 기술적 목적과 사람들의 주관적 성향을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
- **문화와 기술의 영향에**
 반대하자 : 아트리움은 생명을 지닌 것으로서 거대한 실내가 새로운 건축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 **너무 품위있게 하지 말자** : 아트리움이 지니고 있는 놀이나 축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설계자에 의해 아트리움이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무미건조하게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 **경제성을 두려워 하지 말자** : 훌륭한 아이디어를 지탱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장 경제효과가 큰 설계가 되도록 하자.

다음 세대의 건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어진 많은 건축 보다 더 가치가 있어야 하고, 또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트리움을 이용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법이라 할 수 있다.

1. 새로운 건축개념으로서 아트리움의 기능

1-1. 아트리움의 4가지 기능

아트리움의 특징은 무엇일까? 일핏보면

① 경제기계로서의 아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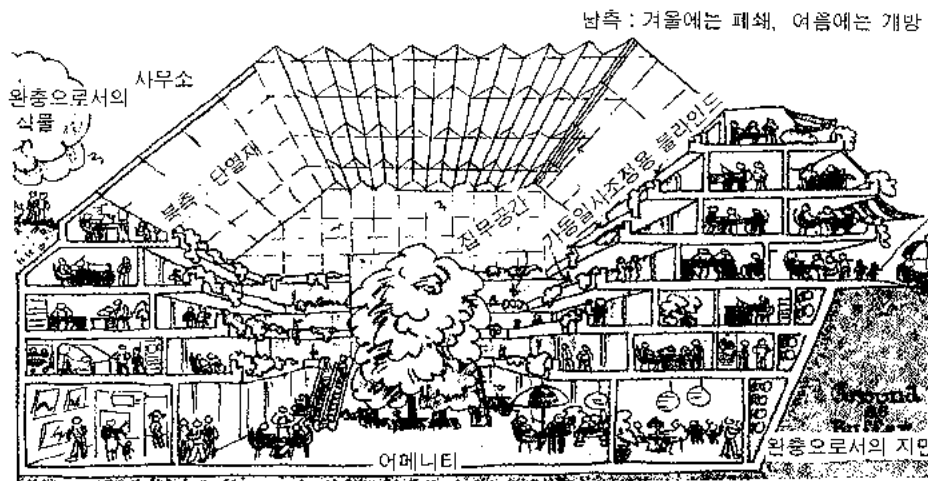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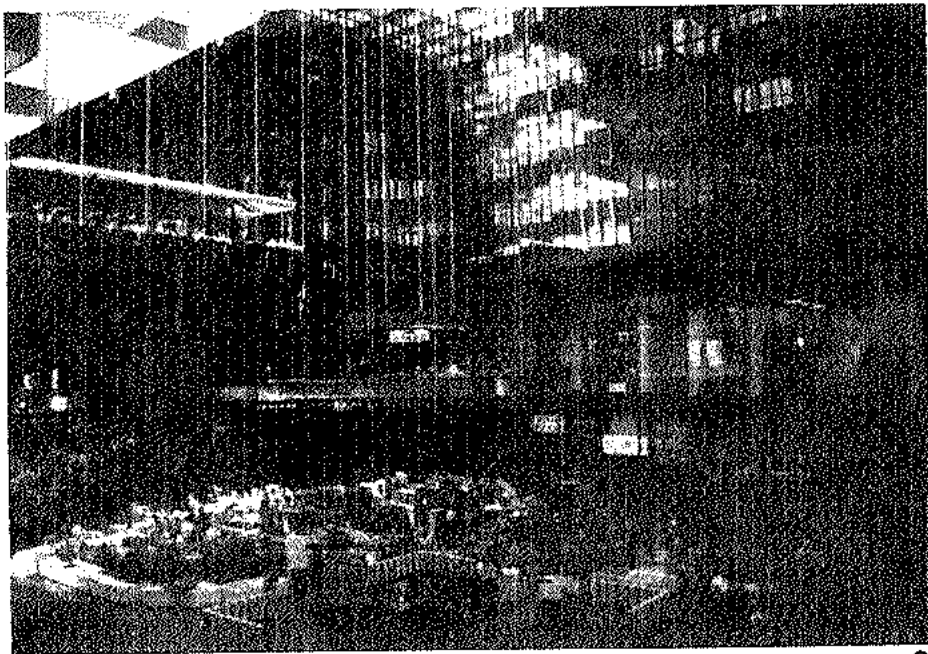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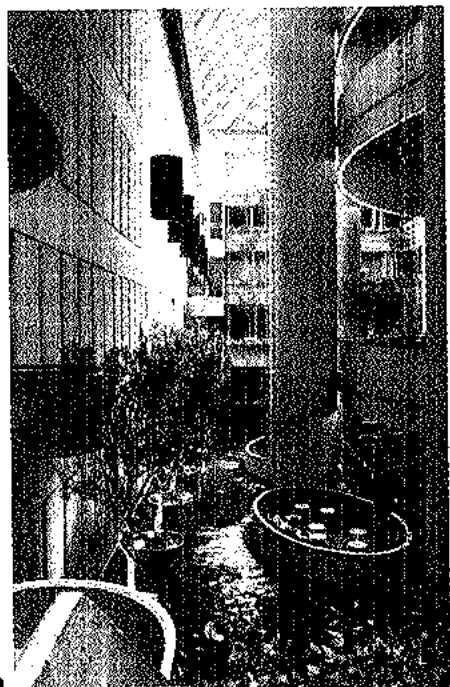
Peachtree Plaza Hotel(Atlanta, Georgia) John Portman 설계

②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아트리움

Crystal Court(Minneapolis) Johnson / Burgee 설계
 이건물은 도시의 상징적인 축점역할을 한다.

③ 엘타로서의 아트리움

Terry Farrell과 Ralph Lebens의 논문 "Buffer thinking"에서 인용



아트리움은 호화스러움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눈을 끌려는 트릭으로서, 높은 가치를 노리는 개발에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최초로 사용된 아트리움이 바로 눈부신 호텔이었다는 것이 이러한 인상을 더욱 강하게 해준다. 그러나 실제로 아트리움의 개념은 전통적인 현대 건축형태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Bill Hiller는 건축의 목적을 4가지로 분류하고 이것을 건축의 4가지 기능이라 하였다. 이것은 Henry Wotton 경이 든 필요성, 견고함, 기쁨의 개정판이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적 기능-문화를 바꾸기 위해 : 우리는 감각에 호소함으로써 우리들 자신과 문화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고자 건물을 짓는다.

●경제적 기능-자원을 바꾸기 위해 : 우리는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며, 이를 위해 돈, 시간, 인력, 에너지, 재료 등 자원을 사용한다. 채심토가 기대된다.

●유택기능-기후를 바꾸기 위해 : 우리는 여러가지 요소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건축한다. 우리는 쾌적함을 요구한다.

●수용기능-지구표면을 바꾸기 위해서 : 우리는 '형태가 이루어진 공간'이나, 여분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건축한다. 이것들은 자연 또는 과거의 인공세계에는 없던 것이기 때문이다.

1-2. 아트리움의 문화적 기능

아트리움은 사람의 정신과 감각에 호소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을 사물의 중심에 있게 한다. 아트리움은 놀이를 장려한다. 즉,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산책하고 공간 안을 다니며, 자연을 즐기고 사회생활을 즐긴다. 아트리움은 오늘날 압박하는 것 같은 실내와 파악할 수 없는 외부공간의 형태에 시각적인 평안함을 제공해준다.

아트리움 건축은 도시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도시의 성격을 되찾는데 기여한다. 아트리움은 도시개발로 인해 분단된 길거리 모습을 되찾아 주며, 불쾌한 사막과 같은 광장을 쾌적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볼때 아트리움 건축은 청교도적이거나 금욕적인 건축이라기 보다는



친근감이 있는 통속적 도시지향으로서 탈산업사회에 적합하다. 우리는 앞으로 스스로 즐기 위해 거리로 나갈 것이다. 일 또는 쇼핑을 위해 거리로 나갈 필연성은 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감소될 것이다. 또한 아트리움 건축은 예전보다 더 내성적이고 동양적인 사상의 문화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1-3. 아트리움의 경제적 기능

많은 아트리움 건축은 종래의 전통적인 건축형태보다 값 비싼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제쳐두고라도, 아트리움 건축은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아트리움으로 된 호텔은 언제나 거의 만원이다. 아트리움 주위에 배치된 점포·사무소는 임대료가 비교적 비쌌어도 불구하고 곧 입주자가 결정된다. 텍사스의 부동산업자인 Louis B. Cushman 3세가 '아트리움은 섹스 어필하다'고 적절하게 표현했듯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충분하다.

아트리움 건물은 동일규모의 탑 모양 건물에 비해 넓고 효율적인 평면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탑 모양 혹은 부지 전체를 뒤덮는 저층건물의 사무실에 비해 창쪽 사무실의 실 깊이를 '알게'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가치있는 공간이다. 보다 상급 관리직에 있어서 이러한 공간은 매력적이며 또한 개실(個室)로 구획하기 쉽다. 또한 아트리움은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인도 있다. 기존 건축을 효과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적어진다. 중정이 있는 오래된 건물은 아트리움 건물로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 깊이가 지나치게 깊은 공간에는 구멍을 뚫어 보다 사용하기 쉽고 보다 실 깊이가 얇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아트리움 건축은 개재형태의 건축에 비해 건설비용과 리닝코스트가 모두 저렴하다는 증거가 있다. 아트리움 건축은 중정의 지붕·화재안전설비·특별한 수송설비·조경 등에 '여분의 비용'이 필요한 대신 높이와 표면적을 절약할 수 있다. 동일 규모의 탑 모양 건축보다 빨리 건설할 수 있으며, 관리시 에너지 비용이 싸게 든다. 또한 채광이 보다 간단하며 외부와의 열교환이 적고, 태양열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에 있어서는 초기 비용과 리닝 코스트가 모두 아트리움 건축쪽이 싸며, 또한 수익성이 양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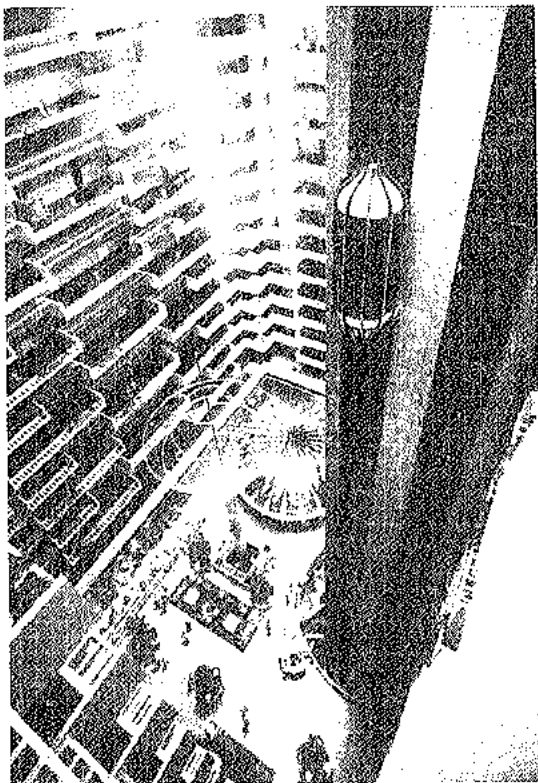
1-4. 아트리움의 유택기능

유택이란 말로 아트리움 건축의 중심 과제이다. 유택이 시설된 중정은 그 자체가 커다란 어메니티(amenity)로서, 많은 도시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종류의 공간, 즉 전천후형의 공공집회 공간을 만들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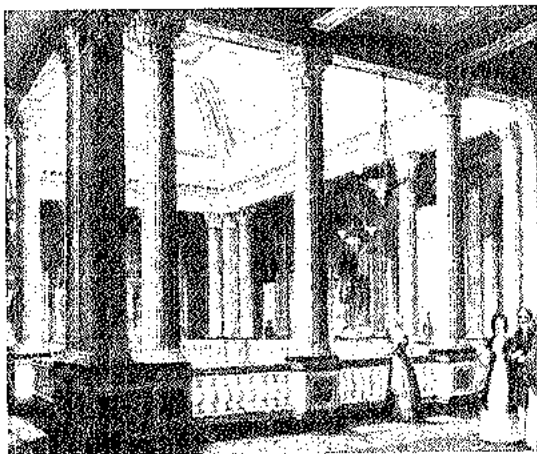
중정과 인접 공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보다 교묘한 유택이 만들어진다. 아트리움은 빛을 실내로 받아들이지만 바람·비·태양열·외기온도를 차단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면서 쾌적성을 높일 수 있다. 아트리움은 거대한 2중 유리이다. 이 유택효과는 아트리움 자체가 가장 적절한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아트리움이 옥외로부터 실내로 들어오는 천이공간(遷移空間)으로서 완충공간 역할을 할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난다.

1-5. 아트리움의 수용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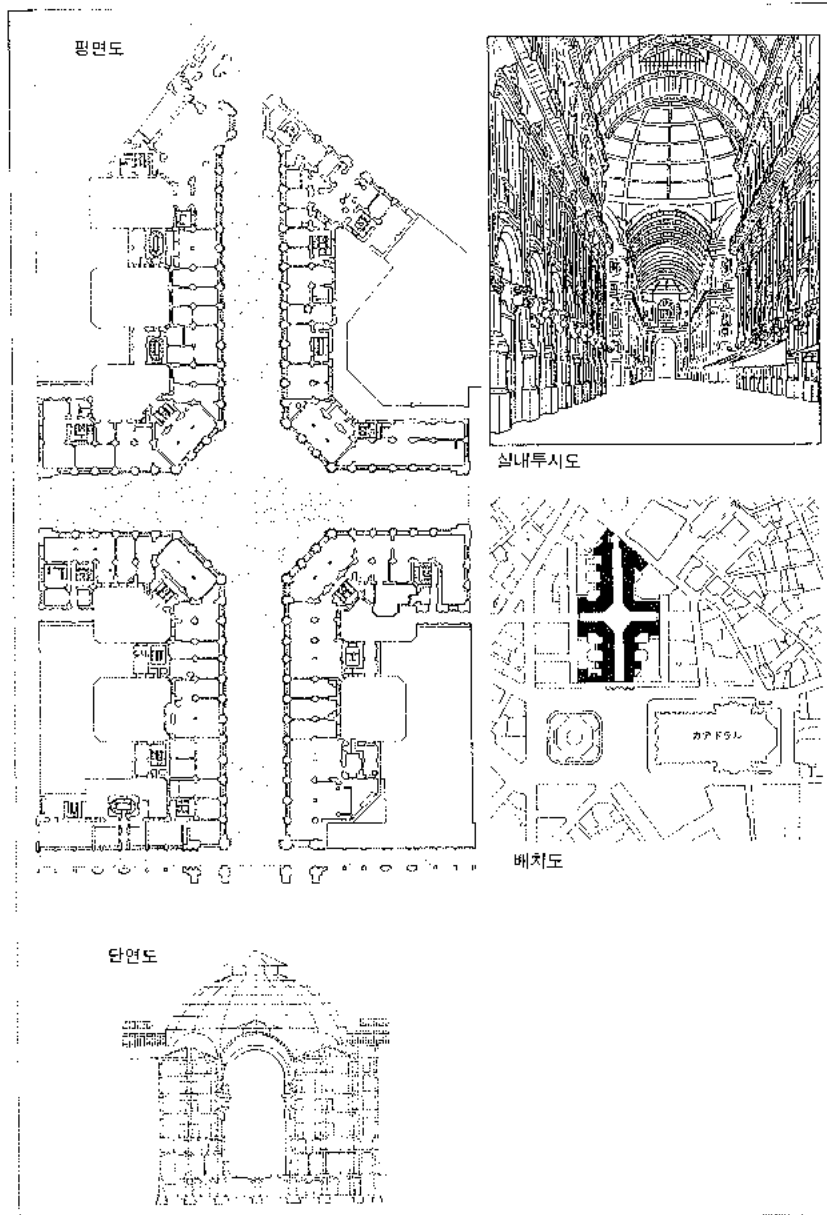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수용(收容)의 필요성이 건축행위를 야기시키는 힘이다. 보통 아트리움은 주위 공간을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트리움 공간 자체는 여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있으며 아트리움 자체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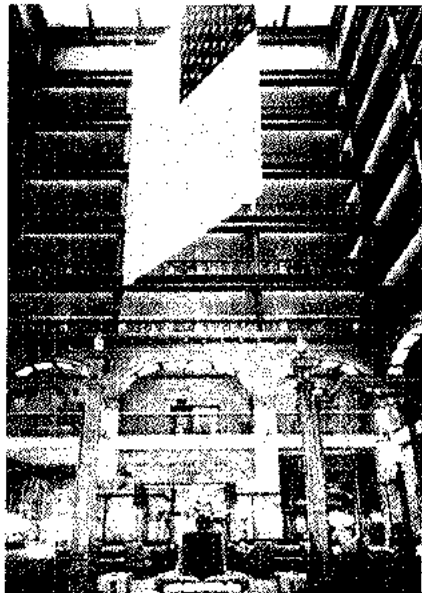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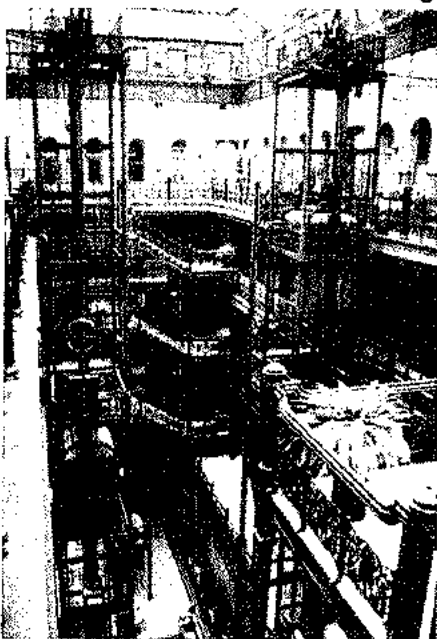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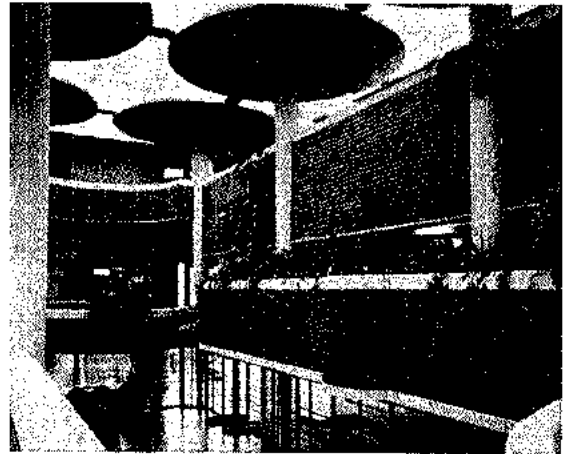
6



7

- ④ 작업공간으로서의 아트리움
Central Beheer Office(Apeldoorn, Holland)
Hermann Hetzberger 설계
- ⑤ 'An idea whose time had come'
Hyatt Regency Hotel(Atlanta, 1967)
John Portman 설계
- ⑥ 첫번째 아트리움중의 하나
Reform Club의 유리자붕으로 된 중정(런던)
Charles Barry 설계
- ⑦ The Galleria(Milano, 1867) Mengoni 설계
- ⑧ Rookery Building 로비 (Chicago, 1885) John Root 설계
2개층 높이의 중정

- ⑨ Bradbury Building(LA, 1893)
George Wyman 설계
- ⑩ 덴버의 심장
Brown Palace Hotel(덴버, 1893) Frank Edbrooke 설계
- ⑪ Wright Connection
프랑크 로이드라이트는 아트리움의 제1기와 제27기 사이의 겹을 연결하였다. Larkin Building (버팔로, NY, 1903) 제1기 작품의 하나
- ⑫ Johnson Wax Headquarters(Recine, 위스컨신, 1936)
- ⑬ Guggenheim Museum(NY, 1959)
이 건물은 포트만 등 아트리움의 제2기를 시작하는 건축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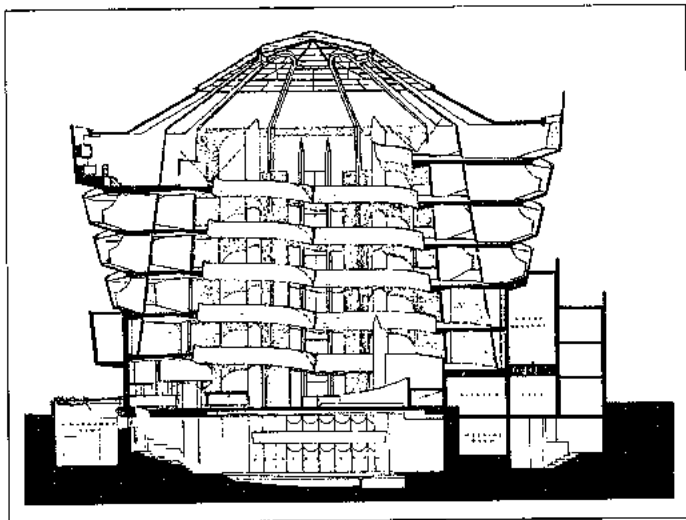
쓸모있는 공간이 되는 경우도 있다. 즉, 아트리움은 로비와 교통공간으로서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아트리움 층 그 자체가 레스토랑, 라운지, 전시·연출공간 또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아트리움이 만들어내는 전망의 양호성과 접근의 용이성을 이용하면 윗층을 '지상레벨'의 연장으로 기능하도록 할 수도 있다. Richard Rogers 가 설계한

로이즈보험빌딩(런던)에서는 보험인수 업무가 집약되어 있는 「툼」을 일체감을 손상하지 않고 6층으로까지 확장시킬 수가 있었다. Herman Hertzberg 가 설계한 네덜란드의 아페르동에 있는 샌트루 베헤르 사무실은 복수의 작은 아트리움이 공간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4층 사무실이 1층인 것처럼 느껴진다. 시카고에 있는 워터 타워 플레임스 8층 점포는 아트리움을 이용하여 모든 층의 점포가 모두 들여다 보기 쉽고 오가기 쉽게 되어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모든 기능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비로소 아트리움으로서 진지하게 고려할만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모든 건축의 요구에 적절한 만능약은 아니지만, 현대의 건축형태가 갖고 있는 레퍼터리 중에서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다양한 요구에 대한 보다 적절한 해답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아트리움의 발전 패턴

John Portman 이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18

리젠시 하얏트호텔을 1967년에 완성시켰을 때 Architectural Review誌는 '이 시기에 적합한 아이디어'라고 평했다. 이것은 아이디어가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아트리움이 다시 이용될 것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 아트리움은 많은 요구사항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시의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것은 미래도시의 흥분과 과거도시의 기쁨을 조합시킨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 아트리움은 현대건축의 '상징적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고 친근감 있게 느끼도록 끌어 올렸다. 현대 고층건축의 초유적(超裕的)인 자세와 비교할 때 아트리움은 시장이 형성되는 광장과 같은 느낌을 형성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때 현대건축의 주류가 일반대중과 설계자에게 나타내는 권태 및 매력의 상실은 시급히 교체될 필요성이 있다.

포트만은 아트리움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아트리움을 소생시켜 팔릴 수 있게 한 것이다. Koestler의 '창조행위'에 따르면 창조성이란 기존 아이디어를 독창성 있게 조합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존 포트만은 몇 개의 작은 흐름에 지나지 않았던 아이디어를 묶어 하나의 주류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2-1. 1800-1900년

로마와 이슬람의 건축가들은 조적, 나무 및 포(布)라는 기술의 한계 속에서도 아트리움 중정을 만들었다. 이 시대의 거의

모든 아트리움은 덮개가 없었고 지중해 기후에 위치하였다. 산업혁명으로 철과 유리가 실용화되기 전까지 아트리움 중정에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린하우스는 19세기 초에 출현했다. 그린하우스는 유리를 투과해 실내로 사입된 태양열이 쉽게 빠져 나가지 않는다는 신비로운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써, 태양광이 사입되는 건물외피가 묵직하지 않아도 현저한 기후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린하우스를 이용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1년내 중앙난방을 실시 할 수 있으므로 그린하우스는 종래의 건축에 온실로서 부속되기에 이르렀다.

19세기의 공공건축은 왕권과 결부되어 장려함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당시에 사용할 수 있었던 수단만을 이용하였다. 그당시 기념비적인 실내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특히 값 비싼 부지에 여러 층을 만드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점차 규모가 작아졌으며, 구조는 보다 규칙적이고 보다 경제적으로 되어 갔다. 조적조 대신에 골조구조가 사용되기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었다.

선진적인 건축가는 철과 유리를 매우 빠른 시기부터 사용하여 밝고 넓은 내부공간을 경제적으로 조성하였다. 1806년 John Nash는 슈롭셔주 아팅감 파크에 있는 미술관의 회랑에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지붕을 씌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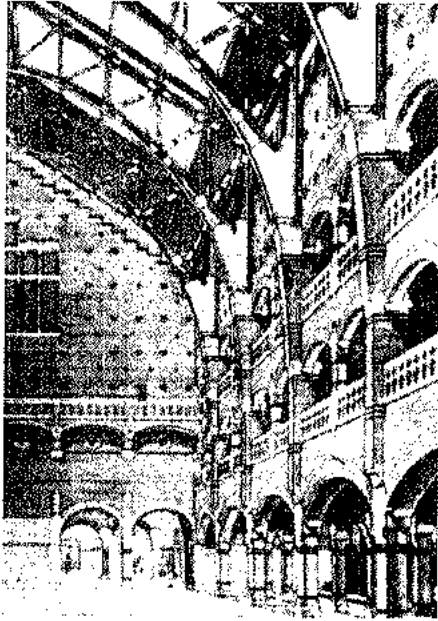
J.C. Loudon이 그린하우스의 건설원리를 밝힌 지 10년도 되지 않아 사람이 사는 첫번째 유리지붕 공간이 나타났다.

1828년 Warren Bucklin은 아케이드 즉, 3층으로된 쇼핑 갤러리를 로드 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설계했다. 1837년, Charles Barry는 풀 물에 있는 리폼클럽의 팔라조 '중정'에 지붕을 얹었다. 1847년 J.B Bunnings는 런던 석탄거래소를 세웠는데 이 건물은 4개층의 사무실이 원형 유리돔을 얹은 거래소 둘레의 철제회랑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서, 장식은 제외하면 경이적일 만큼 현대적인 디자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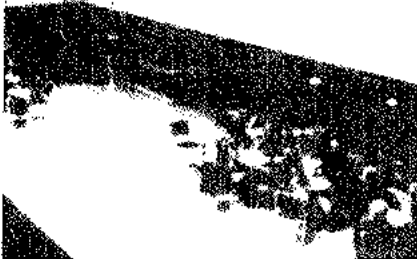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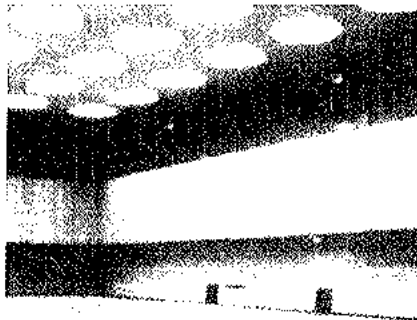
1849년 John Cunningham이 설계한 선원의 리버풀 집은 선원들의 객실을 철제회랑 옆에 배치할 배치하고 5층의 유리지붕 중정에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바로 '아트리움 호텔' 그 자체였다. 19세기 중간에 이르러서는 보다 더 장대한 공간이 정원사와 철도기사에 의해 만들어지면서, 이것은 건축가를 자극하여 재래의 건물에 유리지붕을 덮도록 만들었다.

1867년 Mengoni가 설계한 밀라노의 갤러리아는 거대한 박람회 건축규모로 가로(街路) 전체를 이슬람의 시장처럼 지붕을 얹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시대에 아케이드는 많은 곳에서 유행하였다. 1871년 전성 빅토리아 시대의 맨체스터에서는 Corbett, Rabby 및 Sawyer가 바튼 아케이드에서 갤러리아와 석탄거래소 양쪽의 개념을 융합시켜 고전적인 전형을 만들었다. 즉 점포는 1층, 그 위 3개층은 회랑에서 출입하는 사무소로서 여기에서는 철과 유리의 판타지가 조적의 외곽 안쪽에 형성되어 있다.

1885년 시카고의 루커리빌딩에는 Barry의 '중정' 개념이 사무소건축에 도입되었다. 1860년대 리버풀에 묵고 있을 때 철과 유리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였던 John Root는 11층의 루커리빌딩에서 3층레벨의 중정 지붕을 씌웠다. 이렇게 함으로써 큰 로비공간이 생겼으며 2개층에 점포가 만들어졌지만 고층부의 경제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기서 사용된 아트리움의 계단은 프람보이안트(flamboyant) 양식으로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계단에서의 전망도 멋지다.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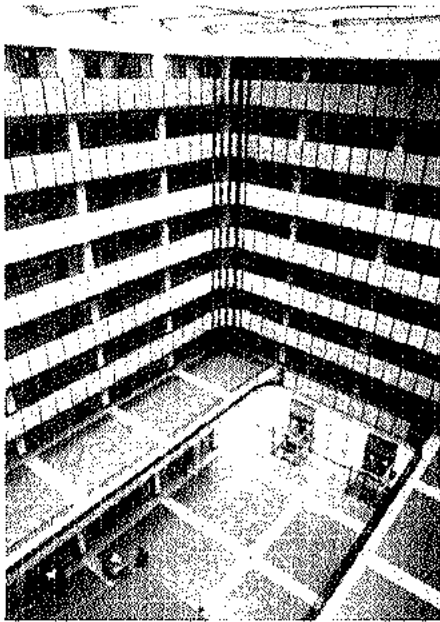


16

- ⑭ Berlage's Amsterdam Stock Exchange(Beurs, 1903)
20세기 초의 유럽아트리움
- ⑮ Rautatalo Building (헬싱키, 1953)
알바알토 설계
- ⑯ Southdale Mall (미네아폴리스, 1952년 오픈) Victor Gruen 설계 쇼핑센터에 지붕을 씌우므로써 아트리움의 도시성을 창조
- ⑰ Midtown Plaza(로체스터) Victor Gruen 설계
- ⑱ Antoine Graves Houses (아틀란타, 조지아, 1965)
- ⑲ Commons Building 단면 (Scarboro College, 온타리오, 1965) John Andrews 설계
- ⑳ History Library (케임브리지대학, 영국, 1968) James Stirling 설계 예전에 볼 수 없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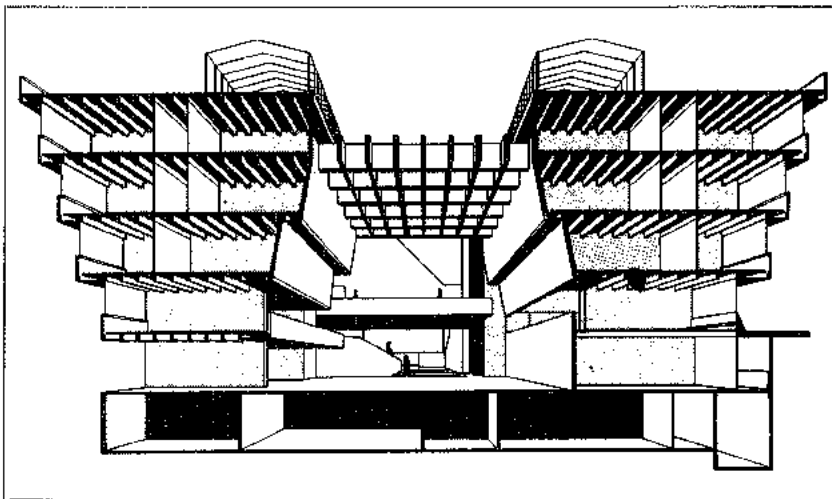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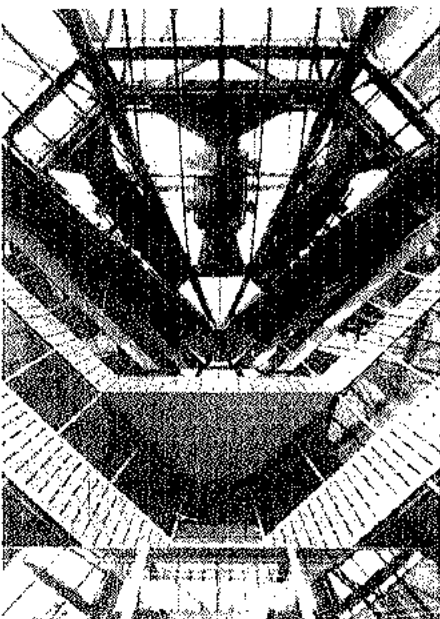


16

1889년 시카고에는 최상층까지 아트리움으로 오픈된 13층짜리 시카고 상공회의소 빌딩이 세워졌다*. 여기서 Baumann Heuhl 은 철제회랑을 사무실로 드나드는 통로로 사용했고 재래형 엘리베이터는 중정을 벗어난 곳에 설치하였다. 불과 4년 뒤에 George Wyman 이 설계한 로스앤젤레스의 브레드베리 빌딩은 교통동선을 극적인 시위로 격상시켰다. 속이 들여다 보이는 철제 엘리베이터 캐이지와 계단실은 큰 종려나무나 양치식물과 함께 이 4층 빌딩의 유리에 덮인 중정에 위치하고 있다.



17



18

아트리움 발전의 또 하나의 흐름인 웨스턴호텔은 1893년 Frank E. Edbrooke 가 설계한 콜로라도주 덴버의 브라운 팔레스트호텔에서 질정에 이르렀다. 이 호텔의 전형적인 큰 홀은 중앙에 바가 있고 객실은 회랑을 통해 들어가게 되어 있으며, 단순 명쾌한 방범시스템이었다. 사람의 움직임은 모두 바텐더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브라운 팔레스는 당초의 설계 이념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그후 8층으로 증축되었고 현재는 사회적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2-2 1900-196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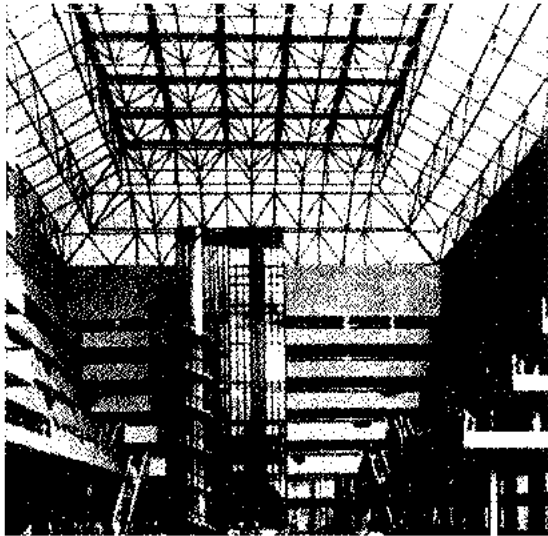
20세기 초에는 2명의 건축가가 아트리움의 개념을 보다 더 제한된 방법으로 사용했다. Berlage 는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베어루스)를 설계하면서 모든 사무실은 회랑에 연결되어 거래공간이 내려다 보이는 철도역사 형태로 만들었다. 이것은 버닝의 석탄거래소 단면형을 커다란 아치형 지붕트러스의 캔틸레버 부분까지 벽돌로 쌓아 올린 것이었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것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뉴욕주 버팔로에 설계한 라킨빌딩이다(1903년). 이 건물은 주변 전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석탄야드로 인한 오염문제도 있어 천공광이 쏟아지는 중정 주위에 사무실을 배치하고 필터로 정화된 공기를 공급했다. 따라서 건물 자체가 하나의 실내공간이 된 셈이다.

제1차 세계대전까지 중정에 지붕을 씌우는 형태는 그 발전이 정지되었다. 북미에서는 고층빌딩이, 그리고 유럽에서는 근대건축이 이에 대신하여 발전되었다. 뉴욕에서는 지역용도 구제가 도입되었고 또한 작은 구획에서도 바닥면적을 크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중정을 만들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유럽에서는 중정이 과거의 너절한 유물이라고 비난받았다. 빛과 공기는 유리탑(glass tower)과 분산개발에 의해 추구되었다. 1914년부터 1964년까지 50년 동안 유럽에서 만들어진 아트리움 건축 가운데 언급할 만한 것은 불과 Owen Williams 가 설계한 영국 노팅검의 부츠공장(1932년)과 1953년에 완성된 알바 알토의 헬싱키

철강협회빌딩(라우타탈로)뿐이다. 부츠공장에서는 유리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지붕 아래 몇 개의 중정을 통해 5층의 작업공간에 주광이 도입되었다. 알토의 라우타탈로 빌딩은 지붕채광형 3층 중정 주위에 회랑형식의 사무실을 배치하고 아트리움 1층에는 커피 바를 설치하였다. 이 알토의 건축은 케임브리지대학 건축학과에 큰 영향을 미쳐 후일 Colin St John Wilson 과 Richard Mac Cormac 을 대표로 하는 '중정과'를 탄생시켰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근대 아트리움 건축의 제1기부터 제2기까지 활동해온 건축가이다. 그는 어느 한 레벨에서 다른 레벨로 진입되는 공간에 계속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위스콘신주 라시누의 존슨왓슨사(1936년)은 천창채광 공간을 기본으로 하여 2층이나 3층의 회랑이 입구 로비와 주요 집무공간 주위에 배치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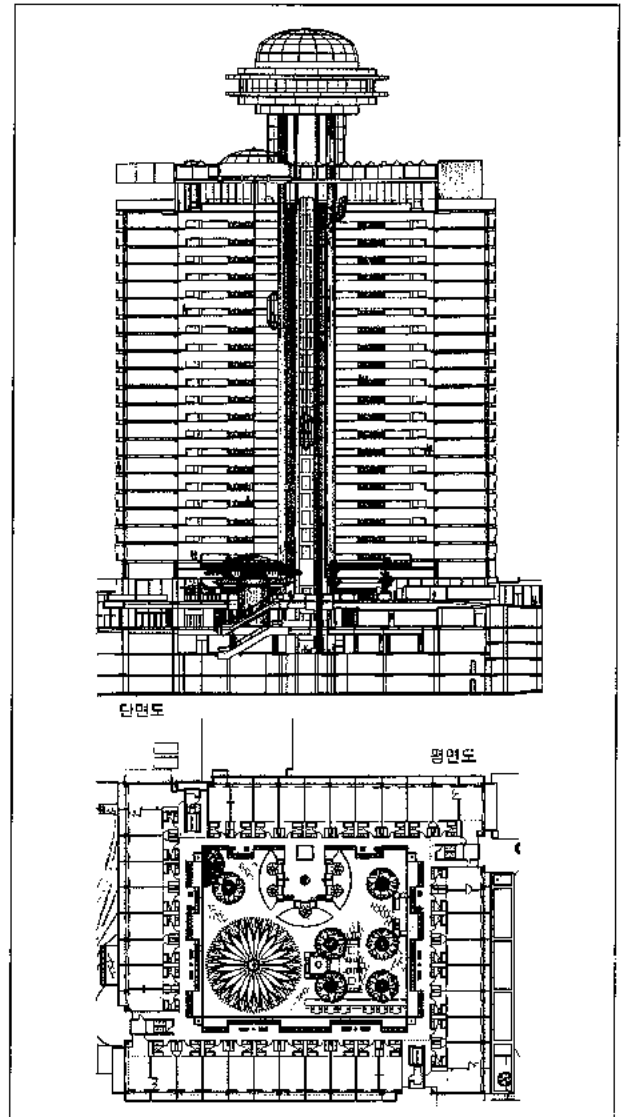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원형 「금빛 캐이지」인 전망용 엘리베이터, 연결용 다리와 둥근 발코니 형태는 분명히 포트맨 형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V.C. 모리스 상점(1949년)과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1959년)은 모두 천창채광으로 나선형의 램프를 갖고 있고 초점이 되는 중앙공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포트맨은 여기에서 착상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라이트의 마린 문화센터는 1960년대 초에 완성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천창채광으로 이루어진 물을 따라 회랑으로부터 사무실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

근대 아트리움이 이룩한 또 하나의 조류는 옥내형 쇼핑 몰이다. 쇼핑 아케이드는 거의 모든 19세기 도시에 퍼져 있는데 A.N.Pomeransev 가 설계한 모스크바의 GUM 백화점(1889-93년)은 그 정점에 위치한다고 하겠다. 다른 건축용도와 마찬가지로 상점가의 위를 덮는다는 생각은 제1차대전 이후 기묘하게 사라졌다. 이것은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지역 쇼핑센터의 건설 시점까지 잊혀지고 있었다. 초기의 교회센터에는 옥외 물과 天蓋가 설치되었다. 1952년 미네아폴리스의 가혹한 기후조건 아래 사우스테일 물을 계획할 때 기후로부터 도시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또한 기후 조절이 필요한 공간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공간은 되도록 통합하여 점포는 2층, 3층으로 겹쳐 쌓였다. 결과적으로는 도시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1953년 3월호

Architectural Forum 지는 ‘그 명확한 기후와 막연한 분위기는 지금까지 어느 북방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건물의 설계자는 Victor Gruen 이었는데, 그는 도시성을 개발하는데 헌신하여 왔다. 그는 옥내형 물을 도시중심에 도입하는 장점을 뉴욕주 로체스터의 미드타운 플라자(1956-62년)에서 선구적으로 보여 주었다. 본래 새로운 점포와 낡은 점포 사이의 가로였던 부분에 지붕을 걸치고 주차장·버스정류장·사무소·호텔 등을 혼성시킴으로써 그루엔은 쇠퇴일로인 도시중심에 활기를 부여하였다. 이와같이 새롭게 창조된 사회적 초점으로서의 공공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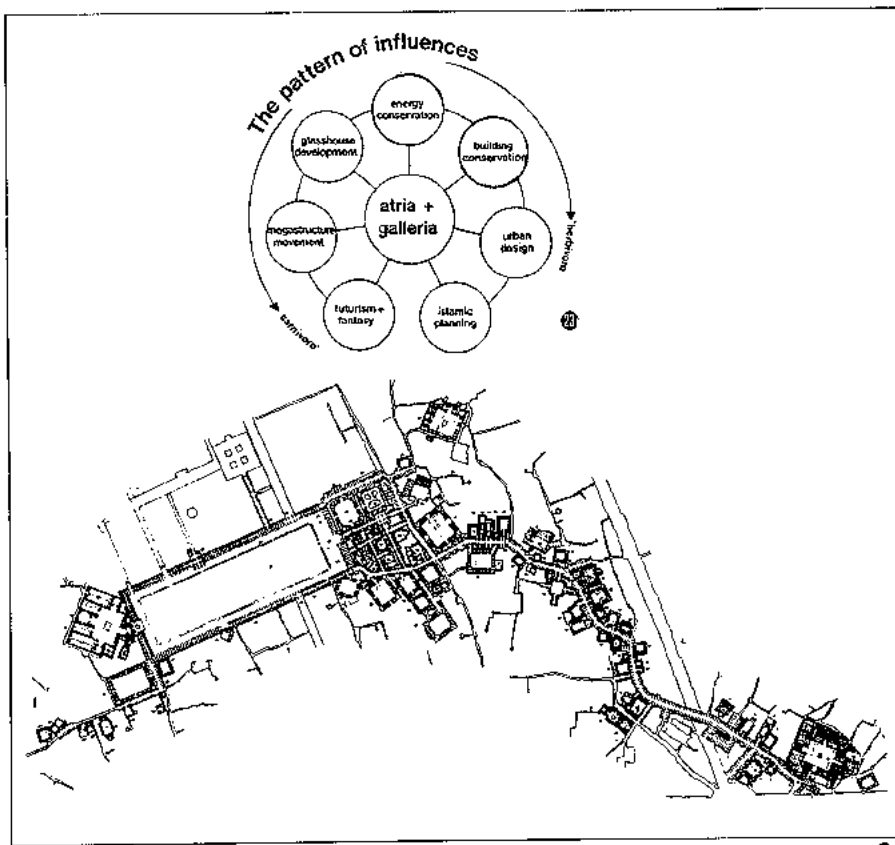


이벤트 공간을 높이 평가되었고 사용빈도가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뉴 타운과 지역센터의 종합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1950년대의 각기 독립된 건축군(群)은 1960년대 중간에 이르자 지붕이 달린 물과 광장으로 발전되었다. 코펜하겐 근교의 레도브르와 링그비의 두 센터에는 지붕달린 중앙광장이 있고 그 주위의 층별 테라스에는 갖가지 용도가 혼재하여 있다.

2-3. 1960-1967년

1962년에서 63년사이 존 포트맨은 아틀란타 공용주택공사로부터 210호의 고령자용 독신자 및 부부를 위한 공동주택인 안도니 그레이브스 하우스 설계를



의뢰받았다. 그러나 부지가 좁았기 때문에 종래와 같은 3층 테라스주택은 건축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담당행정관이었던 Dorothy McGuire는 재미있는 건축을 한번 해보라고 조언했다.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포트만은 호텔의 객실과 같은 단순한 주호를 개방복도형식의 두 중정 주위에 배치했다. 비와 태양직사광을 피하면서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차양을 중정 위에 설치함으로써 앉아서 대화를 나누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졌다.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모두의 반응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이것을 설계한 사나이를 만나보고 싶은. 재능도 상식도 뛰어났어. 실제로는 예산범위안에서 끝낼 수 있었으나 맥가이어는 그 설계가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고급호텔에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했다. 1965년 포트만은 하얏트社에 팔리도록 결정되어 있던 호텔 설계도를 완성시켰다.

포트만이 그러한 사회적인 공간을 포함시키려고 생각한 동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해주려는 그의 소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의식적인 건축적 목표때문은 아니었다. 그는 젊은 때 상품을 판 적이 있는 경험을 통해 무엇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무엇이 미국 도시에 결여되어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즉, 도시에는 소음이나 먼지로부터 고통받지 않는 공공공간, 푸르름과 물이 있으며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편한 마음으로 사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새로운 생각이 존 포트만 한 사람의 공적이라 평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것이다. 리버풀에서는 Colin St John Wilson이 1960년대 중반 시빅센터의 설계를 의뢰받았다. 그는 4개의 7층으로 이루어진 사무소를 풍차날개처럼 연결하고 중심에는 오픈스페이스를 설치하였다. 이 중정에는 유리지붕이 있고 중정 주위의 회랑부분은 시의 각 부서별 접수 카운터가 배치되어 있다. 에스컬레이터와 유리로 사방이 둘러싸인 엘리베이터와 계단은 각 회랑으로 통한다.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모형을 보면 현대 아트리움이 지니고 있는



㉑ Regency Hyatt (아틀란타, 조지아, 1967) 최초로 아트리움이라 불리우는 중정에 지붕설치

㉒ Liverpool Civic Centre Project (리버풀, 1965) Colin St John Wilson 설계

㉓ 아트리움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네트워크

㉔ 실내의 도시(Isafahan, 이란) 모든 건물들은

중정형태로서 주요 가로(비자르)는 지붕이 씌워져 있다.

㉕ Kashan (이란) 바자르에 지붕이 설치된 모습

㉖ 다층 갤러리의 예

Arcade(Providence, 로드 아일랜드, 1928) Russell Warren과 James Bucklin 설계
Irving Haynes 복원(1980)

거의 모든 요소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캐나다에서 유명해진 오스트레일리아 사람 John Andrews 는 온타리오주의 스카보로대학을 설계(1966년)할 때 같은 생각을 하였다. 즉, 제1기의 건축은 단면이 크게 개방되어 있으며 중심블록의 복도는 회랑으로 되어 있었고 실내의 중정을 '만남의 장'으로 연결하였다. 이 실내 공공광장은 엔드류스가 학생시절 토론토시 청사의 설계안으로써 설계했고, 1958년의 국제 현상설계에서 최종 전형까지 남았던 아이디어를 실현시킨 것이다.

몬트리올에서는 Harold Ship 가 설계한 알렉시스 니온 플라자라는 쇼핑 콤플렉스가 EXPO '67 을 위해 개발러시의 일익을 담당했다. 여기에서는 5층의 회랑형식 사무소와 점포가 지붕달린 광장을 내려다보면서 지하철 역과 연결된다.

뉴욕에서는 Kevin Roche 와 John Dinkeloo 가 1967년에 포드재단 본부빌딩을 완성시켰다. 이 매우 특이한 건축은 공간의 대부분을 12층 건물 L 형의 안쪽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세단 샤프트와 2개의 유리벽에 의해 거대한 정원을 덮으면서 외형을 4각형으로 통합하고 있다. 최상층 2개층은 4각형의 외주를 빙 둘러 쌓으며 중앙에 천장을 형성하고 있다. 매력적인 입구를 가진 정원과 안쪽에 집무공간을 두었다는 것은 아트리움 공간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기념탑이라 하겠다.

끝으로 영국에서는 1968년에 James Stirling 이 케임브리지대학 역사도서관을 완성시켰다. 포드재단 빌딩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고층건물이 L 형을 이룬다. 그러나 그 사이의 공간에는 경사진 유리텐트가 설치되어 독서실을 덮고 있다. 이 역시 아트리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바로 그 건축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L 형 부분의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는 독서실을 내려다 보고 있으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유리를 넣은 대화발코니가 튀어나와 있다.

그러나 이들 개척자들 중에서 존 포트만이 아트리움 개념의 보급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대중성에 대한 날카로운 육감과 거기에 이어지는 상업적인 성공이 아트리움 건축을 보다 더



많이 보급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건축광장의 전망탐용으로 오티스환가 고안한 윌클라이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더욱이 눈부신 공간의 존재를 고객이 그것과 대면하기까지 계속 숨긴 것은 그의 쇼맨 기질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길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낮은 입구가 갑자기 220피트나 있는 높은 공간을 향해 열리는 것이다. 바닥 표시는 고객으로 하여금 가방을 떨구며 놀람의 탄성을 지르는 장소를 가리킨다. 이것은 '신을 모독하는 장소'라 불리고 있다. 하이아트사의 홍보팀은 리젠시호텔에 '아트리움'이라는 말을 적용시켜 이 호텔의 생생한 '특징'에 호화로운 인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냈다. 그 결과 이 호텔의 객실 점유율은 하이아트사와 경쟁상대인 어느 호텔보다도 높았으며, 이로써 아트리움에 대한 조류는 확장되었다.

2-4. 1970년대 이후

아트리움 건축의 역사와 오늘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수없이 많으며 또한 갖가지이다. 몇 가지에 대하여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아트리움의 개념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풍부한 아이디어가 있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 있다. 하나는 낙천적인 진보신앙·고도기술 지향의 미래주의적 사고방식으로서, 말하자면 '육식주의적' 접근치이다. 다른 하나는 '초식주의적'인 사고방식 즉, 에너지 보존, 오래된 건축의 보존, 도시디자인에 대한 배려, 역사나 문화교류에 대한 인식, 성장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 등이다. 신기술이 이루어지자마자 채용하는 것은 '육식주의적' 열광이다. 수정궁과 윌 클라이어 엘리베이터는 모두 그런 주장의

산물이다. 아이디어나 동기를 SF 소설 또는 영화로 부터 받아들이고 '진보'의 감각을 나타내려는 경향을 최근 아트리움 건축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것이 바로 미래의 형태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식주의적 동기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깊다. 에너지 절약에 민감한 설계자들은 아트리움을 자연형 태양열의 기후제어 시스템으로써 주의깊게 사용한다. 건축보존운동은 오래된 건축을 재생시키는데 아트리움을 사용하려 한다. 기존의 중정이나 위가 덮인 홀 또는 건물의 안 깊이가 지나치게 깊어 구멍을 뚫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건축에 아트리움을 활용한다. 도시 디자이너는 보다 더 휴먼 스케일에 가까운 크기로 건축을 만들 때나 사용하기 쉬운 보행자 통로를 도시에 만들때 아트리움을 이용한다. 상점가나 공공광장을 갤러리아(galleria) 나 아트리움으로 덮어 버리려는 아이디어가 출현된 것은 1970년대의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흥미있는 경향중의 하나이다. 이것이 이슬람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일치되고 있음은 놀랄 일이 아니다.

중동 도시의 발전 패턴 즉, 건축이 완전히 안쪽을 향하고 있는 중정형식은 로마 이래의 전통이다. 이슬람화와 같은 도시에서는 서양적인 의미에서의 건축의 '바깥쪽'은 전혀 볼 수가 없다. 주요 공공도로는 바자르(bazaar)이며, 이것은 갤러리아의 원형이다. 그 부분을 벗어나는데 豫商들의 숙소, 대학, 모스크, 그리고 주택의 중정이 있다.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는 중정이며 그 뒤는 2차적인 출입구를 위한 작은 골목이나 각 호의 경계벽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부공간'만의 도시가 된다. 물론 하늘을 향해서는 대개 열려 있지만.

동양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서양에서는 외부공간에 대한 상대성으로 내부공간이 강조되고 있다. 이슬람국가와 석유가 서구변영의 열쇠를 쥐고 또한 지도적인 서구의 건축가에게 이슬람 전통속에서 건축하도록 설계를 의뢰하는 데에서 이슬람의 '공공내부공간' 건축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문화적 집중의 성과로서 과거 10년 동안에 아랍국가는 크고 웅장한 아트리움 건축을 많이 세워왔다.

부여박물관 현상설계경기

■ 공모개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지난번 실시된 국립대구박물관 현상설계 참가자중 입선된 6개 건축사사무소를 지명하여 부여박물관설계를 공모하였다.

백제문화 발전의 일환으로 새로운 신축이 요청됨에 따라 지명공모전으로, 실시된 이번 현상공모에는 삼우건축을 제외한 천일종합건축(대표:한규봉), 삼정종합건축(대표:김기웅), 그룹원종합건축(대표:류익현), 공간종합건축(대표:장세양), 일건종합건축(대표:최관영) 등 5개 사무소가 응모에 참여하여 심사결과 천일종합건축(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천일종합건축안은 입지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실정이나 대지를 적절히 활용하였으며, 축의 개념이 은폐적이면서도 자연과 잘 조화되며, 외형에서 통일성이 있으며, 박물관의 기능을 적절히 분리하여 계획한 무난한 작품이라는 심사평을 들었다. 본지에서는 당선작을 포함한 응모작 모두를 게재하고자 한다.

〈당선작〉

- 천일종합건축사사무소

〈응모작〉

- 그룹원종합건축사사무소
-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 삼정종합건축사사무소

■ 심사위원

- 위원장:김정철(한국건축가협회장)
- 위 원:윤승중(원도시건축 대표)
- 위 원:장석웅(야도부건축 대표)
- 위 원:강석원(그룹가건축 대표)
- 위 원:장양모(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중앙박물관장 추천)

- 대지 남측은 넓은 들판이 있는 도로변의 야산
- 북동측으로 시가지가 펼쳐짐
- 자연생 수림지대이며 정림사지, 궁남지, 조왕사, 통수정, 봉화대 등 유적지가 인접

■ 건립 배경 및 목적

부여는 백제의 고도로서 순수 백제문화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국내외의 관광객이 현재 연간 35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의 증진기능을 담당해온 기존의 부여박물관(고 김수근 설계, 1968년)은 전시·수장 규모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천이 요구하는 현대적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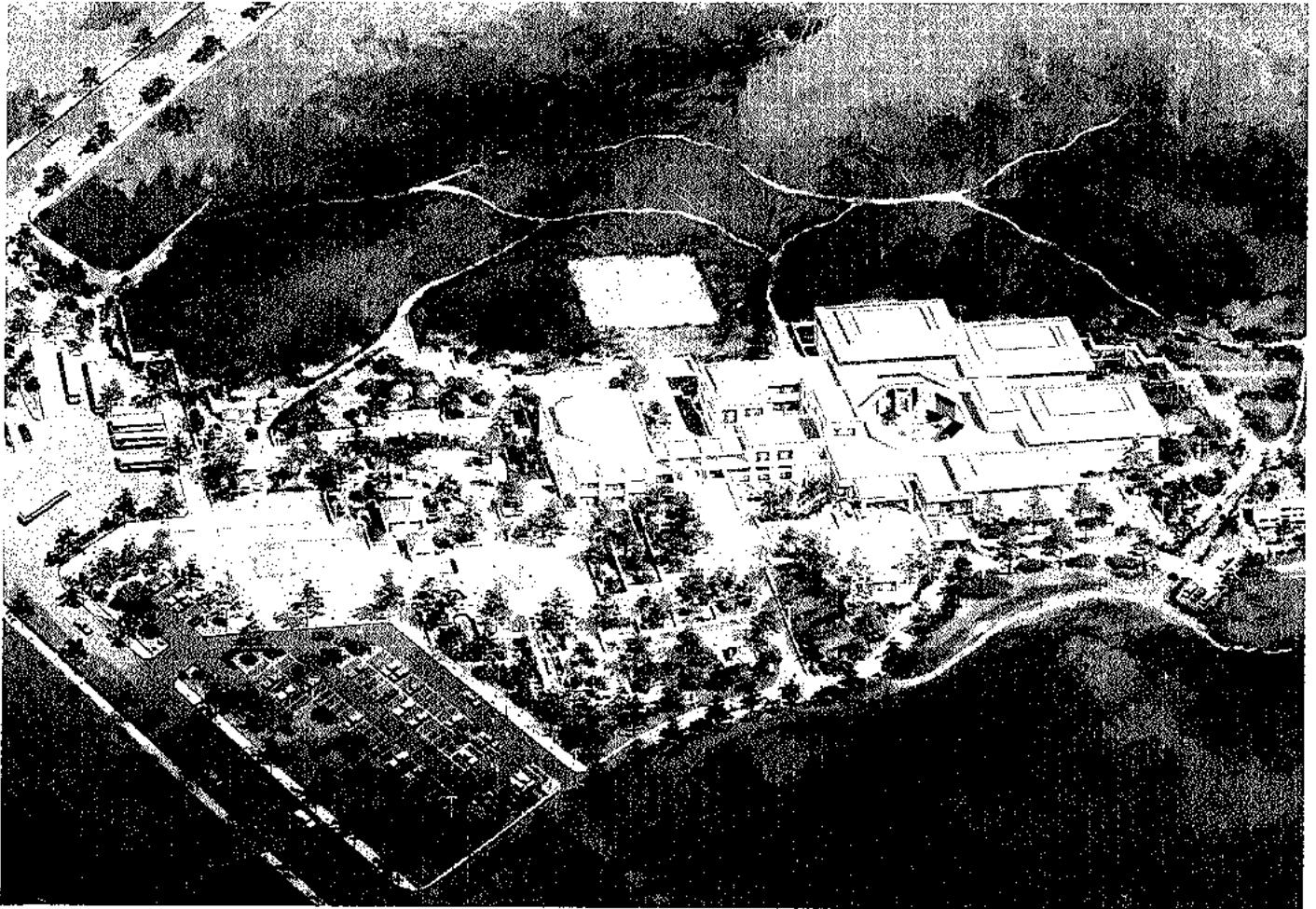
이에 지역문화 시설로서의 미래지향적인 박물관을 새로이 건설하여 기능의 만족뿐 아니라, 충남도민에게 백제고도로서의 문화적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역사적 산교육의 장을 제공하며, 나아가 백제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대외적으로 소개하여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설계지침

건립위치: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산16-1
번지 일대-해발 12m의 금성산 서측 계곡
대지면적:약 61,000㎡
건립내용:용도-박물관 및 부대시설
건물면적:약 8,000㎡
구 조:합리적인 구조
층 수:지하1층, 지상2층
건설기간:1990년~1992년
총공사비:약 120억(살내의 진시, 부대시설 포함)
주변 토지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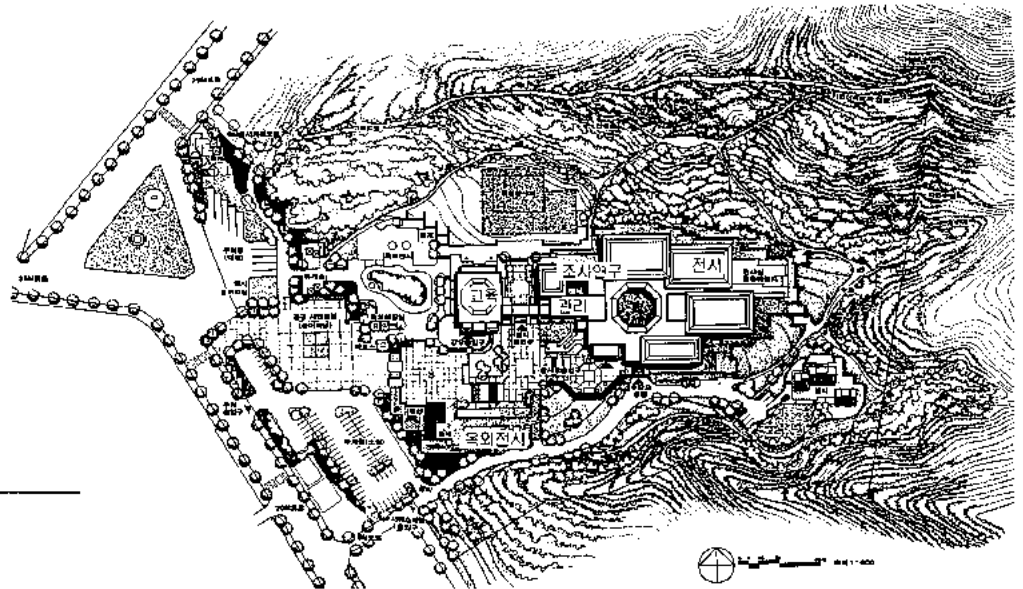
당선작

천일종합건축 案 (대표 : 韓奎峯)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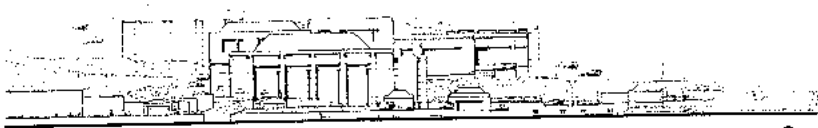
대지면적/61,000㎡
 건축면적/5,093.5㎡
 건 폐 율/8.4%
 연 면 적/8,368.8㎡
 지상충면적/5,949.8㎡
 용 적 륜/9.8%
 규 모/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철근콘크리트조, 일
 부 철골트러스
 외장재료/화강석 마감
 주차대수/83대
 소 형 차-73대, 대형차-10대



- | | |
|--------|-----------|
| ① 배치도 | ⑤ 동선계획도 |
| ② 정면도 | ⑥ 토지이용계획도 |
| ③ 좌측면도 | |
| ④ 우측면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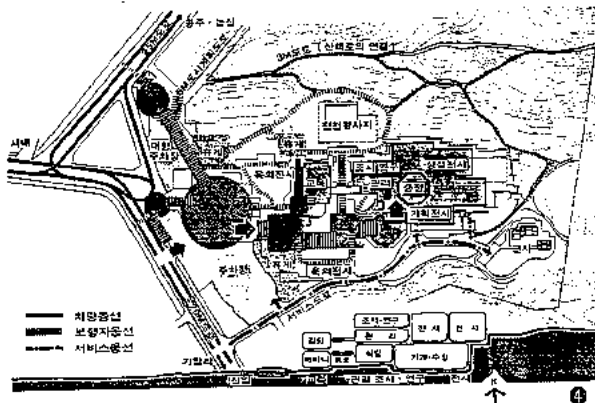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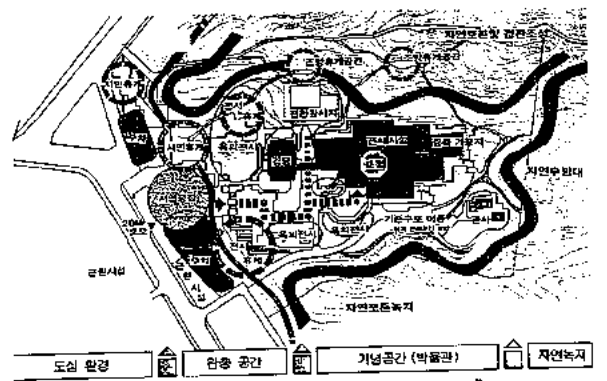
3



4



5



6

■ 배치계획

● 축의 설정

- 도로축 및 방위축 (Main Axis)
- 능선축 (Sub Axis)
- 지형을 이용한 수평확산배치로 건물에 강하축 부여 및 가용지이용 효율화

● 진입

- 역광진입을 배제한 남향배치
- 관료적이고 직설적인 진입배치
- 전면도로에서 분기하여 박물관의 남측 진입시 도로 진입시 다양한 경관변화와 효과연출
- 점진적 깊이를 가진 공간연출로 위계부여
- 벽천설치로 진입방향을 시각적으로 유도

●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 도로측 소음방지
- 주변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경관고려 및 영역감의 확보

● 진입도로측 전경

- 대지폭의 협소로 건물 Mass의 남북방향배치는 관료적, 직설적
- 건물 Mass의 동서방향배치로 자연(배경: 금성산)과 조화되는 완결체이면서 여백의미를 포함한 박물관 전경추구
- 고도 부여의 Image에 부합하기 위하여 "마치 이전부터 그곳에서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박물관"의 독특한 표정부여
- 강당 외벽면을 이용한 옥외전시와 건물과 동일재료(화강

석)인 화계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진입전경의 인식도 증진

● 분동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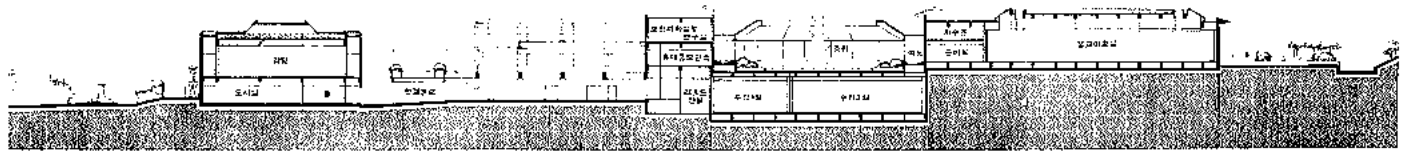
- 전천왕사지와 건물, 옥외전시와의 공간적·시각적 연계 부여
- 기능의 연계(전시 + 교육)
- 교육동 분리로 시민들의 전 급성용이 및 시간이용대에 따른 동선분리

● 옥외공간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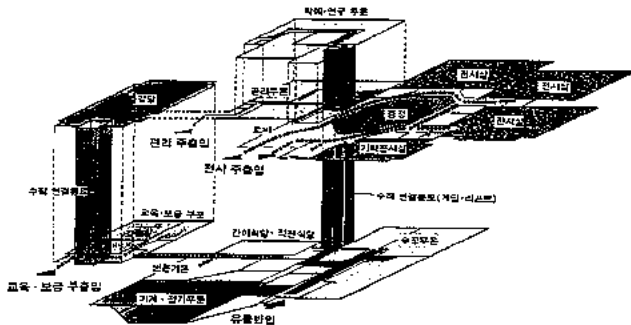
- 진입광장
- 잔·출입, 대기, 집산의 기능
- 놀이마당
- 시민공원으로서의 성격부여로 박물관 관람객의 자연스런 유입확보
- 보행광장 : 보·차동선의 분리

• 수경요소와 조화시켜 박물관의 영역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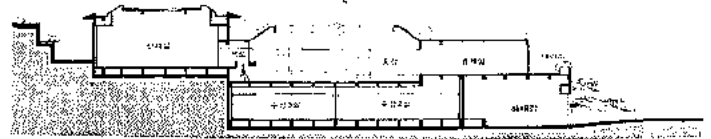
- 시점의 이동, 공간의 심연성
- 옥외전시/휴게공간
- 강당 및 교육보급부문 출입
- 배제공간
- 여러 공간사이에서 공간끼리 서로 연결시키는 통로 역할
- 교육동·전시동 및 전천왕사지와 연계
- 관리 및 조사·연구부문 출입
- Entrance Terrace
- 옥외전시장으로 활용
- Sunken 파의 연계
- 수경요소 및 자연경관 조망
- 승화공간(중정)
- 반외부공간으로서 전시 + 휴게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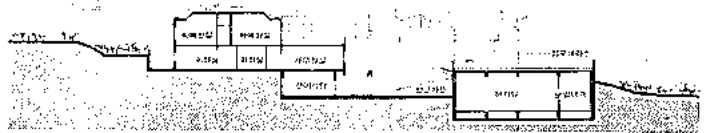
1



2



3



4

● 진입형태 및 기법(전통기법 도입)

- 도하(渡河) : 건물 진입부에 기존 수로를 이용하여 영역구분 및 공간의 성격부여
- 박물관의 문화공간과 주변 공원의 위락공간을 상징적으로 분절
- 승단(昇段) : 건물의부 Entrance Terrace 입구에 설치하여 향천(向天) 및 지향성을 부여

● Entrance Terrace

- 팔각요소를 도입하여 진입의 유연성을 꾀하였고 건물내부 중정과의 통일성
- 지형을 이용하여 수경요소 및 경관조망

■ 평면계획

● 중정형 도입

- 건물의 집약성
- 대지 Level 고저차로 인한

각 전시실 Mass 의 분절을 중정형 도입으로 결속시킴

● 팔각요소 도입

- 팔각요소 도입으로 박물관의 Imag Up을 위한 계획
- 유도성
- Lobby에서 전시장까지의 관람객의 자연스런 유도동선 설정
- 응집력
- 강한 응집력 부여로 중정의 활성화
- 중정중앙부에 오브제 배치로 응집력 강조
- 접근성
- 모든 방향에서의 접근성용이로 중정의 이용도를 높임

● 중정

- 방향설정
- 반 외부공간인 중정내부에 옥외전시 설치로 옥외전시의 내부공간화, 또한 유물의 보존·관

리 편의도모

- 성격 부여

- 휴게 + 전시의 장

-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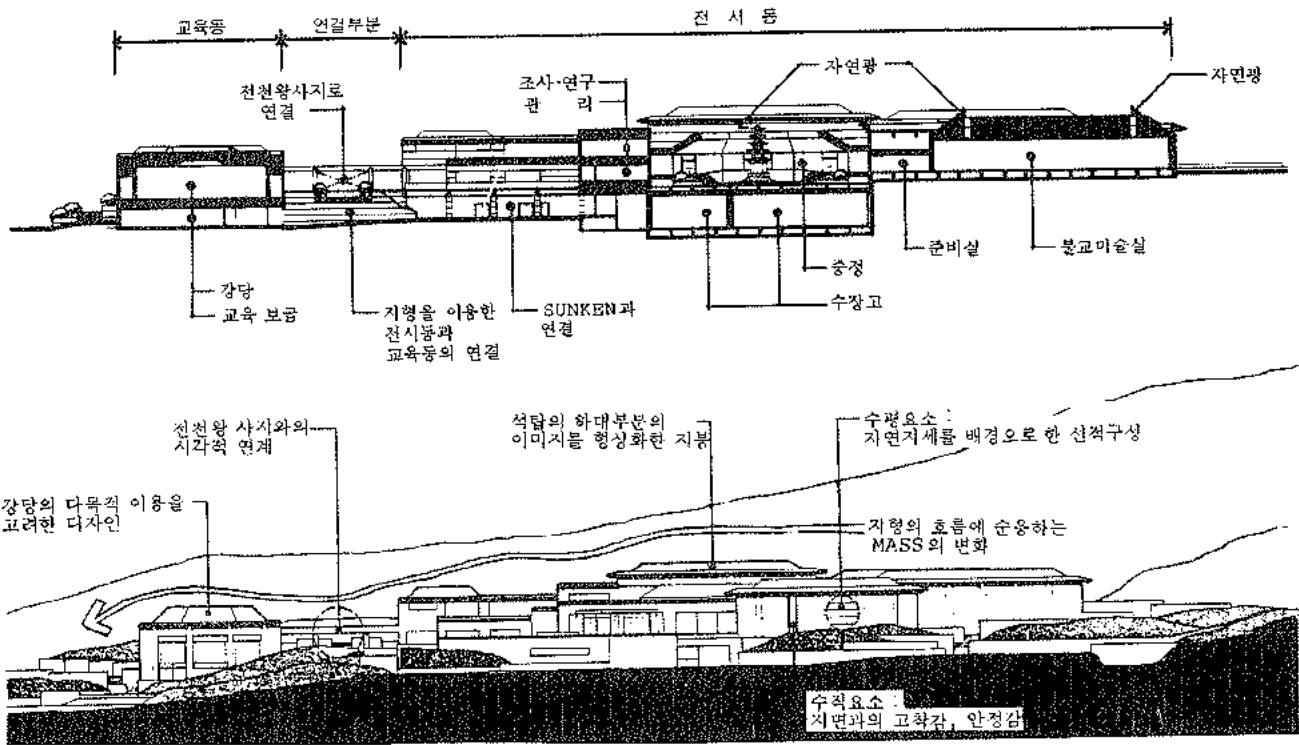
- 중정 8면의 복도에서 전면 유리창을 통하여 중정내부를 다양한 방향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의도
- 중정 팔면의 창호에 전통 형태 도입으로 마치 한옥 내부에서 외부공간을 조망하고, 외부공간에서 한옥 내부를 투시하는 분위기 연출
- 필요에 따라 강연외에 간이 공연도 할 수 있도록 고정식 의자를 지양하고 이동식 의자를 설치하여 가변성 있는 공간설정
- 직원식당과 관람객이용 간이식당의 주방을 일원화
- 장래 전시부문 확대를 고려한 증축계획
- 전시동선의 시작부에 전시안내실을 두어 단체관람객방문시

Video 를 통한 박물관 및 유물의 개괄적인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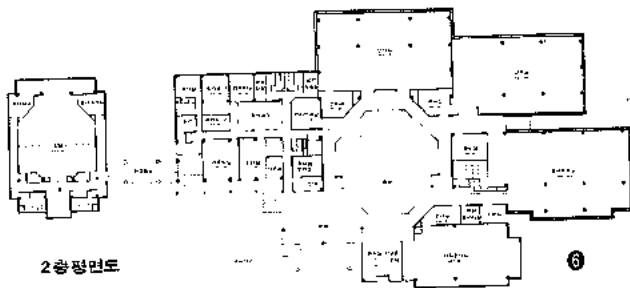
- 박물관의 사회적 참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실을 들

■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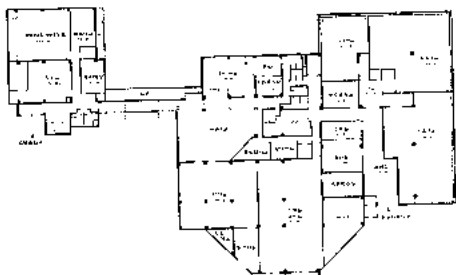
- 지형에 순응하는 단면계획
- 층별 ZONING;
 - 전시동 1층 - 전시, 관리
 - 2층 - 조사, 연구
 - 지하 1층 - 기계, 식당
 - 교육동 - 1층-교육보급
 - 2층 - 강당
- 지형을 이용한 전시동과 교육동연결
- 자연광의 적극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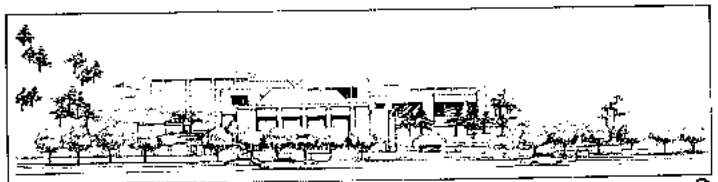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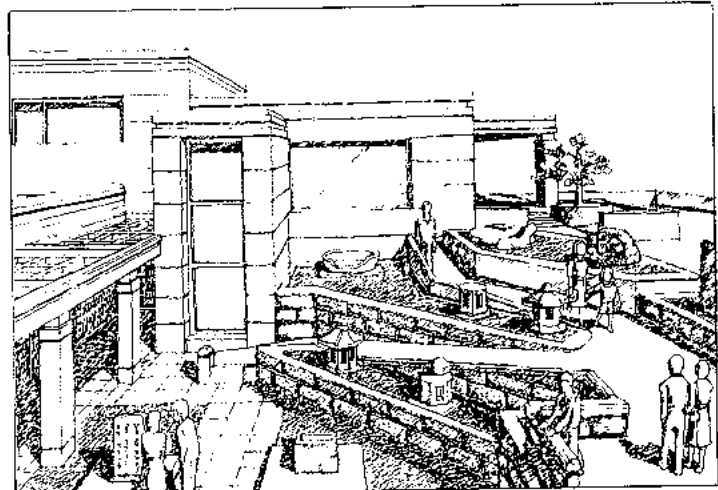
6



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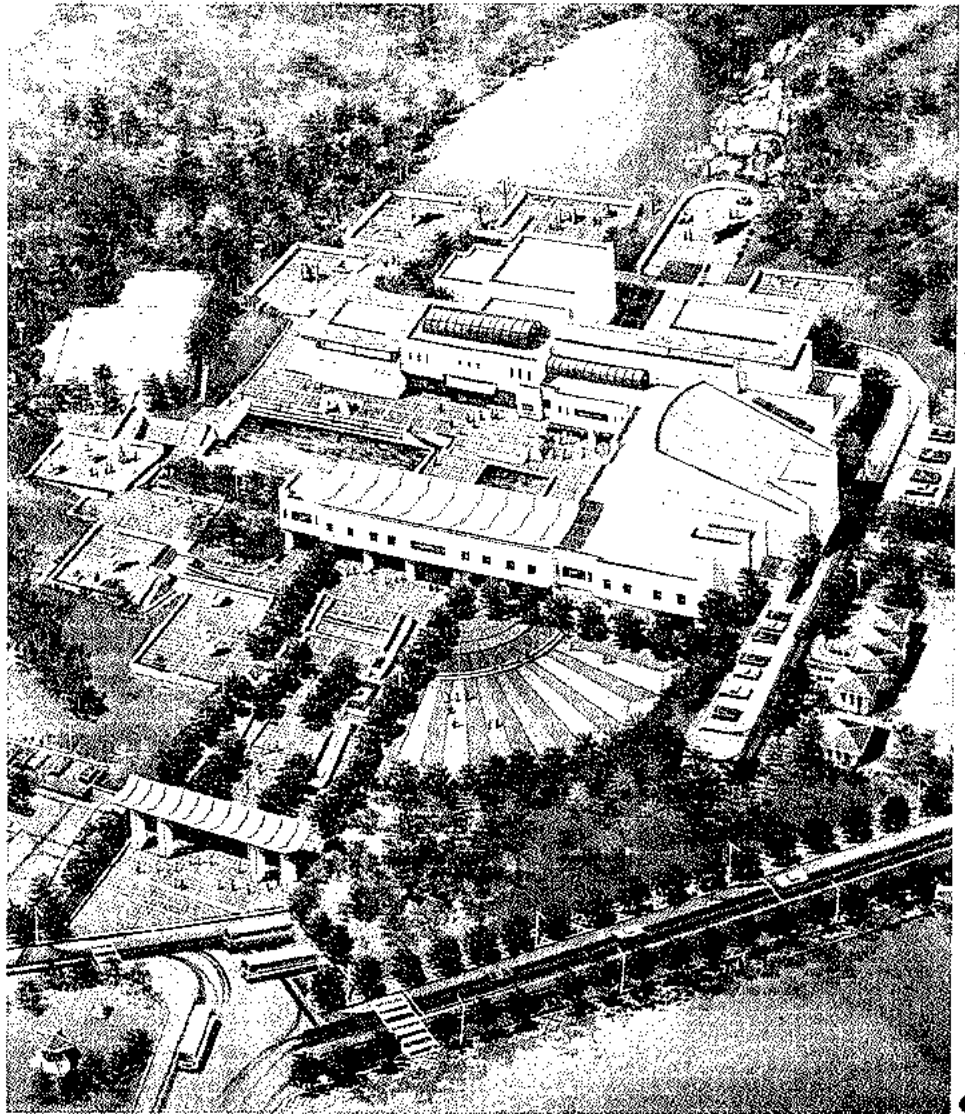
- ① 정면도
- ② 내부동선체계도
- ③ 종단면도
- ④ 횡단면도
- ⑤ 단면계획
- ⑥ 1층평면도
- ⑦ 지하층평면도
- ⑧ 도로에서 본 전경
- ⑨ 선근부분루시도

응모작

그룹원종합건축案
(대표: 柳翼鉉)

■ 설계개요

건축면적/5,127.2㎡
연면적/8,397.3㎡
건폐율/8.4%
용적률/13.8%
규모/지하 1층, 지상 2층
층별면적/1층-4,876.5㎡
2층-550.3㎡
지층-2,554.7㎡
부대시설/415.8㎡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일부 철골트러스조
주차대수/81대(법정57대)
주요외장/화강석 거친돌 쌓기
및 잔다듬 마감 + 일부 본타일



■ 배치계획

- 동측 및 북, 남측의 구릉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여 경내의 위요녹지로 활용함과 동시에 박물관의 건물 및 옥외 시설들은 중앙부 저지대에 배치
- 전면 도로로부터 부지 깊숙히 전개되는 저지대를 따라 동측의 주축을 설정, 이 축상에 전통적 공간 개념인 위계적 공간을 구성배치
- 위계적 외부공간 구성을 위하여 도입공간, 진입공간, 전정공간, 중정공간, 후정공간등을 주축에 따라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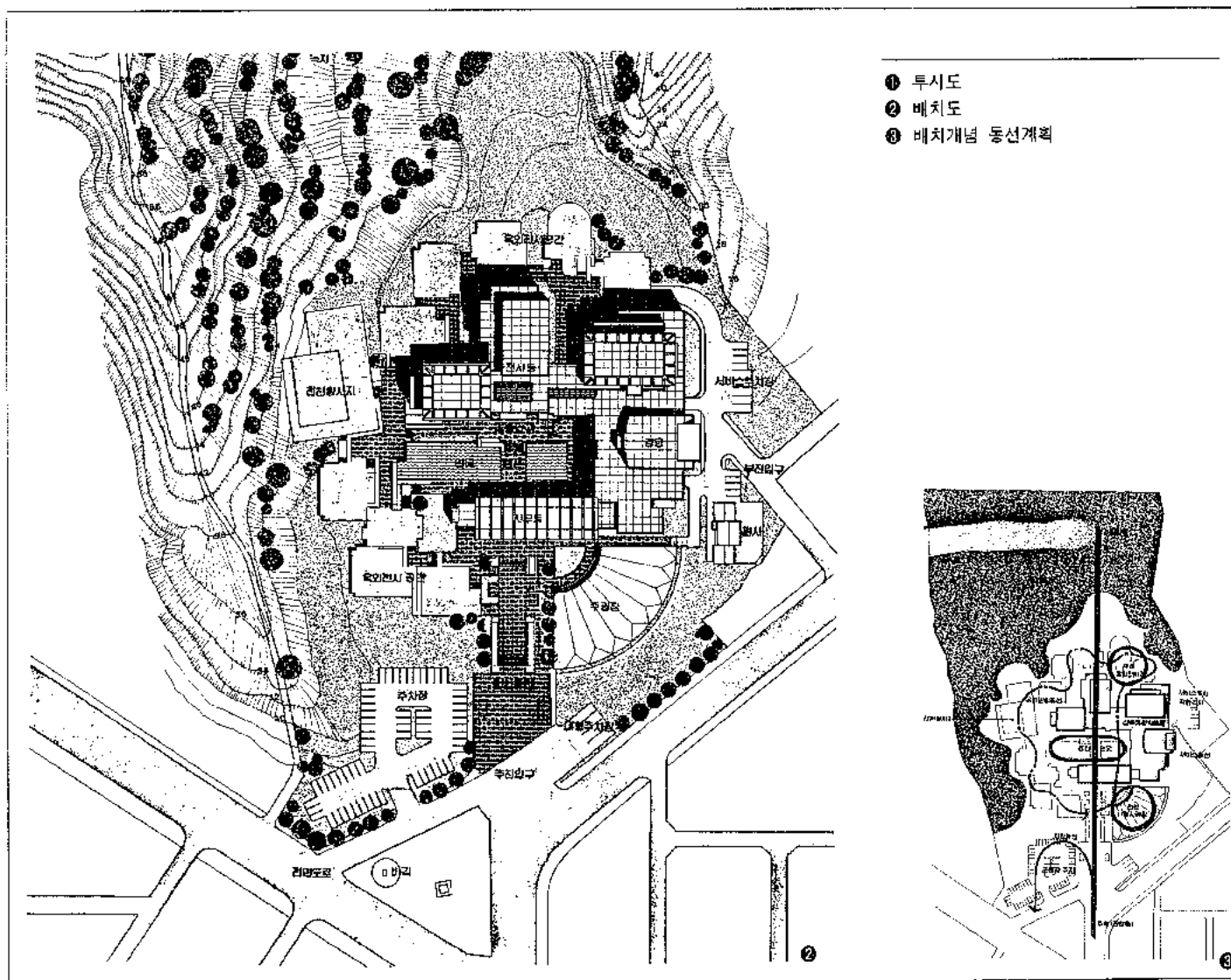
- 각기 다른 성격의 공간들은 지형을 이용한 단차 및 건물의 피로티를 활용한 전이공간의 설정을 통하여 공간별 Identity 확립
- 박물관 건물은 피로티에 의한 전이공간, 연못을 주요소로 한 중정 및 주출입구의 기단광장 등을 포괄하는 공간 형성 요소로써 부지 중앙부에 주축과 직교하여 배치
- 진천왕사지를 포함하여 연계적으로 구성된 방형의 단위공간들을 자연지형에 따른 단차에 따라 건물주위에 배치함으로써 지형 및 건물과 일체화된 옥외전

시공간 구성

- 수림에 의한 배후 녹지, 잔디광장 및 인공정원으로 구성된 휴게 공간, 방형의 로넌식 옥외전시 공간 및 건물부지능 일련의 환경요소들을 연계적으로 중첩하여 구성함으로써 옥내외가 일체화된 배치계획 마련
- 부지 서남단의 구릉상에 관사지역을 설치하여 박물관 주경내와 분리된 사적공간을 형성하는 동시에 후문동 서비스도로와 연계

■ 평면계획

- 부지 초입의 바깥 정원과 배후 녹지를 연결하는 축을 진입축인 주축으로, 이에 직교하는 축을 건물의 횡축인 부축으로 설정
- 전시관 부분과 교육, 보급부분, 관리연구부분을 평면적으로 분리 구성함으로써 기능배분이 명확히 이루어 지도록 하는 동시에 이들을 연계적으로 구성
- 주축상에 설정된 전시관의 주출입구를 대공간으로 구성, 메인홀로 계획하는 한편 교육보급부분 및 관리연구부분의 부출입



구를 설정, 동선의 편리성 확보

- 전시관 부분은 메인홀을 중심으로 각 전시실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선택관람 및 순로관람이 가능도록 계획

- 각 전시실은 대규모 모형 전시를 중심으로 하여 그 배면에 패널전시, 전면에 유물전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공간을 중심으로하여 3면 알코브를 배치하는 동시에 각 전시실의 독특한 Identity 확립을 위한 도입 회랑을 설치

- 교육 보급 부분은 대강당을 중심으로 하여 전시동 축과 직교하는 남측면에 배치하여 별도

사용이 가능토록 보조 출입구를 중정에 설치

- 대강당은 후면의 일부 스타디움식 고정좌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바닥을 평면화하여 다양한 행위가 가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관리연구 부분은 천정과 중정을 연계시키는 피로티 상부에 설정하여 전면 매스를 구성케 하며 수장고와 기계실간의 긴밀한 동선연결이 가능토록 계획하는 외에 주출입구와의 거리를 고려, 별도의 출입구를 주축상에 설치

- 수장부분 및 기계실은 피로티

동선 측면에 서비스 도로와 연계하여 기반 구조화

단면계획

- 도입부로 부터 피로티 및 중정 레벨, 주출입구 레벨을 점진적으로 상향 설정하여 점진적 진입감 유도

- 휴게실 및 교육보급부분의 바닥 레벨을 메인홀로부터 1.5m 상향 설정하여 전시공간과 분리 계획하는 동시에 중정과 후정을 연결하는 피로티 공간의 천정고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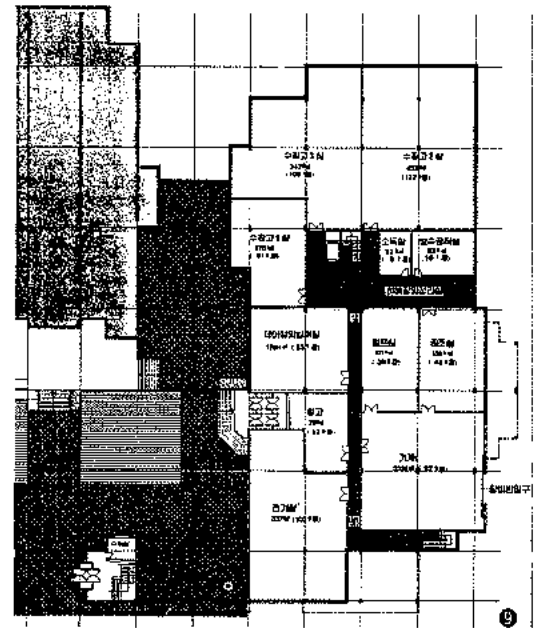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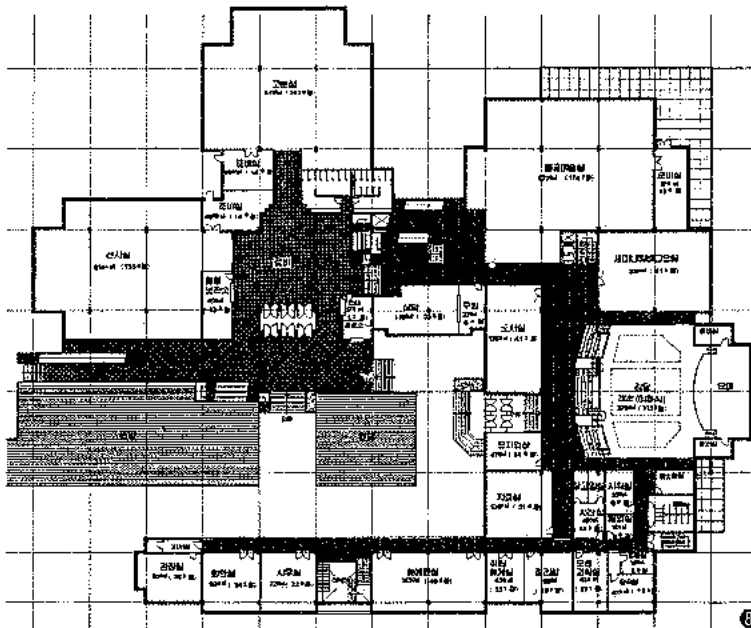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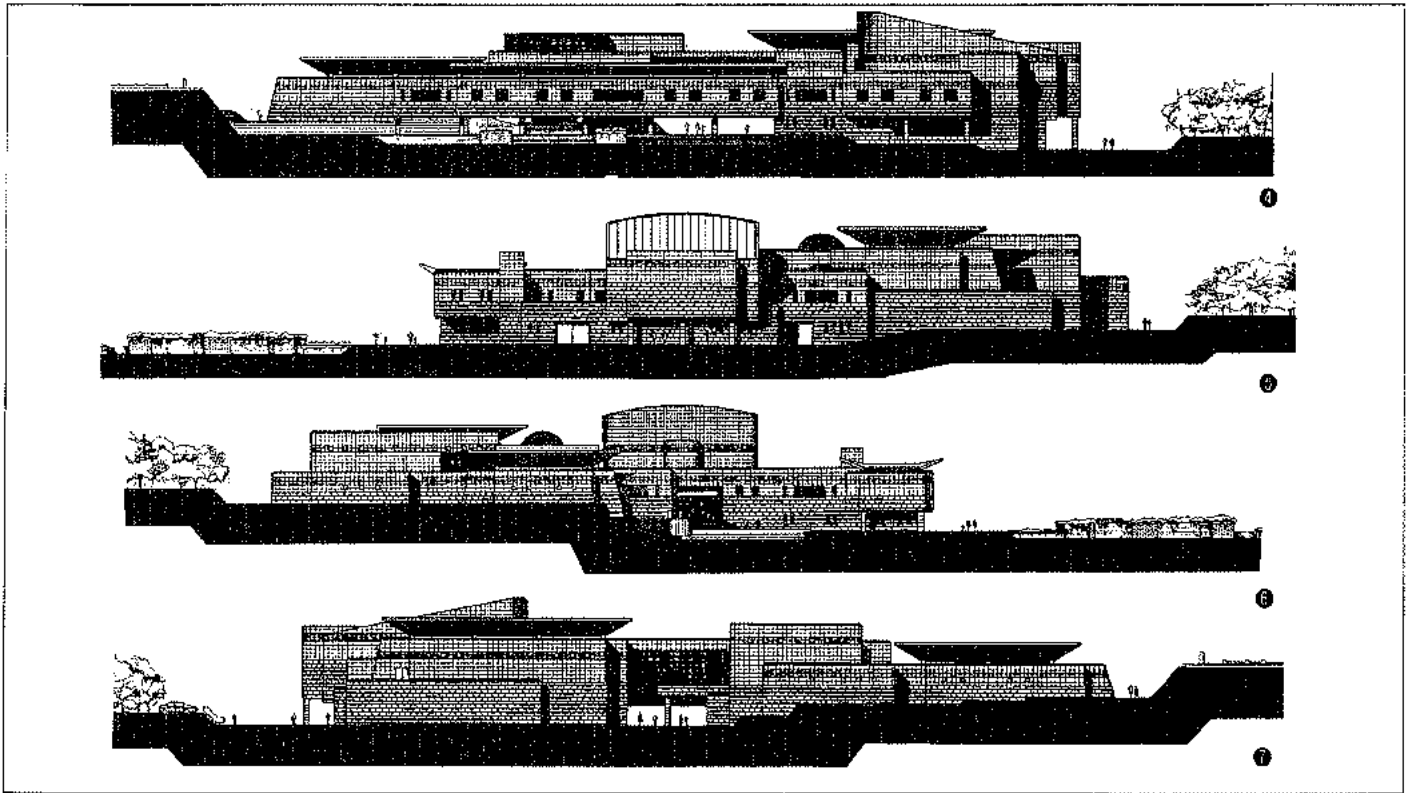
- 전사실, 고분실로 부터 불교

미술실, 기획전시실을 1.5m² 및 2.4m 높이로 각 전시실 구역을 설정하는 동시에 관람동선의 변화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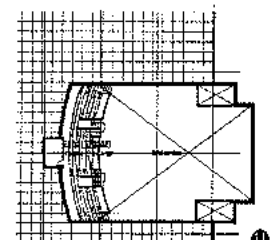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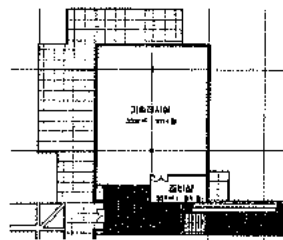
- 각 전시실 높이가 달리 구성됨으로써 옥외전시의 로단식구성과 함께 별도 매스의 Cluster로써 조소적 형태화

- 각 전시실은 중앙부 6~7.2m, 주변부 4.2m의 천정고를 확보하여 모형전시 및 판넬, 유물 전시에 적합한 공간 형성토록 계획

- 메인홀 및 회랑에는 천창을 설치, 옥내 공간의 활성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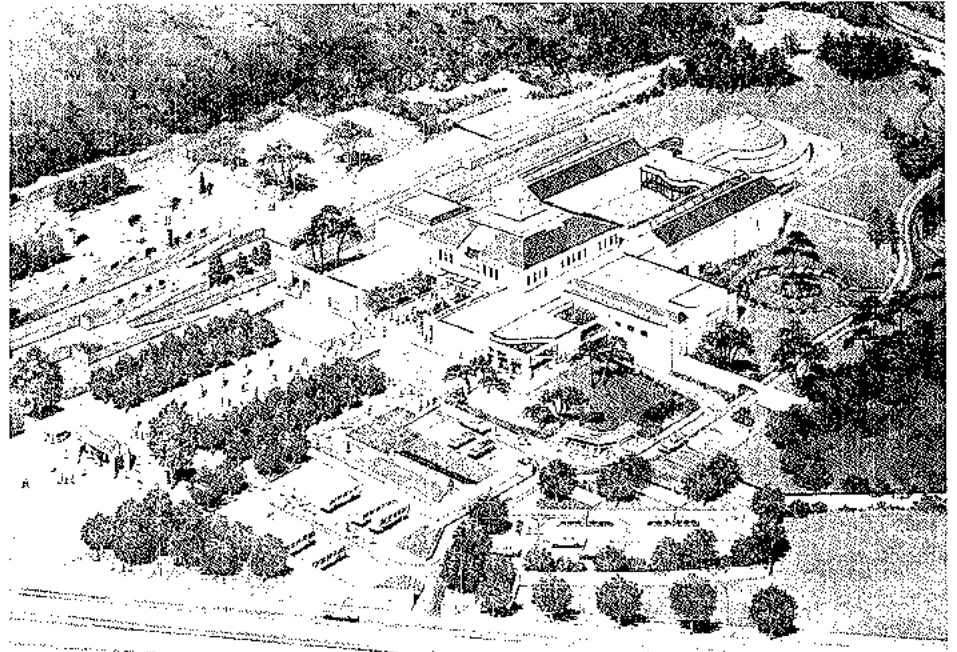


- ④ 서측평면도
- ⑤ 남측평면도
- ⑥ 북측면도
- ⑦ 동측면도
- ⑧ 1층평면도
- ⑨ 지층평면도
- ⑩ 2층 평면도
- ⑪ 감당상부 평면도



응모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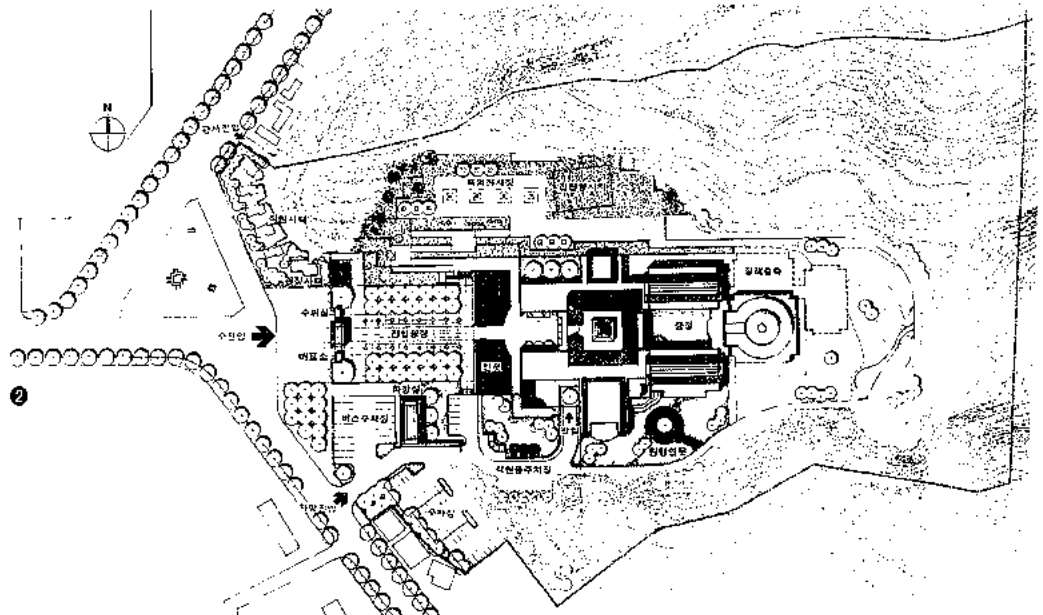
일건종합건축案 (대표 : 崔寬泳)



①

설계개요

대지면적/61,000㎡
건축면적/4,043.3㎡
연면적/8,357.7㎡
규 모/지상2층, 지하1층
구 조/R.C 조
계획면적/
박물관-2,389.2평
부대시설-139.0평
세 2,528.2평



②

① 투시도

② 배치도

배치계획

〈토지이용 계획〉

가. Buildable Area (건축가능 지역)

건물 : 대지 전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둬
• 단계적 공간구성 : 좁고 깊은 형상이므로 여러단계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음.

나. 옥외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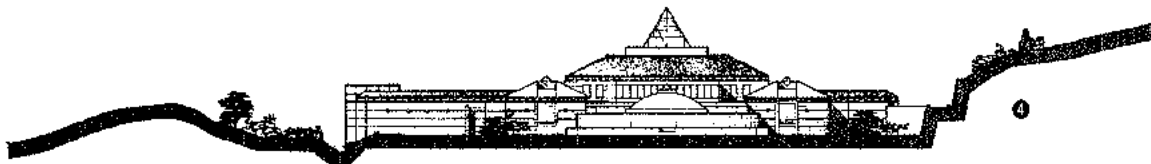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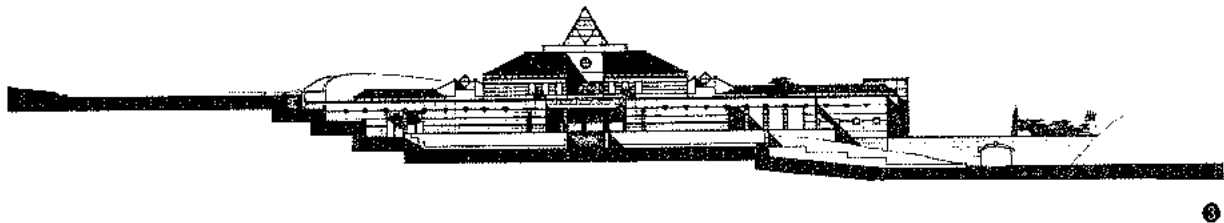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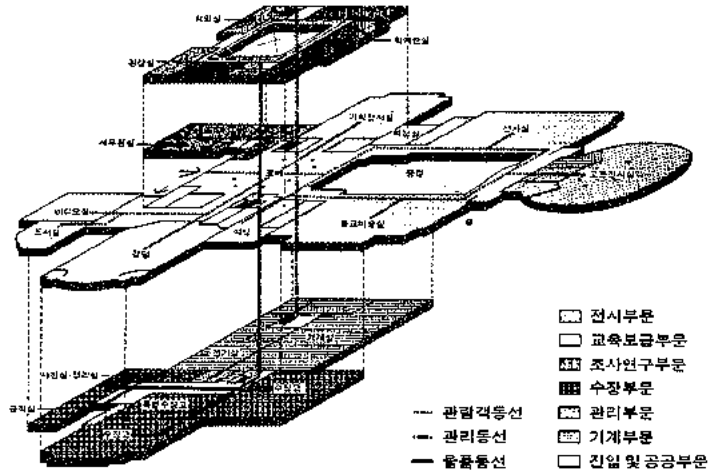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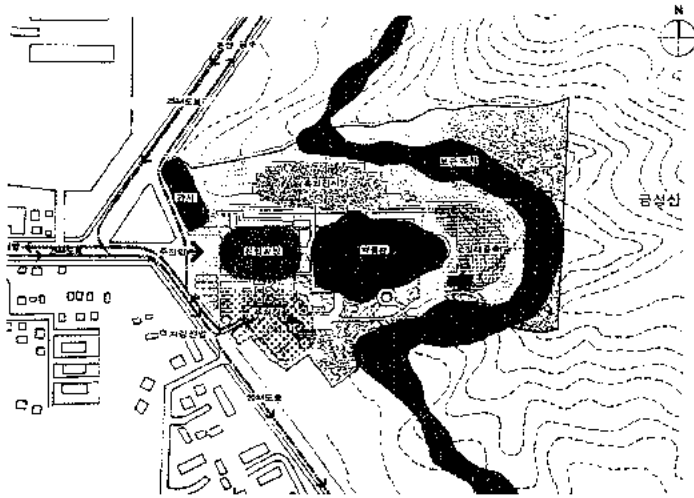
• 전천왕사지와 그 주변부사용
• 전시실 관람후 자연스런 동선 연결

다. 관사

• 대지 전면 북측 상단의 기존 주택지 사용
• 관사용지로 사용
• 외부와의 연결용이

라. 주차장

• 도로에 넓게 접한 곳
• 레벨이 낮아 건물이 들어서기에 적합치 않은 곳
• 바깥마당과의 직접적 연결고려
마. 증축예정지
• 전시실 증축이 주
Buildable Area 내에서 전시실



과 연결 기능토록 확보
바. 추가식재

• 북측능 능선의 공동묘지 지역
은 경사가 비교적 급하므로 식
재하여 배후 녹지로 함.

〈동선계획〉

가. 관람객 동선

• 외부 주차장 → 바깥마당(매
표) → 진입광장 → 전정 → 전시
관내 또는 옥외전시장

나. 차량동선

• 일반차량

남측도로 → 외부주차장

• 직원 및 서비스차량

외부주차장 → ① 내부주차장 →

② 지하층 수장고 및 기계실 →

③ 외곽서비스도로

• 지역 여건상 단체관광객용 대
형차량 주차장 이주

다. 관사

• 독립된 출입구 : 도로에서 직
접 연결

〈축〉

• 동서방향의 도시축(주축) +
남서방향의 지형축(부축)

• 주축을 중심으로 대칭적 구성

• 부축방향은 지형에의 순응을
위해 건물 깊이를 최대한 줄임.

〈중축〉

• 전시실과 인접한 여유공간을
이용

• 전시실 고분실과 전시 순로의
연결이 고려됨.

■ 평면계획

〈기능별 Zoning 및 동선체계〉

• 진입동선의 분리

전정에서 관리부문, 교육부문,
전시부문 출입구를 별도로 둠

• Major Space 설정

각 부문간의 연결에 핵심(전시,
교육, 관리, 연구)

• 가능한한 층별 Zoning

1층(전시, 교육, 관리) 2층(관
리, 연구) 지하층(수장, 기계)

〈평면구성 방식〉

• 큰실과 큰실사이의 개방공간
이나 휴게실, 부속실 등을 삼
임.

■ 입면계획

• 3분법 : 기단부 + 몸체 + 지
붕

• 기단부 : 벽, 담장의 이미지,
정면성을 부여하기 위해 벽, 담
장을 연장

• 몸체 : 벽 +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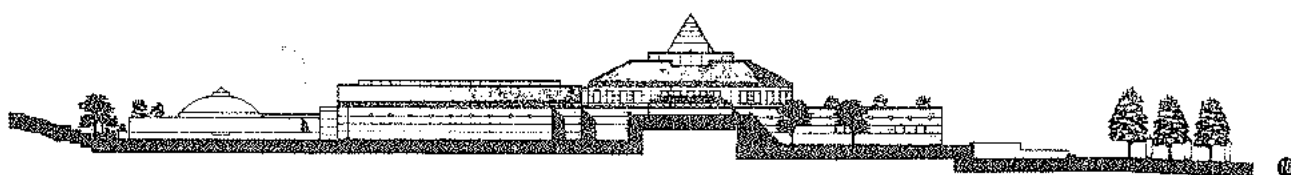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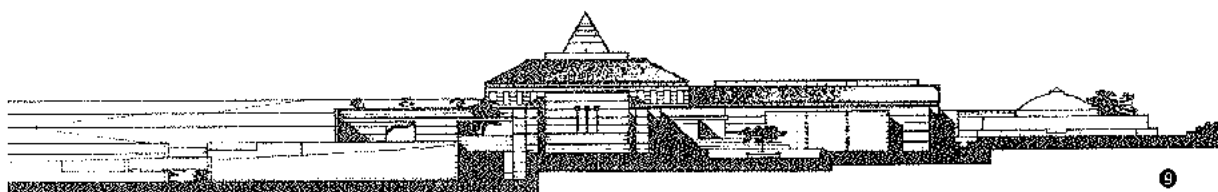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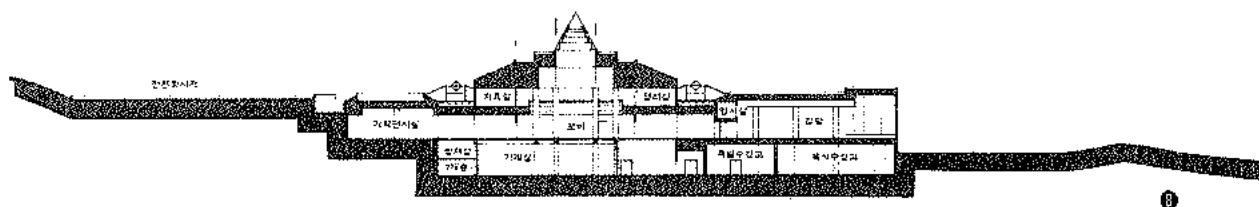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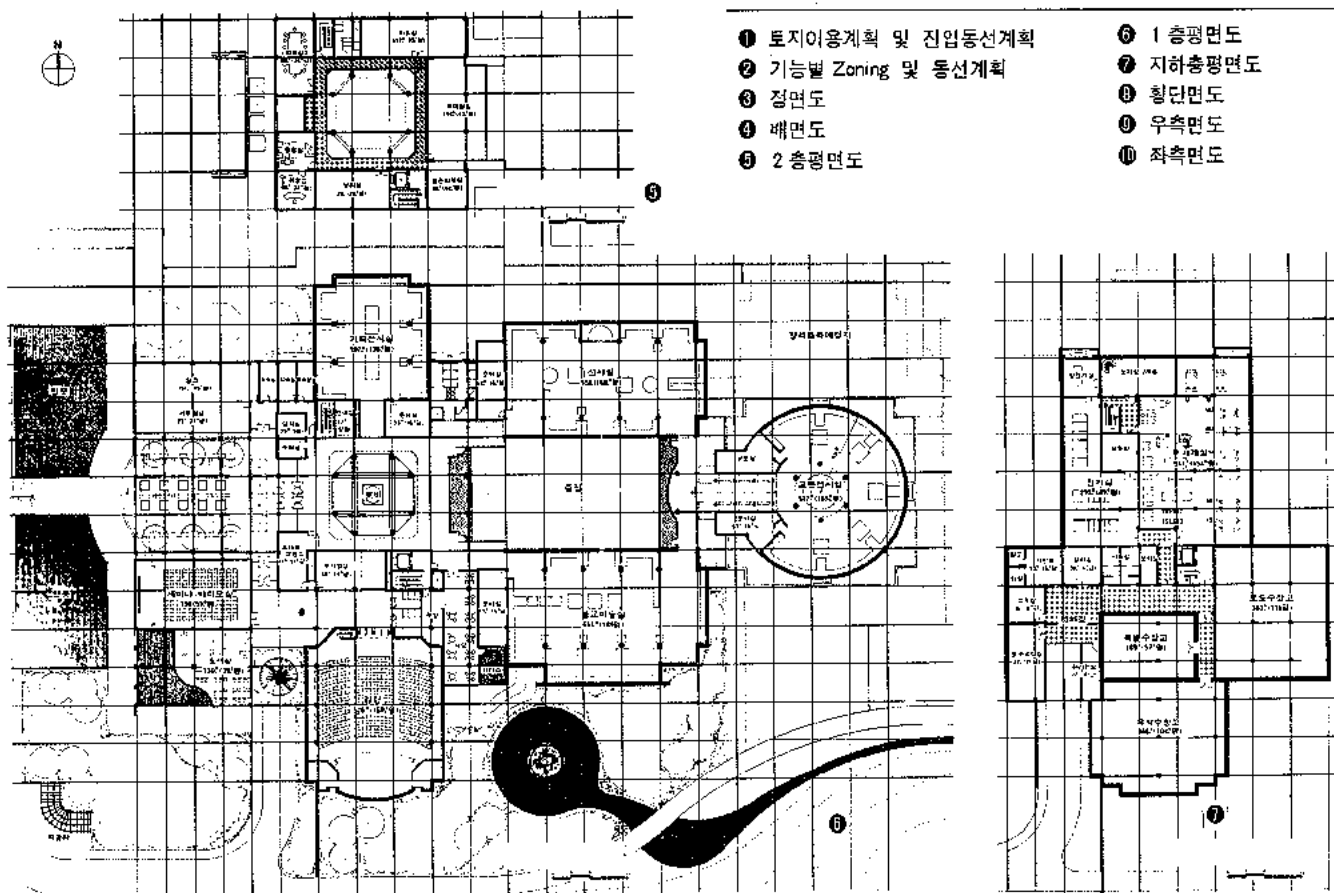
• 지붕 : 친근하면서도 현대적
인 분위기

• 액센트 요소 : 정방형의 문전
을 사용

〈Mass〉

• 중심축의 방향성을 강조 : 전
면의 양측날개 전시실, 불교미
술실, 고분전시실

• 상징성 : Major Space 상부
의 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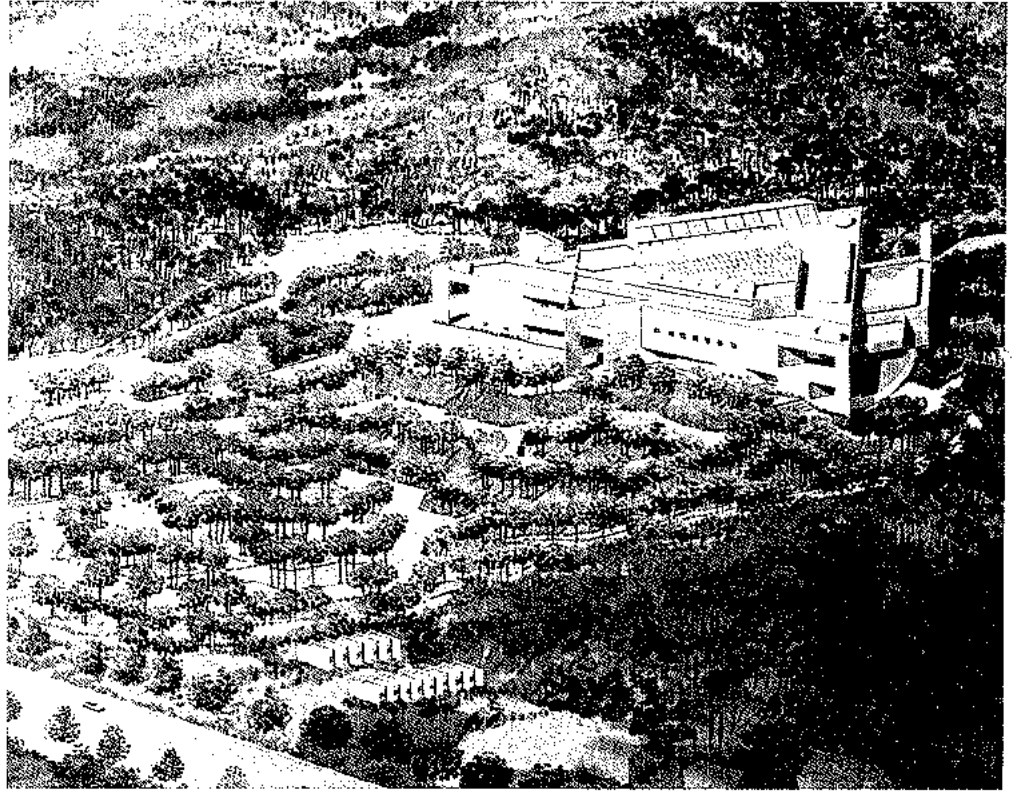


응모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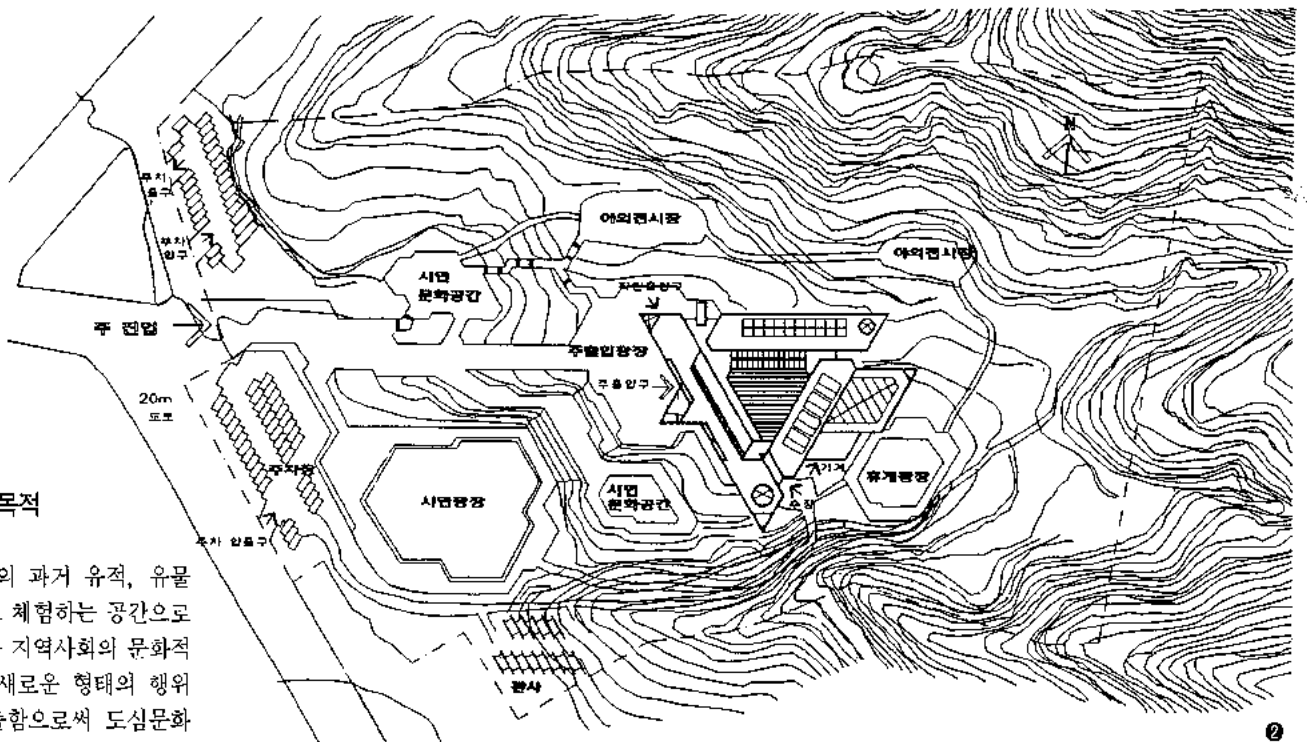
공간종합건축案 (대표: 張世洋)

■ 설계개요

대지면적/61,000㎡
건축연면적/7,904㎡
건축면적/3,662㎡
주차대수/46대 이상(법규상)
규모/지하1층, 지상2층
주차대수/옥외 64대
외부마감/화강석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시설/전시실, 강당, 사무실
기타시설/관사, 야외전시장, 옥
외화장실, 수위실, 주차장, 야
외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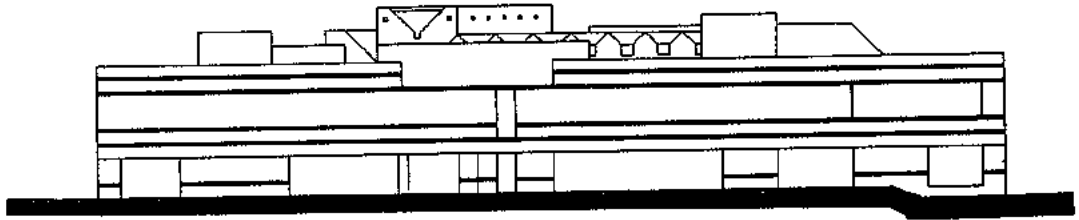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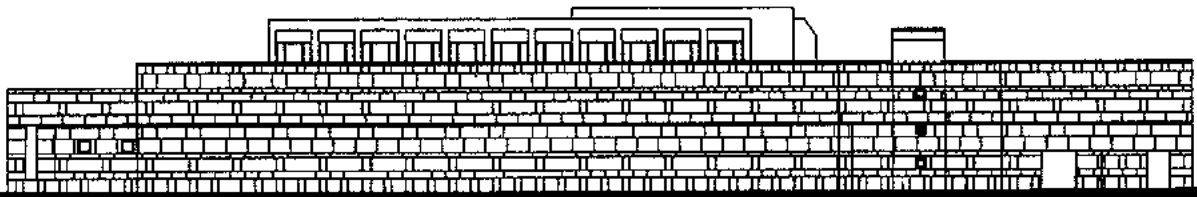
■ 계획의 목적

충남지역의 과거 유적, 유물을 보존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문화적인 가치와 새로운 형태의 행위 공간을 연출함으로써 도심문화의 창달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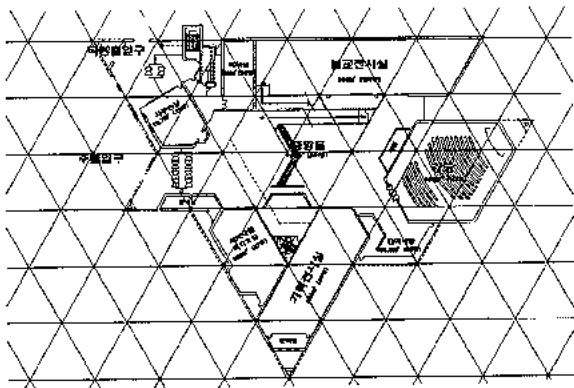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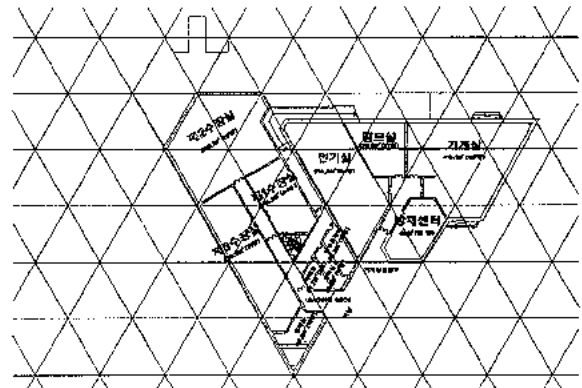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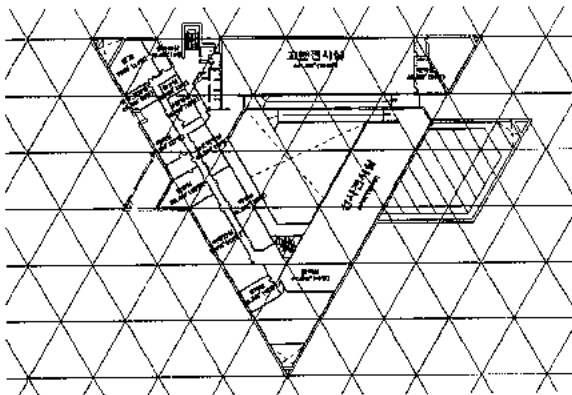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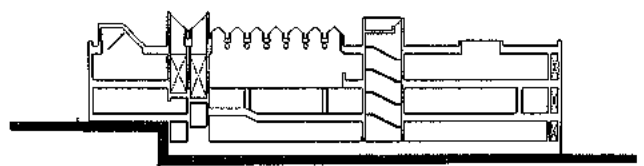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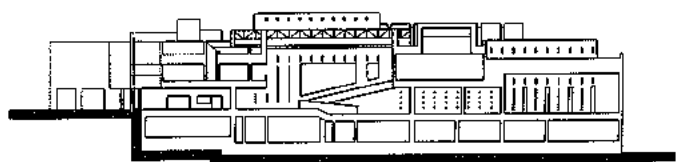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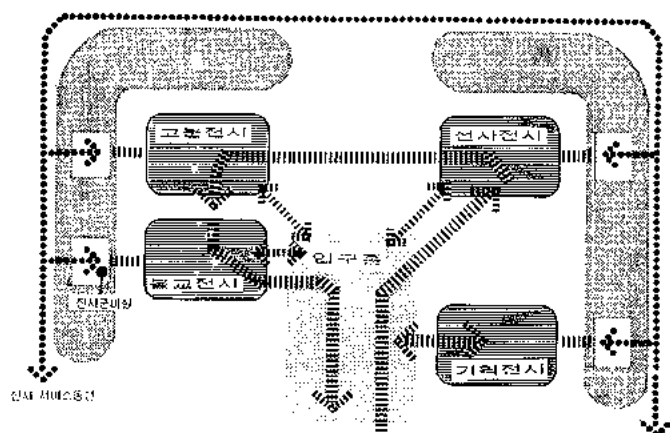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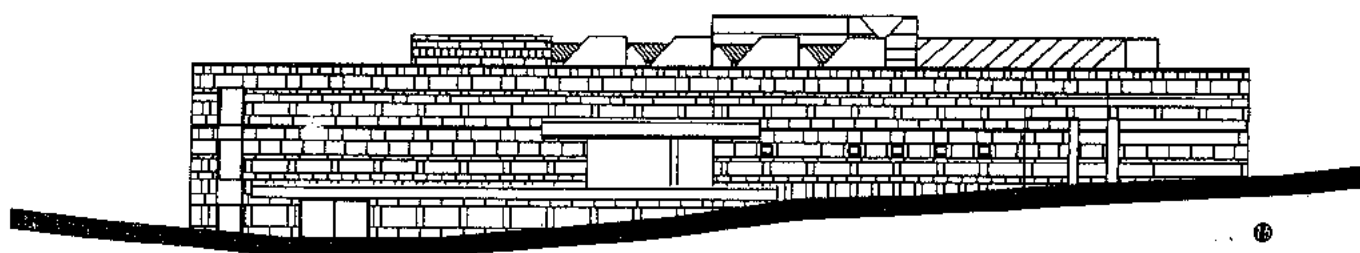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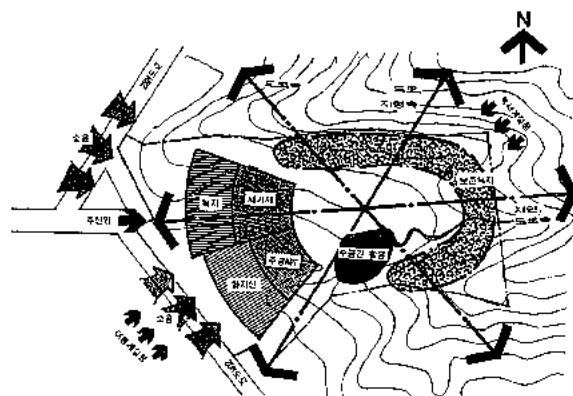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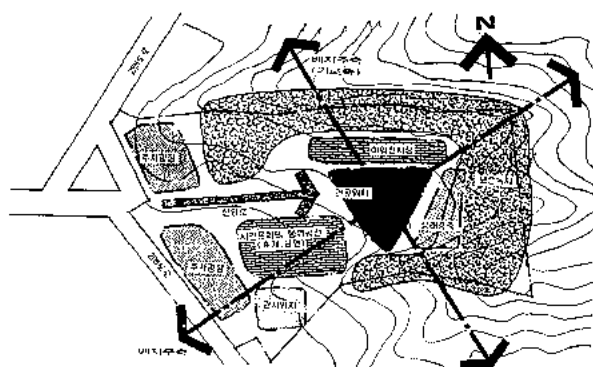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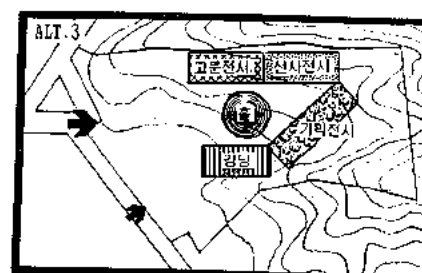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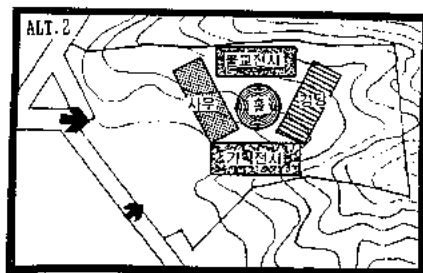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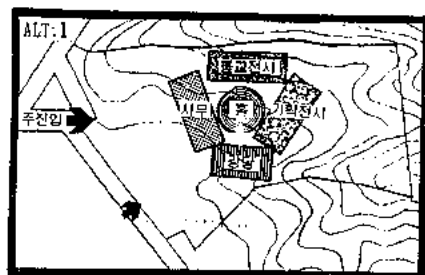
10

- | | |
|----------|----------|
| ① 루시도 | ⑥ 지하층평면도 |
| ② 배치도 | ⑦ 2층평면도 |
| ③ 남서측입면도 | ⑧ 동남측입면도 |
| ④ 북측입면도 | ⑨ 남북단면도 |
| ⑤ 1층평면도 | ⑩ 동서단면도 |



- ⑬ 전시기능분석
 - ⑭ 배치계획 분석
 - ⑮ 단지계획분석

ALT 평가요소	ALT		
	1	2	3
접 근 성	1	2	3
ZONING	2	3	2
동선의 분리도	2	3	2
조 형 설	3	3	2
대지내 교통체계	3	2	3
계	11	13	12



응모작

삼정종합건축(案)

(대표: 金基雄)

설계개요

대지면적/61,000㎡
 연 면 적/8,173.19㎡
 건축면적/7,052.31㎡
 규모/지상2층, 지하1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장재료/적벽돌, 화강석
 주차대수/78대
 시설면적/교육연구관리동-5,
 095.17㎡
 전시동1-1, 147.13㎡
 전시동2-1, 471.00㎡
 기타시설-419.89㎡

토지이용계획

- 절 · 성토 최소화
- 건축가능지역의 적극수용
- 시민휴게 공원지역
- 순환도로 설정(확장고려)

배치계획

- 지세와 중정을 이용한 위요공간 창출
- 시민공간 적극도입
- Level 차를 이용한 공간변화와 다양한 공간연출

평면계획

- 회랑을 이용한 옥·내외 매개공간 설정
- 전이공간을 통한 각 전시동의 연결

입면계획

- 전통재료의 사용으로 지역성 강조
- 탑파건축 + 지붕처마선

단면계획

- Level 차를 이용한 공간의

다양한 경험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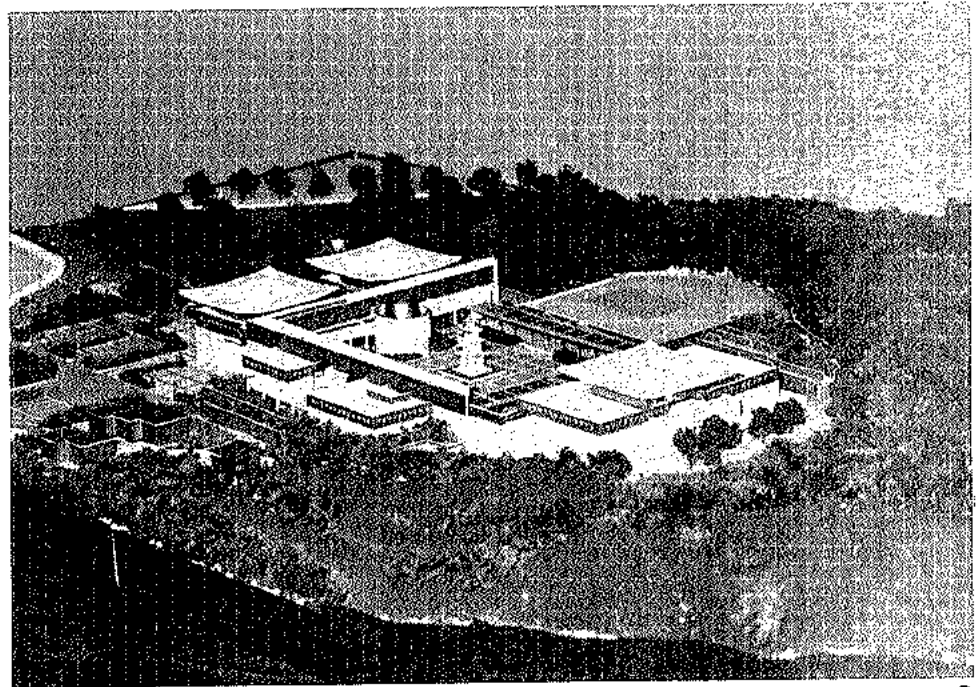
- 중정을 통한 공간의 계층적 분할과 완충영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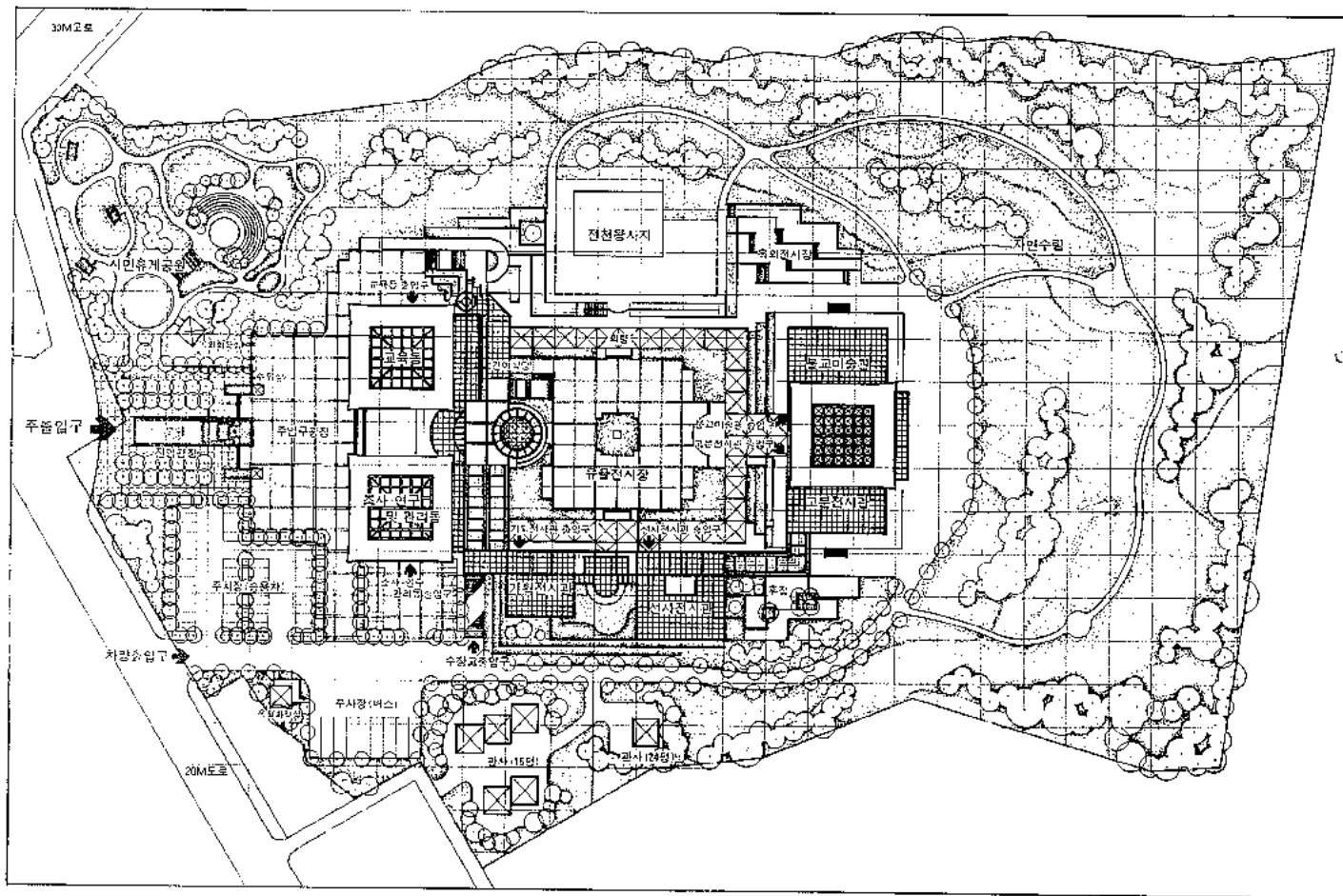
동선계획

- 명확한 보 · 차분리
- 장대 증축을 고려한 순환도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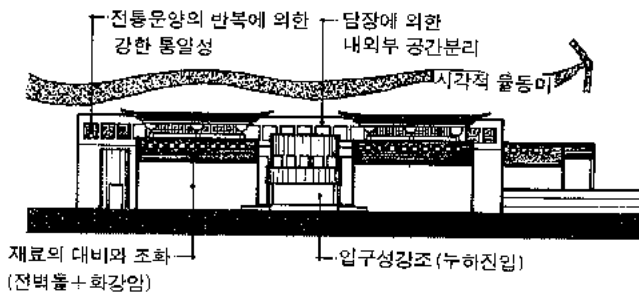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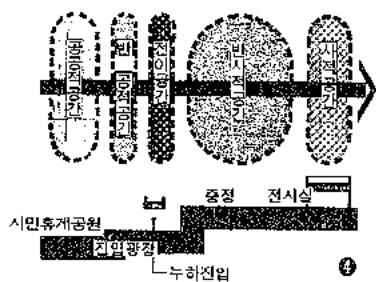
조경계획

- 화계용융한 Level 라 극복
- 전시부분에 수목과 물을 끌어 들여 휴게공간 조성
- 계절감 느낄 수 있는 식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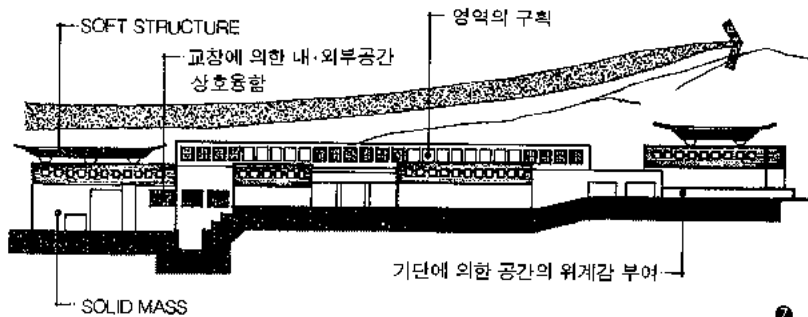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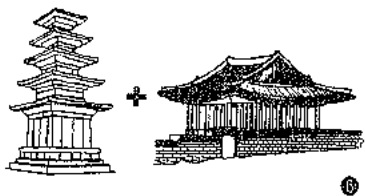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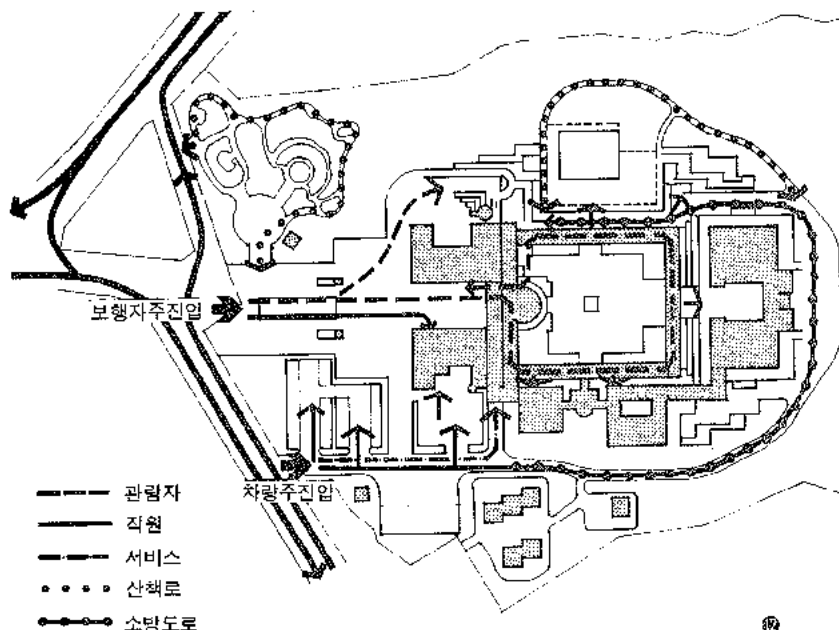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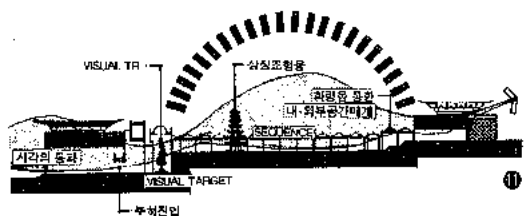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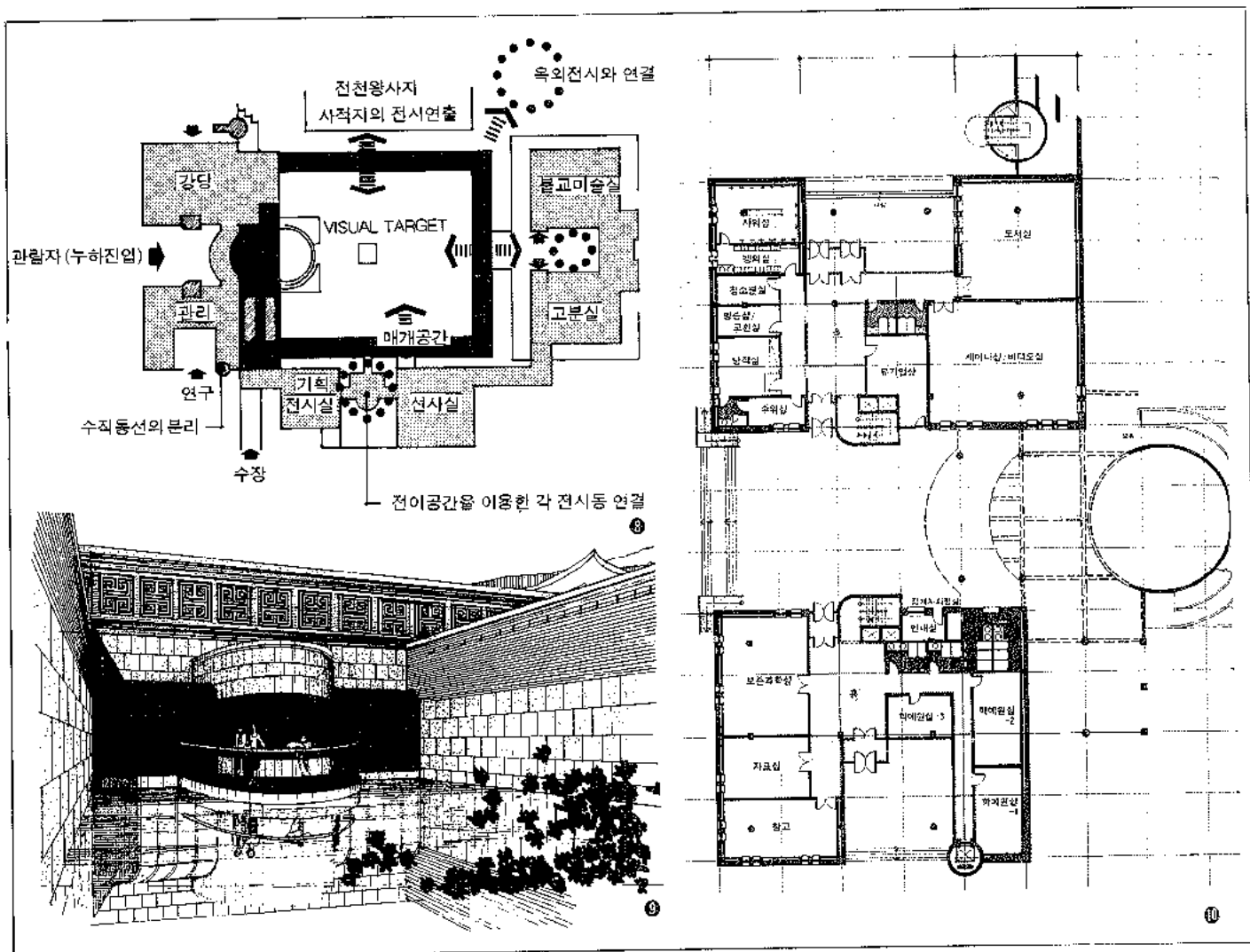


□ 공간의 위계적분리



- ① 부분투시도
- ② 전체투시도
- ③ 배치도
- ④ 계획요소
- ⑤ 입면개념도
- ⑥ 계획요소
- ⑦ 입면개념도

☐ 천밀감 (역사적·지역적은유)



- ① 평면개념도
- ② 부른스케치
- ③ 동선개념도
- ④ 단면개념도
- ⑤ 동선개념도

공해방지용 쓰레기처리 인공 꽃동산 겸 공원묘지 건축구조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산업쓰레기, 폐기물, 생활오물과 각종 공사장 잔토등을 일정한 장소에 끌어모아 그 표면을 흙으로 덮어씌워 공해방지용 인공꽃동산을 축조하여 그 넓은 공간을 수목과 화초를 심어 다시 공원묘지등으로 활용하는 구조체에 관한 연구이다.

더욱 상세히는 해발 약 10미터 이상에서부터 물이 침투되지 않는 고지대로서 쓸모없는 인근 야산부근 잡종지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일정한 장소로 선정, 확보하여 그 주위를 종합운동장 스탠드와 흡사하게 토사로 울타리를 치면서 중앙에서부터 일정한 높이로 서서히 각종 쓰레기와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토를 교차로 적치하여 악취가 풍기지 않으며, 바람에 날리지 않고 치곡차곡 쌓아올려 인공으로 자연스럽게 공해를 방지하면서, 그 표면을 인근야산을 깎아서 나오는 흙을 덮어씌워 수목과 화초를 심어 꽃동산을 조형하여 그 넓은 공간을 다시 공원묘지등으로 이용하며 인근 야산을 깎은 자리를 택지활용하는 것으로서 인간사회에서 공해로 가장 난치한 쓰레기 퇴치에 공헌하는 쓰레기처리 공해방지용 인공꽃동산 겸 공원묘지 건축구조에 관한 연구이다.

李明春

Myungchun Lee

by Lee, Myoung-Choon

본 연구는 종래의 쓰레기 처리방식과 비교하여 살펴 보전대 소각하든지 흙구덩이를 파서 묻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분류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재생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이중공해를 유발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첫째 소각할때는 소각로를 축조하여 일부 쓰레기만 선별 소각하여 이중공해를 유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둘째 흙구덩이를 파서 지하에 쓰레기를 묻을때는 침수가 되어 수질을 오염시켜 다시 이중공해를 유발하며 흙을 파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며, 세째 쓰레기를 분류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재생할때는 또다시 그 공장설비와 생산비 등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며, 재생과정에서 다시 이중공해가 발생하는 등 종래의 세가지 쓰레기 처리방식은 그 막대한 비용과 이중공해를 유발하여, 영원히 지구상에서 공해를 추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시말하자면 인근야산을 깎아 인류사회의 공적이며, 장차 지구가 멸망한다고까지 하는 각종 쓰레기 공해를 추방하기 위하여 한마디로 산을 깎아 다시 인공 꽃동산을 만들어 각종 쓰레기 공해추방과 공원묘지 조성 및 깎은 산 자리에는 택지로 조성하며, 기왕의 수많은 공동묘지를 순차적으로 인공 꽃동산으로 이장하여 그곳을 다시 택지 혹은 위 인공 꽃동산으로 재생하여, 좁은 국토를 넓게 활용할 때, 수천, 수만년 후가되면 위 인공꽃동산속에 쓰레기는 화석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쓰레기처리 공해방지용 인공 꽃동산 겸 공원묘지를 축조함에 있어,

첫째 : 해발 약 10미터 이상에서부터 물이 침투되지 않는 고지대를 택하여 각종 쓰레기적치장(9)를 선정하고, 산업쓰레기, 폐기물, 생활오물(1)등을 통로(4)를 통하여 집하 하며, 적치장(9)중앙에서부터, 가장자리에 확산하면서 각종 공사장에서 잔토(2)를 끌어모아 교차로 인공쓰레기 동산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기존 인근야산(8)을 깎아 운반하여 쓰레기적치장 주위를 토사로 두께 5미터이상 울타리 표토(3)을 구축하면서 경사지 표토면에 약 5,000평방미터당 1개소씩 가스폭발방지

공기탑(5)을 세우며, 수목(6)과 화초(7)등을 심어 인공꽃동산을 구축하는 것이며, (단 공기탑은 실험에 의거 폐지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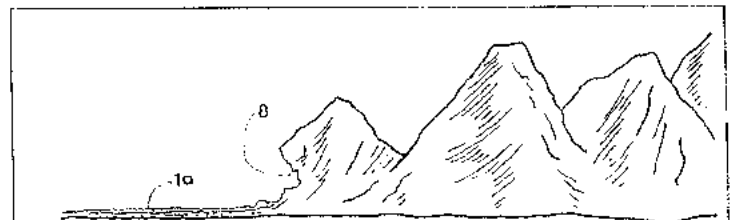
둘째 : 위와같이 인공 꽃동산이 완공되면 거대한 공간에 수목(6)과 화초(7)을 심은 사이에 분묘(11)을 안장하며 문자 그대로 화려한 공원묘지 건축구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세째 : 인근 기존야산(8)을 깎아 쓰레기적치장(9)를 축조함에 있어서 야산(8)을 깎은 자리는 넓은 공간의 택지(10)로 자동 확보되어 좁은 국토 이용율을 더욱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창출하면서, 새로운 주택단지가 개발되어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되며 지구는 다시 살아나고 지구촌의 사람들은 쓰레기 공해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으로 사료되어 지구상의 모든 동, 식물과 곤충류는 공해에서 살아남아 인류와 더불어 끊임없이 공존할때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는 직언을 상기하면서 모든 공해쓰레기는 영원히 땅속에서 수천, 수만년을 경과하는 동안 화석으로 변화할 것이 예상되며 표면은 흙과 더불어 아름다운 꽃동산과 공원묘지로 지속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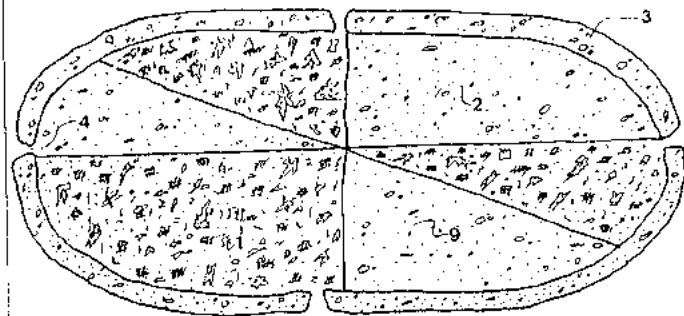
- ① 남지도 쓰레기 처리장
- ② 쓰레기 처리 인공꽃동산 건축구조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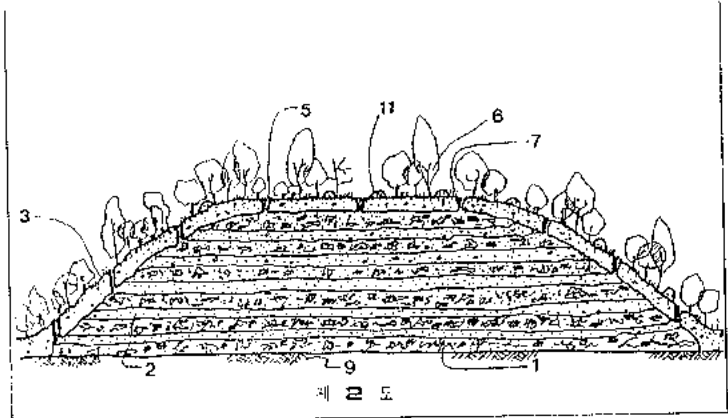
①



제 3 도



제 1 도



제 2 도

②

신입회원



吳永郁
1953. 4. 16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창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0-3
549-0312



金東燦
1956. 4. 14
서울대, 동대학원 건축학과
바로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3-8
591-8223



柳鍾成
1941. 4. 23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슈퍼백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3-2
553-7872



李光仁
1959. 12. 19
서울대 동대학원 건축학과
(주)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45
547-7722



金鍾秀
1951. 5. 5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머뭇돌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38-9
573-9505



吳錫奉
1956. 7. 13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780-5529



申亨基
1956. 1. 29
국립서울산업대학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구성건축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제4지구
구획정리 38브릭1로트



羅泰洙
1954. 7. 21
계명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진건축사사무소
대전직할시 서구 갈마동 380-37
527-1004



李星觀
1948. 12. 12
서울대, 동대학원 건축과
(주)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3-16
563-9421



朴景培
1956. 10. 23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정건축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8-14
549-5395



李漢植
1952. 12. 1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부산공간건축사사무소
부산시 중구 보수동 1가 104
241-6923



金武鉉
1942. 2. 2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우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35
419-0367



南廷憲
1952. 5. 14
중앙대학교 건축과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신원건축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
545-1744



金煥基
1958. 10. 16
서울대, 동대학원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대건사, 내외건축
서울시 중구 정동 1-11
753-2334



崔炳哲
1950. 2. 15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구름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42
741-3556



金鍾化
1945. 11. 10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예칭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0-7
542-2137



金良成
1959. 9. 9
서울대, 동대학원 건축과
(주)예칭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0-7
542-2137



金富謙
1939. 12. 2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신세대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현남동 683-130
793-4458



金煥孜
1960. 1. 7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한국조형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2-31
548-0049



崔允浩
1955. 2. 3
등신실업전문대학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흥진, 동도, 동진, 원
전남 순천시 장천동 51-6
742-3111



金己柱
1960. 3. 15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한미건축
서울시 중로구 경운동 88
739-4603



羅勝敏
1954. 7. 29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4-4
547-2447



崔印聖
1952. 11. 8
홍익대, 동대학원 건축과
(주)김중업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59-11
583-9998



金榮喆
1954. 10. 14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세창건축사사무소
경남 사천군 사천읍 수석3동 251-15
52-8271



鄭榮壽
1955. 9. 15
삼천공업고등학교 건축과
경남건축사사무소
경남 창원시 중앙동 73-11
81-9998



金鍾喆
1957. 11. 26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우신, 편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도봉구 번동 449-5
902-7856



元明鎬
1957. 12. 25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예, 지, 원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4-1
584-9599



李榮夏
1952. 3. 8
천안공고(건축), 명지전문(도목)
(주)아도무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51-51
583-8553



李鍾振
1959. 1. 26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목인건축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0
543-3593



趙尙順
1960. 9. 9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음채
대구직할시 중구 대봉1동 19
46-5336



金斗衡
1928. 7. 21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한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63
718-6557



田大源
1935. 3. 10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우원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783-4145



沈潤周
1959. 2. 20
한양대, 서울대 대학원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음채
대구직할시 중구 대봉1동 19
46-5336



姜仁秀
1951. 6. 13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다나건축사사무소
서울시 농성구 노량진동 311-29
812-5061



金孝晚
1955. 7. 20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예주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78-14
566-2154



宋忠欽
1960. 1. 15
서울경기공업개발대학 건축과
예, 성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2-36
357-6833



吳慶鎭
1956. 8. 1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창우, 정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7-21
556-1071



卞鍾睦
1953. 2. 1
성동공고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아람광장
서울시 종로구 중등동 1-100
744-8221



郭文洙
1960. 8. 31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문건축사사무소
대전직할시 서구 갈매동 378-11
527-2488



李哲揆
1952. 1. 5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미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20
511-5354



韓基勳
1957. 5. 23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유진건축
충남 공주시 중동 128-4
53-0991



李燦植
1956. 12. 31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0-18
554-8541



張雨錫
1950. 5. 22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기우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35
419-8210



金載鴻
1921. 10. 13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공학과
일신건축사사무소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78-5
753-8350



劉璟勳
1952. 2. 19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서진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6-8
548-7457



丁蘇夏
1945. 1. 29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송로구 원남동 194
762-1344



金文喜
1947. 8. 19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성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0-1
544-6684



朴客圭
1955. 9. 22
성균관대, 동대학원 건축과
(주)서진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6-8
548-7457



宋春植
1959. 9. 5
연세대, 서울대 대학원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영조우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7-22
557-7509



崔益玆
1955. 7. 4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서림건축사사무소
서울 영등포, 여의도, 중앙보훈, 701
780-1489



金鎭洙
1950. 4. 1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780-0071



尹宰鉉
1945. 5. 15
고려대, 동대학원 건축과
서우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28-7
562-6055



李廷穆
1957. 9. 27
경북산업대학 건축공학과
신진건축사사무소
대구시 남구 대명동 1591-10
629-1635



崔 麗
1954. 1. 30
전북대, 한양대 대학원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간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82-20
568-8575



崔鍾準
1952. 12. 31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우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28-7
567-6914



李基陽
1947. 8. 19
대전공업고등학교
정은섭 이기양건축사사무소
대전시 중구 대우동 480
257-1665

1989년 12월분 도서신고 현황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88년도	1989년도	증 · 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952,272	1,690,698	738,426	77.54%
	부산지부	311,117	994,498	683,381	219.65%
	대구지부	212,666	577,029	364,363	171.33%
	광주지부	—	295,186	295,186	ERR
	대전지부	0	239,676	239,676	ERR
	경기지부	835,291	1,284,946	449,655	53.83%
	충북지부	186,360	359,219	172,859	92.76%
	충남지부	352,922	537,157	184,235	52.20%
	전남지부	236,949	631,731	394,782	166.61%
	경남지부	677,399	1,123,962	446,563	65.92%
감소지역	제주지부	199,247	211,960	12,713	6.38%
	인천지부	444,400	405,975	(38,425)	-8.65%
	강원지부	216,246	178,608	(37,638)	-17.41%
	전북지부	238,759	230,892	(7,867)	-3.29%
	경북지부	424,607	355,304	(69,303)	-16.32%
합	계	5,288,235	9,116,841	3,828,606	72.40%

<1988년 12월 부산지부 설계도서통계는 지부사정상 집계가 안되었음>
 <충남지부와 대전지부의 증·감소 현상은 2월 지부가 분리가 됨으로 생김>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2월분 5백28만8천2백35㎡보다 72.4%증가(3백82만8천6백6㎡)한 9백11만6천8백41㎡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1~12월분 합계한 전년도누계 6천8백64만9천5백3㎡보다 41.94%증가(2천8백78만9천7백81㎡)한 9천7백43만9천3백64㎡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지난 11월분 7백4만7천5백36㎡보다 29.36%증가(2백6만9천3백5㎡)한 9백11만6천8백41㎡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増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종 별	'89년 11월분	'89년 12월분	증 · 감	비율(%)
단 독 주 택	316,501	521,347	204,846	64.72%
다 세 대 주 택	198,720	264,443	65,723	33.07%
연 립 주 택	108,693	74,420	(34,273)	-31.53%
아 파 트	2,296,116	2,879,300	583,184	25.40%
근린생활시설	1,094,163	1,697,284	603,121	55.12%
종 교 시 설	51,406	63,063	11,657	22.68%
의 료 시 설	7,317	78,247	70,930	969.39%
교육연구시설	191,095	201,343	10,248	5.36%
업 무 시 설	765,689	980,314	214,625	28.03%
숙 박 시 설	178,246	506,343	328,097	184.07%
공 장	1,076,707	1,200,986	124,279	11.54%
기 타	762,883	649,751	(113,132)	-14.83%
계	7,047,536	9,116,841	2,069,305	29.36%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2月分)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지부	2,329	2,379	1,621,971	68	72	68,727	0	0	0	2,397	2,451	1,690,698
부산지부	737	1,067	947,085	140	164	30,194	36	44	17,219	913	1275	994,498
대구지부	301	381	544,174	358	373	20,835	46	46	12,020	705	800	577,029
인천지부	367	454	371,152	25	27	26,224	17	18	8,599	409	499	405,975
광주지부	195	235	272,392	71	88	18,652	14	14	4,142	280	337	295,186
대전지부	200	200	193,957	29	29	23,935	83	83	21,784	312	312	239,676
경기지부	1,376	1,543	1,129,466	170	191	104,925	78	78	50,555	1,624	1,812	1,284,946
강원지부	311	373	156,367	66	81	17,594	20	20	4,647	397	474	178,608
충북지부	302	417	310,344	55	69	41,878	30	30	6,997	387	516	359,219
충남지부	189	228	503,354	59	59	11,646	28	28	22,157	276	315	537,157
전북지부	192	255	207,585	48	56	17,737	20	20	5,570	260	331	230,892
전남지부	321	442	539,984	125	171	83,844	26	26	7,903	472	639	631,731
경북지부	351	421	233,051	89	121	100,973	41	41	21,280	481	583	355,304
경남지부	832	1,033	970,204	242	338	136,264	51	52	17,494	1,125	1,423	1,123,962
제주지부	272	300	196,710	81	81	15,250	0	0	0	353	381	211,960
합 계	8,275	9,728	8,197,796	1,626	1,920	718,678	490	500	200,367	10,391	12,148	9,116,841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89年 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지부	29,317	30,159	17,789,190	1,512	1,550	598,802	0	0	0	30,829	31,709	18,396,992
부산지부	12,768	14,373	7,088,017	2,905	3,031	601,907	709	745	301,329	16,382	18,149	7,991,253
대구지부	6,782	7,285	3,588,741	5,416	5,633	497,135	480	481	152,296	12,678	13,399	4,238,172
인천지부	6,848	7,985	5,998,562	589	720	298,541	215	252	175,177	7,652	8,957	6,472,280
광주지부	4,073	4,504	2,752,623	1,084	1,155	219,547	162	162	56,296	5,319	5,821	3,028,466
대전지부	4,164	4,164	2,618,418	534	534	209,599	1,155	1,155	274,441	5,853	5,853	3,102,458
경기지부	26,353	28,687	14,387,859	2,874	3,214	1,844,818	780	780	496,885	30,007	32,681	16,729,562
강원지부	4,902	5,830	2,906,454	1,234	1,457	515,415	166	170	41,641	6,302	7,457	3,462,510
충북지부	6,312	7,521	3,595,937	1,290	1,630	523,225	418	525	103,510	8,020	9,676	4,222,672
충남지부	4,748	5,130	2,946,676	1,254	1,301	414,697	370	370	107,613	6,372	6,801	3,468,986
전북지부	3,700	4,483	3,475,482	1,020	1,113	333,280	255	256	66,880	4,975	5,852	3,875,642
전남지부	5,056	5,789	3,048,946	1,836	2,168	813,480	116	117	40,798	7,008	8,074	3,903,224
경북지부	7,294	8,579	4,784,469	2,291	2,596	1,490,827	291	291	134,379	9,876	11,466	6,409,675
경남지부	13,224	15,687	9,285,097	4,821	5,513	1,470,105	450	462	189,185	18,495	21,662	10,944,387
제주지부	2,335	2,610	1,089,403	552	565	103,682	0	0	0	2,887	3,175	1,193,085
합 계	137,876	152,786	85,364,874	29,212	32,180	9,934,060	5,567	5,766	2,140,430	172,655	190,732	97,439,364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2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2,712	2,809	496,134	472	484	22,730	41	41	2,483	3,225	3,334	521,347
다 세 대 주 택	1,020	1,089	260,012	90	98	3,828	7	7	603	1,117	1,194	264,443
연 립 주 택	50	70	70,852	3	4	3,568	0	0	0	53	74	74,420
아 파 트	196	852	2,831,476	9	11	47,824	0	0	0	205	863	2,879,300
근린생활시설	2,755	2,820	1,537,365	379	400	77,374	227	227	82,545	3,361	3,447	1,697,284
종 교 시 설	86	107	48,880	35	46	13,174	5	5	1,009	126	158	63,063
의 료 시 설	6	8	69,702	7	7	5,805	2	2	2,740	15	17	78,247
교육연구시설	44	65	139,064	35	36	53,269	35	35	9,010	114	136	201,343
업 무 시 설	216	221	919,676	46	48	46,923	10	10	13,715	272	279	980,314
숙 박 시 설	115	115	476,590	36	38	24,112	15	15	5,641	166	168	506,343
공 장	482	801	843,736	233	406	313,536	53	56	43,714	768	1,263	1,200,986
기 타	593	771	504,309	281	342	106,535	95	102	38,907	969	1,215	649,751
합 계	8,275	9,728	8,197,796	1,626	1,920	718,678	490	500	200,367	10,391	12,148	9,116,841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89年 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63,921	65,451	10,644,958	11,891	12,183	750,169	915	929	45,559	76,727	78,563	11,440,686
다 세 대 주 택	17,109	17,778	4,045,605	2,426	2,460	125,893	146	146	102,708	19,681	20,384	4,274,196
연 립 주 택	949	1,457	1,771,285	32	40	31,756	17	17	2,458	998	1,514	1,805,499
아 파 트	2,199	8,056	28,754,374	149	252	393,752	46	79	77,871	2,394	8,387	29,225,997
근린생활시설	36,167	36,854	16,619,793	6,143	6,322	1,190,156	2,402	2,434	704,112	44,712	45,610	18,514,061
종 교 시 설	1,008	1,184	608,139	534	588	192,303	58	63	11,931	1,600	1,835	812,373
의 료 시 설	81	90	161,422	119	125	84,145	24	24	18,142	224	239	263,709
교육연구시설	476	616	1,336,769	582	642	811,572	234	237	108,805	1,292	1,495	2,257,146
업 무 시 설	1,866	1,967	7,981,419	654	690	451,676	129	132	91,295	2,649	2,789	8,524,390
숙 박 시 설	1,496	1,654	2,559,022	442	467	250,523	130	137	134,519	2,068	2,258	2,944,064
공 장	4,747	7,770	6,545,807	2,581	4,011	4,030,572	529	566	357,070	7,857	12,347	10,933,449
기 타	7,857	9,909	4,336,281	3,659	4,400	1,621,553	937	1,002	485,960	12,453	15,311	6,443,794
합 계	137,876	152,786	85,364,874	29,212	32,180	9,934,060	5,567	5,766	2,140,430	172,655	190,732	97,439,364

건축법시행령 22차 개정 주요 내용 해설

건축법시행령을 개정본이 지난 1월 14일자로 공포됨으로써 '62년 제정 이래 22차의 개정이 되는 셈이다. 시행일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인 '90. 2. 17일로부터이다.

3 I. 序 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90. 1. 18일자로 공포됨으로써 '62년 제정 이래 22차의 개정이 되는 셈이며, 시행일은 일부조항을 제외하고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인 '90. 2. 17일자 부터이다.

초안 작성 이래 공포까지 햇수로 3년에 걸치게 되었으며, 하나의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항의 시급한 시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3차례로 나누어 개정·공포한 사실은 공청회 개최와 아울러 시행령 개정 추진과정에 있어 또하나 진기록을 남기게 된 셈이다.

동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하여 개정의 배경·작업경위·개정안의 기본정신을 살펴보고 주요문자를 설명하고자 한다.

II. 개정의 배경과 작업경위

1. 개정의 배경

개정의 배경으로서 건축외적인 것은 정부가 주택 2백만호 건설에 따른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준제도의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 대두, 사회전반의 민주화에 따른 건축행정에서의 민주성과 합리성의 제고 요구의 최대한 수용이며, 건축내적인 것은 신도시건설계획에 따른 선진형 계획기법의 도입기회 발생, 경제발전·사회변화에 따른 여건변동의 수용과 마비점 보완의 불가피로 제시할 수 있으나, 이중에서도 특히 주택 2백만호 지원의 필요성이 컸고 신도시건설에

따른 신계획기법의 도입기회 발생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요인이 이번 시행령개정안의 성격에서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

2. 추진경위

개정의 초안작성은 실제로 '88. 10월로서 당초 10여개 조항에 불과하였으나 그후 '88. 3월 45개 조항의 초안을 재작성하게 되었으며, 최종 개정령이 공포된 시점은 '90. 1월로서 통산 15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주요한 작업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추진상 공청회개최, 기초연구의 광범위한 실시등을 통하여 내용의 합리성과 절차의 민주성을 최대한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87-88년관련조사 및 연구 실시

- 아파트 주거문화 발전 종합대책 수립(건설부)

- 공동주택단지 인동간 거래규제

개선연구(주공)

- 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 규제에 관한 연구(건축학회)

- 용도지역·지구제와 건축물 개발규제 개선연구(KRIHS)

- 한국의 건축제도 개선(청년협 공청회)

○'89.

- 3. 시행령 개정안 초안작성

- 4. 공동주택관련기준 조정효과 측정을 위한 Model Study

- 5. 案입법 예고

- 6. 전문가 공개토론회 개최(건축사협회 법령연구소 주최)

- 7-9. 관계부처협의

李振遠
건설부 건축과장

10. 당정협의
 11 ~ 12. 경제장관회의, 법제처심의,
 국무회의심의
 ○'90. 1. 18 공포(제22차)
 *89. 8. 18 제20차 개정안 공포(위생도기
 1개 규정)
 *89. 11. 20 제21차 개정안
 공포(신도시관련 6개 규정)

III. 개정의 기본정신

- 건축행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의 제고
 - 도시설계구역내 인센티브 부여 확대,
 지하층 규정의 개선
 ○지방화에 대응한 법령체계의 정비
 - 조례제정범위 확대, 건축위원회 보강,
 기관등의 위임범위 확대.
 ○전문가(건축사)의 창의성과 자율성 최대
 존중
 - 특별주택사업구역 제도 도입
 ○도시계획과 건축규제와의 상호연계 증대
 - 지역내 용적률, 대지면적 세분화 근거
 설치
 ○규제방식의 선진화 도모
 - 지방규제에서 성능규제(예일영 규제로
 전환)
 ○법질서 및 공권력 확립에 기여
 - 위법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경제·사회 기술발전의 적극적인 수용
 - 아파트 고층, 고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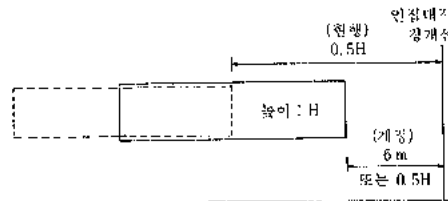
IV. 개정 주요골자

1. 특별주택사업구역내 계획적
개발제도(PUD)의 도입
2. 공동주택건축 기준 조정(고층고밀화
유도등, 일조권 규정 완화, 중복도 APT
허용)
3. 주택관계 별도법령기준 근거 설치
4. 장관시장, 군수 권한 위임, 건축위원회
보강
5.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세분화
6. 도시설계 규정의 대폭 보완.
7. 위법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8. 공작물규정 보완
9. KS 자재 사용규정 완화
10. 용도분류 재조정 및 용도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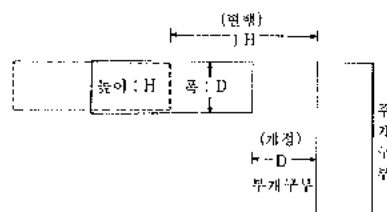
- 완화(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발전시설)
 11. 지상주차장설치 촉진규정
 12. 공공용 편의시설의 설치의무화
 확대(장애자용 편의시설, 공중화장실)
 13. 설비기준령 제정근거 설치
 14. 대지안의 공지규정 보완
 15. 지하층규정 보완
 16. 배연설비규정 보완
 17. 복합주거건축물에 관한사항 보완
 18. 경사지 활용촉진을 위한 별도규정 설치
 근거마련
 19. 건축신후퇴로 기준미달 대지에 혜택
 부여
 20. 조정기준 조정

1. 주택 2백만호 건설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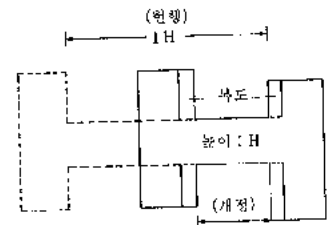
1. 공동주택의 실행용적률 제고를 위한
건축기준 조정
 가. 공동주택의 축벽등 지리제한 완화
 ○축벽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지역에 따라서는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어 건축하도록 운영하였으나,
 이를 건축물 높이의 0.5배 또는 6m중 작은
 것으로 정하였음. (제92조 제2항 "표")



- 공동주택의 축벽이 다른 공동주택의
 부개구부(부엌·화장실·복도가 있는
 후면)방향과 면하는 경우
 축벽폭(10~15m)만큼 띄어 건축하도록
 하였음. (제90조 제3호 나목(1))
 *동규정은 서울특별시 및
 부산·대구직할시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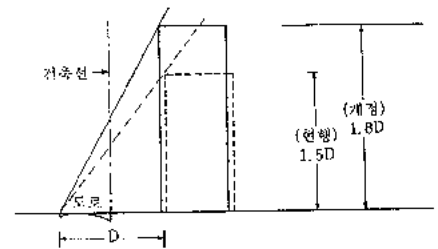


- H형등 동일건축물내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마주보는 경우에는 그
 부분사이의 거리는 채광 및 환기상 지장이
 없도록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띄어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중전은 건축물 높이 만큼
 이격)(제90조 제3호 다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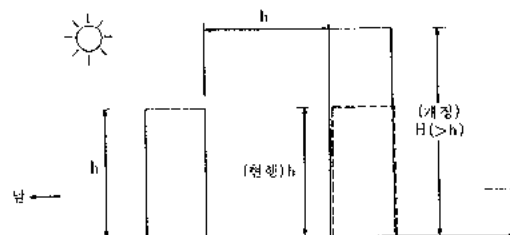
2. 공동주택의 고층화 촉진

- 가. 고층화시 높이 제한, 대지경계선예의
 띄우는 거리등의 완화
 (1)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제89조 제3항)
 ○도로폭의 1.5배에서 16층 이상은
 1.8배로



- (2)남북방향에서 높이가 다른 경우
 인동간거리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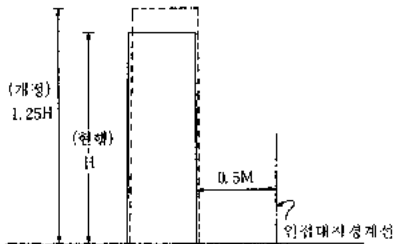
- 2동중 높은쪽의 높이만큼 이격에서
 정남방향의 높이만큼 이격으로(제90조 제3호
 나목(6))



*대지가 하천·도로·공원등에 면하는 경우에 완화효과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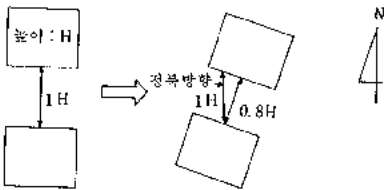
(3)대지경계선까지 이격거리(탐상형에 한함)

○높이의 0.5배 이격에서 16층이상은 개구부간 거리 0.4배로(제90조 제3호 가목)



(4)동일대지내 인동간 거리 완화

○높이의 1배이격에서 16층이상은 정북방향 1배, 개구부간 절대거리 0.8배로(탐상형에 한함: 단변과 장변의 비율 1/4이상인 경우) (제90조 제3호 나목(2))



나. 공동주택 내부의 높이터등 용적률 산입에서 제외(20층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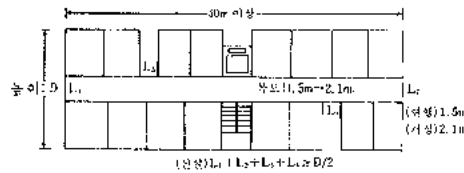
○중간층에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설치시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제101조 제1항 제3호 바목)

3. 기타

가. 중복지식 아파트 건설촉진(제37조 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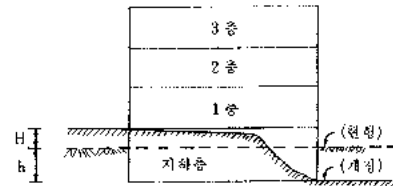
○중복지식 아파트의 복도 피난기준등 설정

- 복도폭 2.1m 이상
- 복도의 길이가 40m를 넘는 경우 매 40m마다 측벽폭의 1/2이상인 외기에 면함(채광, 통풍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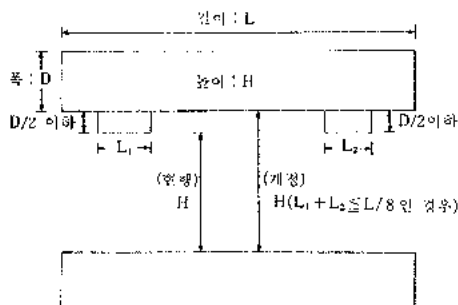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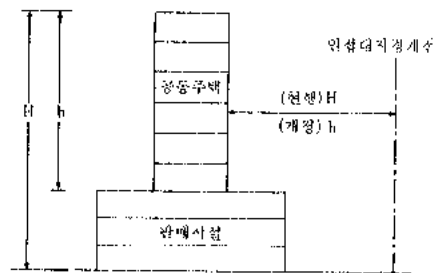
나. 공동주택등의 지하층 활용 촉진

○지하층은 층고의 2/3이상의 모든 부분이 지표하에 있어야 함을 가중평균한 높이가 2/3로 함(제101조 제1항 제9호)



다.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등을 복합용도건축 촉진

○일조권규정 적용시 건축물높이 산정방법 완화: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의 높이를 공동주택 부분높이로(101조 제1항 제5호 나목)



라. 동일대지내 인동간 거리 산정방법 개선(제90조 제3호 나목 본문)

○외벽에 승강기, 슈트, 계단등 포함→돌출폭이 측벽폭의 1/2이하로써 길이의 합이 외벽 길이의 1/8인 경우 외벽에서 제외(5층이하 공동주택 제외)

바. 일영도에 의한 인동거리 규제완화 동시시 일정 일조시간(9시부터 15시 사이에 2시간 연속일조가 모든 세대의 아파트에 확보되는 경우에는 현행 인동거리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90조)(건축위원회 심의 필요)

사. 경사지의 택지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사지에서 건축물의 높이, 대지면적,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방법을 평지와 달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 제4항)

2. 신도시내 주택단지의 계획적 개발

1. 적용대상(제99조의 2)

- 신도시 및 신시가지 개발사업 지역으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내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건축계획이 도시경관의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경우 (대지면적 및 세대의 규모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
-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 완화

2. 건축기준의 완화

- 조경면적
-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일조권 적용을 위한 높이제한
- 대지안의 공지
-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지자체 대비 시·도조례 제정범위 확대 및 체제 정비

1. 조례 제정사항 확대

가.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제89조 제1항, 2항)

○도로폭의 1.5배→1.8배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나. 건폐율 강화(제84조 제1항)

○강화시 건설부장관 승인→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다. 도시설계 구역내 인센티브 부여(조례로 규정) (제13조의 2)

○보도, 녹지 등 공공공지로 제공시 기준 조정면적의 20% 범위내 추가허용

○건축선 후퇴 지정시 기준 건폐율의 20% 범위내 추가허용

○용도제한시 기준 용적률의 20% 범위내 추가허용

2. 건축위원회 기능 보강

가. 위원회 구성(제97조 제2항)

○위원수 : 15인까지→25인까지

○분과위원회 구성 : 도시설계, 색채, 조형예술 분야

○전문위원 설치 근거 마련

나. 건축위원회 설치 시·군의 확대(제97조 제1항)

○지방건축위원회 설치시 건설부장관 승인 → 시장·군수의 임의설치

4. 도시설계제도의 보완

1. 대상면적의 상향조정(제13조 제1항)

○대상면적 5만㎡이상단위(건설부장관이 도시기능 및 지역 여건등을 감안하여 인정할 경우 5만㎡미만 허용)

2. 도시설계 재정비 의무화(제13조 4항)

○도시설계공고후 10년마다 당해 도시설계의 재정비 이행(시장·군수가 재정비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외)

3. 도시설계구역안의 건축기준 완화(제13조의 2)

○도시설계에 의해 대지일부를 보도·녹지·공공공지로 제공할 경우 당해 면적의 2/3범위 내에서 조정면적에 산업토록 조례로 정함

○대지일부에 건축선 후퇴 및 층수가 제한될 경우 건폐율은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의 1.2배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용도제한 및 대지일부를 보도·녹지·공공공지로 제공할 경우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1.2배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이번 건축법시행령의 개정 이유는 국민편익의 제고를 위하여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종교시설, 대학입시계 학원의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라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5. 기타

1. 지체부자유자용 편의시설 확대

가. 장애자용승강기 설치대상 확대(제53조 제2항)

○공공업무시설, 의료시설, 관광호텔 등(7종)에 도서관, 은행등(6종)추가

*참고 : 장애자용 승강기 구조

- 모든 스위치는 1.2m이내에 위치

- 승강기 규격 : 1.5m×1.4m 이상(출입문 0.85m 이상)

나. 장애자 유도표식판 설치(제61조의 2 제2항)

○의료시설, 공공의무시설 등(13종)에 지체부자유자용 승강기, 버스 설치시 유도표식판 설치

2. 대지안의 공지규정 완화(종교시설)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떨어져 하는 거리는 2m 이상 또는 개구부가 없는 곳은 1.5m 이상 (제92조 제2항 “표”)

3. 도심주차장 완화를 위한 주차 전용건축물등 촉진

○아파트등의 피로티에 주차장 이용시에도 바닥면적 산업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101조)

○기계식 주차장으로 높이 6미터 미만은 공작물로 분류하여 건폐율·용적률 산업에서 제외토록 하였음(100조)

○건축물의 지상층 일부에 주차장 설치 경우, 용적률 산업에서 제외토록 하였음(101조)

4. 공작물의 범위확대와 용도지역제한 적용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흥시설등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공작물로 포함시켰으며, 용도지역제한을 적용하도록 함(100조)

5. 용도지역내 건축제한 규정의 보완·정비

○보전녹지지역내에 농업어업에 필요한 일부 건축물을 허용함(별표10)

○식물관련시설, 발전관련시설등 신종 용도를 설치함(부표 24, 25)

○판매시설의 면적하한을 현행5백㎡에서 1천㎡로 상향조정함

6. 위반건축물 단속의 효율성 제고

○시장군수는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음(제93조)

7. 신고사항의 읍·면장 위임(제4조 제3항)

○군수 → 읍·면장
— 50㎡이내의 증·개축등

8. 주요 주택자재 공급 차질방지를 위한 K.S 품목 사용 의무화규정 보완

○K.S 품목 사용의무화 대상 97종(제25조
및 “별표 13”) → 유수급차질로 물량확보가
곤란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시 의무화
품목에서 제외(예: 위생도기)

V. 추후보완사항

종래의 시행령 개정보완보다 훨씬
장기간의 기간을 거쳤으며 손질된 조항도
45개 조항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처
반영되지 못한 점이 다수 있어 아쉬운 점이
많다. 예를 들면,
운영규정의 보완미흡(과태료, 관리대장),
집단규정의 위임폭 대폭확대, 일조권 규정의
지역차등화와 일정거래제, 도로기준폭
비달에 의한 건축선 후퇴시 지목변경
의무화, 확정판결에 의한 대지 임의분할
금지, 지하층 설치대상의 축소와 설치면적의
하향조정, 건축허가 예고제,
Variance 제도의 도입운영, 대도시
토지이용의 고도화 적극 촉진, 조문의

체계정비와 문장 평이화 등이다.

그러나 적지않은 개정사항의 효과가
최대한 발휘되기 위하여는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은 물론
운용상의 기술의식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하여
법령해설서의 발간과 관계자의
법령교육실시를 준비중에 있음을 밝혀둔다.

추후 보완되어야 할 주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므로 후일에 개정작업에 적극 참고키
바라마지 않으나, 참고로 반영되지 못한
사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철회
둘째, 장·단점에 대한 자료연구 미흡으로
차기검토

셋째, 법상 근거미비로 법개정후 추진

넷째, 허가청, 건축사, 건축주등의 사회적
수용여건의 비숙으로 연기

VI. 결언

이번 개정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상황에서
추구되어야 할 건축행정의 2대목표는
행정운용의 민주성과 합리성의 확보,
전문가(건축사)의 자율성과 창의성 최대
준중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본다.

특히 근거법인 건축법의 개정과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한 근원적 해결없이
시행상의 문제만을 다룬 시행령
개정작업만으로는 한계가 많이 있었음을

앞에서 추후보완사항에서도 밝힌바 있다.

이번 개정과정을 통하여 유념한
사항으로서 건축사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건축법령이 종전과 같이 「남이
만들어주는 그들의 것」이 아니고 「나도
만들고 고치는데 참여하는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함으로써 건축법령에 대한 불신과
단절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추진과정에 있어
건축사협회주관의 공청회 개최, 건축사협회
관계자와 빈번한 토론, 그리고
시·도관계자와의 의견교환등을 통하여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계기로 최근에는 건축사협회측의
법제 개선노력이 필자가 보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번 개정의 비가시적 성과의 하나라도
생각하고 싶다.

앞으로 건축법령 개정의 적극적인 목표는
건축행정의 목표달성의 수단마련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법철학적으로 볼때 종래와
같이 법이 정치가의 지배수단, 관료등의
직업적 기술에서 탈피하여 전문가의 자율적
규범으로, 민중의 생활규율이라는 본연의
모습을 찾게됨으로서 기본철학이 뚜렷한
건축법으로 승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동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건설부, 법제처, 시·도와
건축학회, 건축사협회등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령

제12906호

건축법시행령중 개정령

1990년 1월 18일

개정이유

국민편익의 제고를 위하여 군수의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종교시설 및 대학입시계 학원의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위법건축물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과 농·어업용 소규모 주택·축사·창고의 건물·대수선을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읍·면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43조제3항)
나. 지체부자유자의 건축물사용에 편의를 도

모하기 위하여 장애자용 승강기의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종류를 의료시설·공공업무시설·관광호텔등 7종에 도서관·신문사·방송국등 6종을 추가하여 13종으로 하고, 장애자용 승강기·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한 유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제53조제2항 및 제61조의 2제2항)

다. 도로를 보행하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폭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업무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상1층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함(제55조제5항)

라.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종교시설을 건

축할 때에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 3미터 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교시설중 개구부가 있는 부분은 2미터이상, 개구부가 없는 부분은 1미터이상만 띄우도록 함(제92조제2항)

마.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단속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는 매년 위법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93조)

바. 대학입시계 학원생의 수강기회 확대를 위하여 종전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학입시계 사설학원의 규모를 2천5백제곱미터이하로 한정하였으나, 폭 3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대학입시계 사설학원의 규모제한을 폐지함(별표2 제4항) <법제처 제공>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지형적으로 가시권내에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2제2항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과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동조제1호의 경우 3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승인권을 제외한다)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시사(이하 “도시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5호나목·법 제5조·법 제6조제3항 및 제8항·법 제7조·법 제7조의2·법 제7조의3·법 제9조의2제3항·법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법 제43조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구정비지구·아파트지구안의 건축물,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안의 건축물(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의

제한을 완화하는 건축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③ 군수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3년마다 30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3년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용인 때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구역의 면적은 5만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설부장관이 도시기능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제4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자동차 및 보행자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5. 건축물의 위치·규모·용도 및 형태에 관한 규제계획

6.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7.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조정계획

8. 기존건축물의 처리와 대지의 정리에 관한 계획

9. 제3호 내지 제8호의 계획에 대한 세부시행 계획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는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공고한 때에는 10년마다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도시설계구역안의 건축기준완화) 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와 정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공지로 제공된 면적의 3분의2를 조정면적에 산입한다.

2.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에 건축선이 후퇴하거나, 층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의 1.2배로 한다.

3. 도시설계에 의하여 용도가 제한되거나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율을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율의 1.2배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의 조례(이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 다만, 시장·군수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정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이하, 기타 시·군의 경우에는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제15조제3항 각호를 제외한 부분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정면적과 은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정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정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정면적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정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외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대지의 조정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16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호중 “구조기술사”를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다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중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중축 또는 1개층의 중축에 한한다). 일부 개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건축가능구역

기타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이상인 것.

제2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제2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제2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제35조의2중 “외부에 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 개구부”를 “거실”로 한다.

제37조제1항 표의 구분란중 “환자용 복도·공동주택의 공용복도”를 “환자용복도”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동주택의 공용복도의 유효폭은 갖복도식의 경우에는 1.2미터이상, 중복도식이 경우에는 1.8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중복도식에 있어서는 복도의 길이가 40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40미터마다 측벽폭의 2분의 1 이상이 외기에 면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또는 16층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제49조 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광고시설을 제외한다)에 급수·배수·환기·난방·냉방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설비기술사 또는 냉난방 및 냉동기계기술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2항중 “4공연장 또는 관람장”을

“공연장·관람장·도서관·직업훈련소·전시장·신문사·방송국 또는 금융업소”로 한다.

제55조에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업무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 1층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변소를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6조의 2 제 1 항중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61조의 2 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판매시설(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관광호텔·공연장·관람장·도서관·직업훈련소·전시장·신문사·방송국 또는 금융업소에 시체부자유자용 승강기·변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의 안내를 위한 유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2조 표의 도로의 폭란중 “읍”을 “읍·면”으로 한다.

제63조제 1 항 단서중 “읍”을 “읍·면”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판매시설의 경우에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폭6미터이상의 도로에 2곳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길이가 12미터이상인 때에는 다음 표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 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과 도로 폐지허가신청서의 서식은 각각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 1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제 1 항중 “구역”을 정하고”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5조제 2 항 및 제 3 항을 제 3 항 및 제 4 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당해 구역안에서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다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86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당해 구역안의 용적율을 다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87조제 3 항중 “하천”을 “하천·공공공지·시설녹지”로 한다.

제88조제 1 항 각호외의 부분중 “수평거리를 차감한 것과 같은 거리로 본다”를 “수평거리를 차감한 것과 같은 거리로 볼 수 있다”로 한다.

제89조제 1 항중 “도로(막다른 도로 및 4미터 이하인 통과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에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각각 6미터이상을 후퇴하여”를 “도로에 접한 대지에 모든 건축선(막다른 도로 및 폭 4미터이하인 통과도로에 면한 건축선을 제외한다)으로부터 각각 6미터이상을 후퇴하여”로 한다.

제90조제 1 호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이나 미관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가 당해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대지안의 공지) 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부속건축물(다음 표의 건축물이 부속 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인 경우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을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지안의 공지①의 부속건축물

구 분	건축선으로부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띄어야 하는 건축선 부분 등
1. 공해공장(전용공업 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6이상		모든 건축선
2.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이상		모든 건축선
3.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이상	도로에 3면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도로 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외의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
4.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	6이상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

(단위:미터)

②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할 것외에 다음 표에 정한 것과 같다. 다

만,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건축,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에

의하여 2개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합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② 관련 인접대지경계선 간격

(단위 : 미터)

구			분	외벽의 각 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	외벽 각 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전용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1.0이상	0.5이상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0.5이상	0.2이상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1.0이상	0.5이상	0.2이상
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2.0이상	1.0이상	0.5이상
관람집회시설(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	3.0이상	2.0이상
종교시설(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구부가 있는 곳		—	2.0이상	1.0이상
		개구부가 없는 곳		—	1.0이상	0.5이상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공해공장은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	4.0이상	3.0이상
공동주택(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인 경우	2층 이하로서 3세대 이하인 것			1.0이상	0.5이상
		3층 또는 4세대이상인 것	개구부가 있는 곳		2.0이상	1.0이상
			개구부가 없는 곳		1.0이상	0.5이상
	다세대주택이 아닌 경우		연 령 주 택		3.0이상(2층 이하인 경우 2.0이상)	2.0이상(2층 이하인 경우 1.5이상)
			아 파 트		6 이상 또는 높이의 0.5배 중 작은 것 이상	5 이상 또는 높이의 0.5배중 작은 것 이상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시장·군수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7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의 시장 또는 군의 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를 “시장·군수”로 하고,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를 “건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97조제2항중 “15인”을 “25인”으로 한다.

제97조제7항중 “제1항 내지 제6항”을 “제1항 내지 제7항”으로 하여 이를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시장등은 제4항 각호”를 “시장·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는 제1항 각호”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의

경우 구청장)"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한다.

제9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되, 동항제1호 중 "재정"을 "제정·개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도시설계"를 "도시설계안의 심의"로 하며, 동항제6호중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구조안전"을 "구조계획"으로 하며,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15조제2항, 제56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2호·제3항제2호·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에 관한 사항.

제97조제3항중 "시장등"을 각각 "시장·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로,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률·조경·색채"로 하여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9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일반업무시설인 사무소와 오피스텔 상호간의 용도변경.

제100조중 "공작물의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를 "4공작물의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법 제33조의2제1항"을 "법 제33조의2제1항·법 제41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3조의2의 규정은 준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은 준용은 제3호의 공작물에 한한다.

제100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높이 6미터이하의 기계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재조시설·저장시설·유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관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작물을 축조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축조를 허가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작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1조제1항제3호에 다목중 "공동주택"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하고, 동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20층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저장층에 기계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1조제1항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적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저장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 나목의 단서중 "지표면으로 본다"를 "지표면으로 보며, 전용주차지역 및 일반주차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지표면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하층의 지표면산정: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제102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군수가 법 제5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3·법 제30조·법 제39조 및 법 제39조의2의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을 가지는 지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 토지를 굴착한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에 있는 기존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지에 있는 인접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등의 손괴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다.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용도를 변경하는 건축물

2. 대지가 법 제3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통과도로에 면한 건축선에 한한다)을 후퇴함으로써 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권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한다.

가. 권폐율: 10분의 9이하

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 이상

제102조제2항제2단서중 "시장·군수"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로 한다.

제102조제3항 본문중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을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및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접하게 되는 도로외의 도로에 대하여 제101조제1항제1호 단서"를 제101조제1항제1호단서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허가할 수 있다"를 "허가할 수 있고,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대지에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하천·광장등 건축이 금지된 공간이 있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적합한 대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는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가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이 아닌 범위안에서 당해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⑦ 시장·군수는 기존건축물(1988년 8월 24일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또는 건축을 위하여 신고한 것을 말한다)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

축이나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 일부 개축 및 용도변경의 허가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호의 지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1]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립주택, 다세대주택(시장·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한한다).

[별표2] 제4항 본문중 “시설강습소”를 “학원”으로 하고, 동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1. 폭 4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학원.

2. 대학입시제 학원으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

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00제곱미터이하로서 시장·군수가 주거환경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것.

나. 폭 3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별표2]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21항 및 제2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외의 것으로서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인구 20만미만인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⑥ 식물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330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②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3] 제7항중 “자동차계 강습소”를 “자동차계학원”으로 하고, 동표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⑬ 오피스텔(인구 30만이상 시급도시에서 폭 2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4] 제8호중 “자동차계 강습소”를 “자동차계학원”으로 하고, 동표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식물관련시설

⑮ 발전소

[별표5]에 제9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노유자시설(유치원에 한한다)

⑩ 식물관련시설

⑪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6]에 제11항 내지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노유자시설(유치원에 한한다)

⑫ 식물관련시설

⑬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7]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발전소

⑭ 노유자시설(탁아소에 한한다)

[별표10]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광업에 부수되는 농막, 양어장, 관리용 건축물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시장·군수가 녹지의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한한다)

⑩ 식물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

[별표1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자동차계 학원

⑭ 식물관련시설

[별표12] 제8항중 “시설강습소”를 “학원”으로, “광업계 강습소”를 “광업계 학원”으로 하고, 동표제15항 및 제1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에 제27항 및 제2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농수산물보관창고 및 상품진시창고

⑯ 자동차관련시설(차고·자동차매매장·자동차검사장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

⑰ 식물관련시설

⑱ 발전소

[별표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표] 제4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중 “기원·당구장”을 “당구장”으로 하며, 동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중음식점·다과점·다방·기원

5. 정구장·탁구장·헬스클럽·체육도장·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9. 사진관·표구점·에너지학원·기술재학원(주산·부기·타자·속기·경리·속셈·속독·웅변·변론·언어교정·컴퓨터에 한한다)·독서실·강의실·동물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표] 제9항제4호중 “시설강습소”를 “학원”으로, “자동차계강습소”를 “자동차계학

원”으로 한다.

[부표] 제11항제2호중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주거를 할 수 있는 것)”을 “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부표] 제13항제3호중 “50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부표] 제1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당구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표] 제1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고(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부표] 제21항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차용 건축물 및 차고(시내버스 및 택시 등의 차고를 포함한다)

7. 자동차계 학원

[부표] 제24항 내지 제28항을 제26항 내지 제30항으로 하고, 동표에 제24항 및 제2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식물관련시설

1. 버섯재배사

2. 종묘배양시설

3. 식물과 관련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식물원을 제외한다)

⑮ 발전소

부 칙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제13조의2·제88조 제1항·제89조제1항·제90조제1호단서·제92조·제99조제1항제8호·제101조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7조제7호·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선 후퇴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분할된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9호를 삭제한다.

구 분	1.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하는 건축재료(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구 분	1.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하는 건축재료(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품 목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3. 보통합판 4. 수도용 아연도강판 5. 인입용 비닐전선전선 6. 옥내용 소형스위치류 7. 배선용 씰링 접속기 8. 도아클로우저 9. 원통형 및 상자형 도아록 10. 수도꼭지 11. 청동밸브 12. 복층유리 13. 보주정침 14. 배관용 탄소강관 1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압출형재 16. 난방용 주철 방열기 17. 난방용 강관 방열기 18.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19. 경질비닐 전선관 20. 강제전선관 2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 22. 프리텐손방식 원심력 피씨말뚝 23. 도자기질 타일 24.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 25. 600볼트 비닐전선전선 26.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강강관 27. 후로링 보오드 28.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29. 경질염화 비닐골판 30. 비닐 석면타일 31. 발포 폴리스텐렌 보온재 32. 합성수지 에멀전페인트(외부용) 33. 광명단 조합페인트 34. 조합페인트 35. 조합페인트 목재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36. 합성수지 에멀전페인트(내부용) 37. 크롬산 아연방청페인트 38. 아연말 프라이머 39. 투명락카 40. 우드실라 41. 광명단크롬산 아연방청페인트 42. 알키드수지 바니쉬 43. 스파 바니쉬 44. 슬레이트 및 가와용 페인트 45.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광택에나멜 46. 형광램프(일반조명용) 47. 소켓 48. 배수용경질 염화비닐이음판 49. 강화유리 50. 일반배관용 강제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51. 특수배관용 강제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52.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품 목	53. 스위치 박스 54. 암면 단열재 제품 55. 유리면 보온재 56.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57. 누전차단기 58. 배선용 차단기 59. 구명탄용 온수보일러 60. 나사식강관계 관이음쇠 61. 이음매없는 등 및 동합금관 62. 주택용 분전반 63. 프러쉬 플레이트 64. 노오말 밴드(경질비닐 전선관용) 65. 박스(경질비닐 전선관용) 66. 카바나이프 스위치박스 67.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68. 보울밸브 69. 수도용 계수밸브 70. 주철밸브 71.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72.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밸브 73. 파이프 행거 74. 필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75.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76.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77. 타르에폭시 수지도료 78. 벨로우즈형 신축관이음 79. 플러팅밸브 80.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81.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82.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83.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84. 하이탱크용 사이폰 85. 로우탱크용 볼탭 86. 로우탱크용 사이폰 87. 시멘트 벽돌(6층이상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88. 등 및 동합금의 관이음쇠 89. 강관삽입 용접플랜지 90. 플로어헨지 91. 난방용 알루미늄 방열기 92. 접합유리 93. 아우트레트 박스 94. 일반배관용 스텐레스 강관프레식 관이음쇠 95. 폴리에틸렌 관이음쇠 96. 등 및 동합금 플레어 관이음쇠 97. 동합금 납땀 관이음쇠
		구 분	2. 건설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재료
		품 목	1. 보통벽돌 2. 시멘트 벽돌 3. 시멘트 블록 4. 시멘트 기와 5. 가압시멘트관 기와

우린 어차피 詩人

태양의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
수 없이 허공에다
상상력을 날리고 있는
핵 물리학자
그는 오늘도
테라스에 앉아
수학공식을
악보마냥 떠올리는데

이 지상의 공간마다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야마는
건축사
개똥밭에 빌딩을
황무지에 뽕죽탐을
어둠에 갇힌 지하엔
다시금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이 텅 빈
침묵의 시공에다
무수히 내던지는 언어
기어이
무슨 모양을 이룩하고야마는
나도

허공에다
신나게 칼질을 하던
동끼호테도
우린
어차피
시인일 수 밖에

金 光 林

by Kim, Kwang-Lim



本協會 建議案 積極 反映키로

建築士法등 關聯法 改定 및
行政措置에 의한 改善事項

本協會는 지난 定期總會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현행제도의 개선이 없는 한 '90년 2월 1일부터 대행업무를 거부키로 決意한 바 있으나 建設部등 관계 許可廳과 합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 건축법상 저촉되지 않는 한, 공사중 경미한 설계변경은 준공이전까지 일괄하여 처리
- 건축사 행정처벌사 건축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설치
- 감리자의 무한적인 업무책임 한계에 대한 업무 범위 정립
- 공사시공상 허용오차 인정
- 감리자가 위법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 감리자 행정 처분 배제
- 건축법상 적합한 경우 건축 불허가 처리지연 배제
- 행정청의 임의 규제 사항 지양 등
- 행정조치 개선사항과
- 건축사의 2중 처벌제도 폐지
- 건축사법 시행규칙상의 건축

사 처분기준 개선
• 구체적 위법 사항이 아닌 경우 행정처벌 배제 등 관계 법령상 개정사항을 건의하여 지난 25일 건설부로부터 건축사법등 관련법령 개정을 요하는 사항과 행정조치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本協會의 建議案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回信을 받게 되었다.

한편 本協會는 정책당국과의 제도개선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지난 30일 全國市道支部 회장, 분소회장, 회원이 참석한 對策會議 및 理事會를 열고 조사 및 감사대행업무를 계속하기로 결의하고 일선 행정기관 및 전국 시도지부회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건축법령연구소에서는 건축사법 및 건축법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 법제위원회의 협의('90. 2. 9)를 거쳐 법령개정에 있어 본협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기관에 제출키로 했다.



제1회 支部會長會議 및 建築士年金運營委員會

'90년도 제1회 支部會長會議 및 建築士年金運營委員會가 金基壽부회장을 비롯한 본부임원, 지부회장 및 姜基世연금연구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0일 개최되어 기본연금회비의 결정등 주요안건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주요안건에 대한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기본연금회비 결정 승인
- '89년도분 실적을 기준으로 93만4백원으로 기본연금회비를 산출한 원안대로 승인
- ◆ 기본연금회비 미달차액의 징수 및 반환여부 결정
- 연금규정에 정한 회원기본연금회비 금액에 미달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연금 회비 차액을 징수 또는 반환키로 하

고 연금규정 제9조(실적년수)제4항 "1987년부터 1989년까지는 연금회비 납부년수만을 계산한다"를 총회시 "1987년부터 1988년까지는 연금회비 납부년수만을 계산한다"로 문구수정키로 함

- ◆ 기본연금회비 미달차액의 징수 및 반환금에 대한 당해년도 회계 세입·세출조치 승인
- 기본연금회비 미달차액의 징수금 및 반환금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회계로 수입 및 지출하기로 원안대로 승인
- ◆ 기본 연금회비 온라인 개설 은행 및 예치방법 결정
- 이사회에서 본협회 회관에 입주하게 될 은행이 결정되는데 따라서 결정키로 함

定期監査 實施

'90년도 임시총회를 대비한 定期監査가 지난 29일부터 각 시도지부별로 3월9일 완료 예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실시중인 감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1. 29~1. 30 : 제주
1. 31~2. 1 : 부산
2. 2~2. 3 : 경남
2. 5~2. 6 : 대구
2. 7~2. 8 : 경북
2. 9~2. 10 : 충북
2. 12~2. 13 : 광주
2. 14~2. 15 : 전남

2. 16~2. 17 : 전북
2. 19~2. 20 : 대전
2. 21~2. 22 : 충남
2. 23~2. 24 : 강원
2. 26~2. 27 : 경기
3. 2~3. 3 : 인천
3. 5~3. 6 : 서울
3. 7~3. 9 : 본부

제2회 理事會 개최

本協會 '90 제2회 理事會가 지난 30일(화)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조사·감사대행업무 개선방안등 주요 부의안건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주요안건에 대한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附議事項》

- ◆ 비워회원대책특별위원회 운영규칙(안) 승인
- 운영규칙 제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회장에게 위임함
- ◆ 조사·감사대행업무 개선방안 협의 결정과 그에 따른 대책 결정
- 제24회 정기총회('89.11.28)에서 조사·감사대행업무와 관련,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90.2.1일부터 동업무를 위임받을 수 없다고 결의한것과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 그 개선방안으로

관계당국에 제시한 11개 조항중 행정조치로 가능한 8개항은 행정조치에 의하여 개선토록 하고,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3개항에 대하여는 법령개정시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사·감사대행업무는 계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동사항을 일선행정기관 및 각 시도지부에 통보하여 회원업무 등 건축행정업무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기로 함

◆ 월정회비 미납회원 조치 승인

- 서울지부 요청에 따라 월정회비 미납회원을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 조치하기로 함

《協議事項》

- ◆ 전국건축사대회 명칭 결정
- 금번 전국건축사대회 명칭을 "90 전국건축사대회"로 결정함

'90 全國建築士大會 기본계획 확정

本協會는 구랍 21일 제13회 이사회에서 '90년도 全國建築士大會를 본부 주관하에 서울에서 개최키로 결의함에 따라 지난 17일 대회집행위원회를 구성,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전국건축사대회의 명칭은 제2회 이사회에서 "'90 全國建築士大會"로 결정되었으며 오는 3월 22일(목)부터 23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KOEX) 대서양관에서 개최된다.

"건축환경과 국민익식-주거환경과 우리사회, 건축사의 사

회적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개최될 이번大會는 대회주제를 중심으로 한 정보 교환 및 연수, 회원의 지위향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단합, 건축제도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건축문화의 지역적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특별강연회, 건축인의 밤 행사, 건축사 작품발표회 및 우수기·자재 및 CAD 품평회 등의 행사가 실시된다.

기본계획으로 확정된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京畿道支部(會長 李一潤)

건축관련공무원 간담회 개최

京畿지부(회장 李一潤)는 건축민원업무 및 재반건축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對관청과의 업무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부임원 및 도내 건축분야 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 겸 '89년도 송년회를 구랍 29일 수원 부라운호텔에서 개최하는 한편 '89건축행정전설화 대책추

진 유공회원 11명에게 경기도지사의 표창을 전달하였다.

이날 표창 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 조병원, 조길웅, 한진택, 윤영재, 권순제, 김철균, 임광택, 윤문혁, 우선명, 김중권, 김진열 회원



경기지부 유공회원 도지사 표창장 수여

'90 全國建築士大會 일정표

일 자	시 간	행 사 내 용	장 소	비 고
제 1 일 3. 22 (목)	10:00 ~13:30	전국 대의원 총회	종합전시장 (국제회의실)	
	13:30 ~14:30	대의원 증식		
	15:00 ~16:55	전국 건축사 대회 개 회 식	종합 전시장 (올림픽아홀)	
	16:55 ~17:00	결의문 채택		
	17:00 ~18:00	특별 강연회		
	18:00 ~22:00	건축인의 밤		
제 2 일 3. 23 (금)	10:00 ~12:00	특 별 강 좌 (연 수)	종합 전시장 (올림픽아홀)	건축사연수는 3개분야
	12:00 ~12:50	증 식	(국제회의실)	
	13:00 ~14:20	특 별 강 좌 (연 수)	(대회의실)	
	14:40 ~16:00	특 별 강 좌 (연 수)		

全羅南道支部(會長 金仁模)

직원직무교육 실시

全南지부(회장 金仁模)는 지난 1월 3일 '90년도 사무식을 갖고 사무직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90년도 상반기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남지부 사무식 및 직원직무교육



建築士 基本年金會費 납입 안내

건축사 연금 지급 조건표

'89년도 建築士 基本年金회비가 연금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1회 건축사 연금운영위원회의 의결('90.1.30)을 거쳐 93만4백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89 기본연금회비는 지난해 연금회비 총액(설계+감리+감정회비) 58억5천4백 7만9천3백70원을 실적회원 3천1백46명으로 나누어 그 값의 1/2로 산출되었으며, 89년도 기본연금회비 미달 및 무실적회원은 미달차액을 오는 2월 28일한 소속 시·도지부 총무과에 납부하시면 실적년수로 인정받게 됩니다.

미달회원이 28일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 기납부연금회비를 환불처리하는 한편 실적년수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89 기본연금회비 : 930,400원

◎ 납입기한 : 1990년 2월 28일限

◎ 납입 및 환불요청 장소 :

소속지부 총무과

※ 기본연금회비 미달시 환불·실적년수 제외조치

• 실적년수 기준

1. 협회창립일~1986년도까지

=회원가입년수×1/2

2. '87~'88=연금회비 납부년수

3. 1989년부터 : 기본연금회비 이상

납부하면 실적년수 인정

구	분	복지연금 (월지급) (원)	퇴직연금 (일지급) (원)	사망 위로금(퇴 직연금포함액임) (원)
입회년도	실적년수			
1965년	13.5년	753,620	25,120,800	37,681,200
1966년	13년	725,710	24,190,400	36,285,600
1967년	12.5년	697,800	23,260,000	34,890,000
1968년	12년	669,890	22,329,600	33,494,400
1969년	11.5년	641,980	21,399,200	32,098,800
1970년	11년	614,060	20,468,800	30,703,200
1971년	10.5년	586,150	19,538,400	29,307,600
1972년	10년	558,240	18,608,000	27,912,000
1973년	9.5년	530,330	17,677,600	26,516,400
1974년	9년	502,420	16,747,200	25,120,800
1975년	8.5년	474,500	15,816,800	23,725,000
1976년	8년	446,590	14,886,400	22,329,600
1977년	7.5년	418,680	13,956,000	20,934,000
1978년	7년	390,770	13,025,600	19,538,400
1979년	6.5년	362,860	12,095,200	18,142,800
1980년	6년	334,940	11,164,800	16,747,200
1981년	5.5년	307,030	10,234,400	15,351,600
1982년	5년	279,120	9,304,000	13,956,000
1983년	4.5년	251,210	8,373,600	12,560,400
1984년	4년	223,300	7,443,200	11,164,800
1989년	3.5년	195,380	6,512,800	9,769,200
1985년	3년	167,470	5,582,400	8,373,600
1986년	3년	167,470	5,582,400	8,373,600
1987년	2년	111,650	3,721,600	5,582,400
1988년	1년	55,820	1,860,800	2,791,200

●연금계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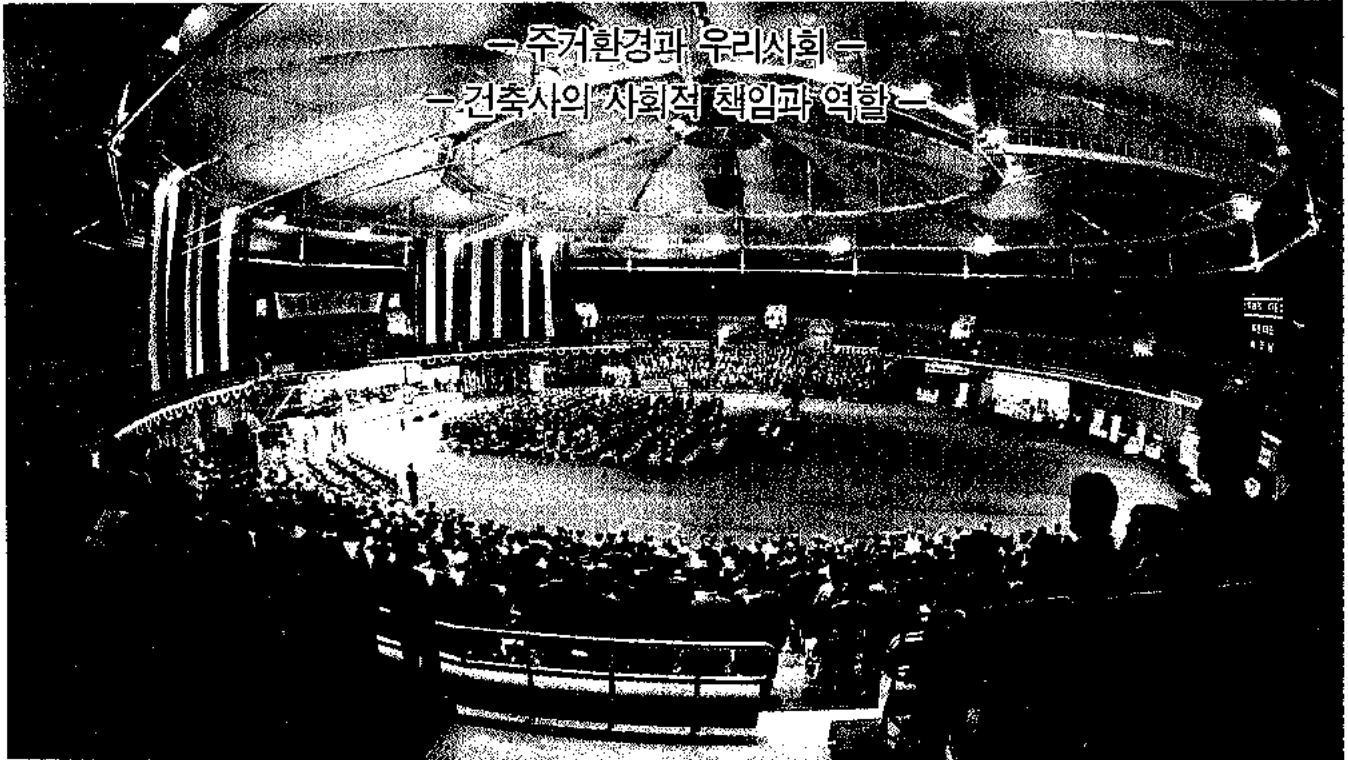
*복지연금 계산 : 퇴직연금×3/100(단, 91년~94년까지 0.2/100씩 조정하며 95년부터는 퇴직연금×2/100)

*퇴직연금 계산 : 실적년수×과거 최대 기본연금회비×2배

*사망위로금계산 : 퇴직연금×50/100(단 65세미만인 경우), [66세 : 45/100, 67세 : 40/100, 68세 : 35/100,74세 : 5/100, 75세 : 최대 기본연금회비×2]

'90 全國建築士大會 開催 案内

건축환경과 국민의식



본 협회에서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오는 3. 22~23일 양일간 한국종합전시장(KOEX) 대서양관에서 전국 3,500여 회원 및 건축관련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90전국건축사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며, 본 행사에 배우자동반 참석을 적극 권장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있으시길 바랍니다.

■ 기 간

1990. 3. 22(목)~23(금) [2일간]

■ 장 소

한국종합전시장(KOEX) 대서양관

■ 목 적

- 대회 주제를 중심으로 한 정보 교환 및 연수
- 건축사의 지위향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건축사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단합
- 건축제도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 건축문화의 지역적 균등발전 도모

■ 주 제

'건축환경과 국민의식'

- 주거환경과 우리사회
-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 행사내용

- 1) 전국대의원 총회
- 2) 전국건축사대회
 - 결의문 채택
 - 특별 강연회
 - 건축인의 밤(축연 및 회원친교행사)
- 3) 특별강좌(연수)
- 4) 제15회 건축사작품 발표회
- 5) '90 우수건축기, 자재 및 CAD 품평회